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ducational Laws of North Korea

Park, Jeong Won (Prof., College of Law, Kookmin Univ.)

朴井源

(국민대 교수, 초청연구원)



국 문 요 약

북한의 교육이념은 정치이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조선로동당’의 정치지도이념과 발전의 궤를 같이 하여 왔다. 사회주의사회인 북한에서 교육은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적 주체형의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정치적 도구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학교교육을 정권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법은 1999년 8월 11일 채택되고,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교육법은 김정일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 교육법의 정비는 북한교육제도의 정비를 의미하며, 김정일체제에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교육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교육제도의 현황과 특징 <북한교육제도는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제, 무료의 학령전 탁아 및 유아교육, 교육과 노동(이론과 실천)의 결합 등의 특징을 가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아울러 분단국가의 교육통합의 사례로서 독일의 교육통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학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본다. 생각건대 남북한의 교육제도의 통합은 바로 우리의 통일국가의 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교육제도 및 법령의 현황 및 내용 분석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교육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북한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김정일체제하의 북한교육의 방향을 살피고,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나아가 통합을 대비하여 교육부문에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성과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 키워드 : 교육법, 교육통합, 사회주의교육학, 어린이보육교양,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 11년제 의무교육, 공부하면서 일하는 교육체제, 김정일체제 등

abstract

Under circumstances which are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the disorganiza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resultant democratization in the East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the role of education is very important and crucial in achieving the national integration through recovering and exalting the national identity in North Korea. The educational idea of North Korea is based on the 'Juche-idea.' North Korea put more emphasis on the ideological education to consolidate the monolithic ruling system by making communistic man of a Juche type. The school education of North Korea, therefore, come to the instrument of indoctrination of socialist ideology.

The Education Law was adopted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Presidium(1999. 8. 11), and was approved at the 3th Session of the 10th Supreme People's Assembly (2000. 4). It would refer to the meaning of enact of this law is maintenance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under Kim Jong-il's regime in North Korea.

The principle goal of this study is the developing integration policies which would increase the level of mutual understanding of education in the two Koreas through exchange, coordinate and contribute to a cooperative and eventually a unified educational system.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system in North Korea(Education in North Korea can be characterized as a typical socialist ideology education

with universal 11-year compulsory education, free nursery and kindergarten systems as early education system), education system of studying while working, etc., to get a primary resources to make preparations for integration education of the two Koreas. In addition, this study is attempted to examine the educational integration policies in Germany. Moreover with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it can investigate legal problems for social adaptation polic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uggest the policy of the directions and tasks for educational exchang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for a unified Korea.

※ Key Wods : education law, socialist pedagogy, educating and upbringing children, educational integration, communistic man of a Juche type, Kim Jong-il regime, etc..

목 차

국문 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11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13
제 2 장 북한 교육법제의 연혁과 체계	15
제 1 절 북한 교육법제의 발전	15
1. 북한의 법제정시기별 구분과 교육법령의 변화	15
2. 북한헌법과 북한교육법제의 변천	18
제 2 절 북한 교육법령 체계	33
I. 1998년 헌법상 교육조항과 관련법령	33
II. 북한의 김정일체제 하의 교육법 정비	36
제 3 장 북한 교육법에 대한 분석	39
제 1 절 북한 교육법의 제정배경과 의미	39
I. 교육법의 제정배경	39
II. 교육법 제정의 의미	41
제 2 절 북한 교육법의 구성과 내용	43
I. 교육법의 구성	43
II. 교육법의 내용분석	44
1. 교육법의 기본(제1장 제1조~제11조)	44
2.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제2장 제12조~제18조)	48
3. 교육기관과 ‘교육일군’(제3장 제19조~제27조)	49

4. 교육내용과 방법(제4장 제28조~제36조)	51
5. 교육조건보장(제5장 제37조~제44조)	52
6.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6장 제45조~제52조)	53
Ⅲ. 북한 교육법의 특징	54
1. 북한 교육법제의 체계화	54
2. 시대적 상황변화의 반영	55
3. 무상교육제도의 적극적 추진	56
4.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56
5. '교육일군'의 자격확대	57
6.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57
제 4 장 남북한의 교육제도 비교	59
제 1 절 북한 교육제도의 특징과 변화	59
Ⅰ. 북한교육제도의 특징	59
1. 정치사상교육	59
2. 정치사상교육의 내용	61
3. '어린이 보육교양'	63
4. 전반적 11년의무교육제도	66
5. 교육과 노동의 결합	69
6. 성인교육	71
Ⅱ.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와 특색	73
1. 통치이념의 강화와 교육정책의 방향	73
2. 북한 교육의 변화동향	76
제 2 절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79
Ⅰ. 남북한의 교육이념	79
1. 북 한	79
2. 남 한	80
3. 남북한 비교	82

II. 남북한의 학교교육	83
1. 교육제도	83
2. 교육목표	85
3. 교육과정	87
4. 교육방법	91
III. 고등교육	92
1. 북 한	92
2. 남 한	93
3. 남북한 비교	94
IV. 성인교육	100
1. 북 한	100
2. 남 한	104
3. 남북한 비교	108
V. 교육행정체계	111
1. 북 한	111
2. 남 한	112
3. 남북한 비교	114
제 5 장 동서독의 교육통합사례와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	119
제 1 절 동서독의 교육통합사례	119
I. 독일의 교육통합정책	119
1. 동서독간 문화, 학술 및 교육의 교류	119
II. 통독후 독일 교육 통합	131
1. 통일 전 동서독의 교육체제 비교	131
2.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구동독교육체제의 변화	134
3. 통일독일의 교육통합을 위한 과제	135
III. 독일교육통합이 남북한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	138

제 2 절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모색	141
I.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제도	141
1.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의 법제도와 문제점	141
2. 탈북자 교육지원제도	143
3. 교육지원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7
II. 통일대비 교육통합 방향 및 전망	154
1. 남북한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의 강화	154
2.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	156
3. 남북한 교육통합의 분야별 과제	159
 제 6 장 결 론	 163
 參 考 文 獻	 163
 부 록	
◇ 북한헌법(1998)상 교육관련 조항	179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8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북한은 남한과 이념과 체제 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서 분단의 시대를 단절하고 통일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왔으며, 이는 민족의 과제로 여겨져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의 남북관계는 이른바 화해와 협력의 틀을 확립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에 들어서려 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방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는 그러한 남북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최종의 통일을 말하는 데에 비하면, 현재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통일은 멀기만 하다. 물론 대결과 대립의 적대적 남북관계에 비한다면,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남북관계는 교류와 협력의 정상적이고 제도적인 궤도에 이르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남북한은 분단기간에 모든 부문에서의 경쟁적 대결을 지향하였으며, 그 대조적인 양상은 서로의 이념과 체제의 상이함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 한 분야로서 교육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 교육은 북한정권의 창건과 함께 강조되어 왔다. 북한정권은 북한교육제도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하여 자랑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핵심 및 성공모델로 북한은 나름대로의 교육제도를 강화해오고 있다. 이는 달리 보면, 북한정권의 목표와 내용에서 북한의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북한의 교육이념은 정치이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조선로동당'의 정치지도이념과 발전의 궤를 같이 하여 왔다.

특히 사회주의사회인 북한에서 교육은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정치적 도구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학교교육을 정권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 무릇 북한에서 교육의 중요부분을

1) 이러한 평가는 1990년대 구소련방의 해체와 사회주의국가의 변혁이라는 세계사적변화와 북한의 경제적 빈곤 하에서도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치밀

차지하는 학교교육은 사상교육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학교교육에서 교사는 직업혁명가이고, 학생은 사회주의사회건설의 후비대가 되고, 학교는 혁명역군의 산실(이른바 ‘원종장’)이라고 규정되고 있는 데에서²⁾ 북한교육의 그러한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교육에 관하여 북한은 법령을 통하여 그 원칙을 제시하고 그 제도를 체계화하여 왔다. 특히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김일성주석의 사망(1994. 7)을 계기로 하여 정치체제의 변화도 모색하게 되었다.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모색은 이른바 ‘수령의 유일지배체제’의 지속으로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체제로의 전환인 것이다. 현재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령은 과거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정비되고 있으며, 그 내용과 폭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³⁾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교육법도 새로 마련되었다. 교육법의 정비는 북한 교육제도의 정비를 의미하며, 김정일체제에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의 교육원리와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는 교육학분야에서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분석의 경우는 그 기초적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적 논구에 의한 연구성과는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북한교육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교육제도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아울러 분단국가의 교육통합의 사례 가운데 동서독의 교육통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의 남한적응과 관련하여 북한교육의 남한내 학력인정 및 경력 산정에 대한 현실과

한 이데올로기교육의 결과는 데에서 도출되고 있다. 김동규, “북한교육의 현실과 개혁 과제”,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전망』, 2001년 북한교육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한국교육개발원, 2001. 9), 3면.

2) 강운빈, 『인간개조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위의 논문, 4면 재인용.

3) 김정일시대의 법령정비내용에 관해서는 박정원,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제 현황과 전망』(한국법제연구원, 2002), 47~136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각건대 남북한의 교육제도의 통합은 바로 우리의 통일국가의 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본서에서 북한교육법에 대한 연구는 우선 북한교육법령의 연혁과 체계에 관한 논의에 이어 남북한교육통합과 관련한 분단국가의 사례, 그리고 남북교육통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골격으로 구성하여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첫째, 북한의 교육법이 제정된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고, 그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교육체제와 원리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원리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북한의 새 교육법과 기존의 교육관련법제를 비교 고찰하여 양자를 비교해본다.

둘째, 북한의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방향을 파악한다. 이는 김정일체제 아래에서의 교육제도의 변화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 논의에서 북한의 교육관계법령의 현황과 특징을 살피고, 아울러 남북한의 교육제도 및 법령을 비교하여 양자의 차이점을 고찰한다.

셋째, 분단국가의 교육제도의 통합사례를 분석한다. 그 사례로서 동서독의 교육제도 통합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남북한의 교육제도 통합원리와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를 살핀다.

다섯째, 현재 탈북자문제는 현안으로 되어 있다. 특히 탈북자의 남한생활에의 적응문제는 남북통합의 시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그 가운데 탈북자의 북한에서의 교육제도에 의한 학력 및 경력 산정 및 인정은 남북통합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하나의 자료축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탈북자의 국내적응문제에서 북한에서의 교육경력 및 학력의 인정여부문제를 다루어본다.

여섯째, 위의 논의를 통하여 북한의 교육법을 현재까지의 변화내용을 토대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한 김정일체제하의 교육정책과 제도의 현황에 의거하여 북한의 교육법제의 방향을 전망해본다. 이어 남북한의 교

육통합의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서의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간의 북한의 교육관계법령에 대한 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며, 특히 북한원전을 통한 북한의 교육원리와 체계에 대한 논리를 고찰한다. 이와 함께 탈북자의 교육경력의 산정과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탈북자의 실태를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도 병행한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법의 신구제도와 남한법과의 비교, 분단 국가의 사례로서 동서독의 교육제도의 통합방안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 연구에 의하여 다음의 연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교육제도 및 법령의 현황 및 내용 분석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교육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북한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사상혁명의 강화와 체제수호의 실제적 관계에서 북한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북한교육법의 분석은 바로 김정일 체제 하의 교육제도 및 정책의 향방을 고찰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북한의 교육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나아가 통합을 대비하여 교육부문에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분단국의 교육통합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의 남북통일에서의 교육통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교육제도의 남한에의 적용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로서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북한교육경력 내지 학력의 인정문제를 다루는 것은 실증적 연구로서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 2 장 북한 교육법제의 연혁과 체계

제 1 절 북한 교육법제의 발전

1. 북한의 법제정시기별 구분과 교육법령의 변화

북한은 나름대로 그들의 법제정사에 관하여 몇 가지 시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인민정권 수립 이전부터 1980년대까지 7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법제정사의 내용을 북한의 설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이다. 북한에서 항일투쟁사는 강조되어 왔으며, 이른바 이 시기에서 북한법제의 기초를 규정하고 있다.⁴⁾ 북한은 일제의 식민지악법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1932년말부터 1933년 초에 두만강연안지역에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여기에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때 제정 실시된 법을 북한은 북한법의 기원이라 한다.⁵⁾ 그 가운데 인민혁명정부의 당면과업을 구체화한 이른바 ‘정부정강’⁶⁾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별법제들이 결정·지시·명령·선언·포고 등의 형식으로 마련되어 북한법제정의 역사적인 전통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한다.⁷⁾

둘째,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시기’이다. 이 시기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정권 수립과정에서 실시된 혁명적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1946년까지로 구분된다. 이 시기는 북한정권창설의 기반을

4) 이에 의하면, 북한의 법제정의 역사적 뿌리는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독창적인 법사상과 이론을 창시하고 이를 해방지구형태의 근거지들에서 구현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일성의 법제정사상은 “일제의 악법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법을 제정하는데 대한 인민민주주의적 법제정사상”이라고 강조하고, 항일운동의 반제반봉건사상이 구체적으로 “유력근거지들에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권건설경험과 함께 법제정의 귀중한 경험”을 참조하였다고 한다.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5~12면.

5) 위의 책, 8~9면.

6) 이 정강의 요약은 리재도·장인형, 『조선국가와 법의 역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122~123면.

7) 홍극표, 앞의 책, 9~10면.

다지기 위한 주요 입법이 이루어진 만큼 북한법제사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이었다.

셋째,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 첫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입법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정권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의 강화발전,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의 개선강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의 보장 등을 위한 법령의 제정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넷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이다. 이 시기에 북한은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칭하고 전시체제입법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관하여 북한은 이 시기의 법제를 국가사업을 전시체제를 개편하는 입법, 남반부 지역의 민주개혁을 위한 입법, 전선의 수요와 전시생산을 위한 입법, 후방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입법, 후방에서 준동하는 계급적 ‘원썩’들을 진압하는 입법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⁸⁾

다섯째,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이다. 이 시기에서 북한은 전후 경제 및 사회질서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을 채택하였는데, 국가기관의 사업개편과 역할제고를 위한 입법,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협동경리의 공고화를 위한 입법,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사업을 위한 입법, 교육사업의 개선을 위한 입법,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⁹⁾

여섯째,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시기’이다. 북한은 이 시기의 법제정의 방향에 대해 인민정권기관의 강화 및 그 기능과 역할의 제고를 위한 법규,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의 개선완성을 위한 법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강화를 위한 법규, 사회주의 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법규, 인민생활의 획기적 증진을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법제정사업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정착시키는 법제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이다.¹¹⁾

8) 위의 책, 102~138면.

9) 위의 책, 139~186면.

10) 위의 책, 187면.

11) 이에 대해 북한은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는 입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입법, 근로자들의 교육교양사업을 위한 입법, 사회주의공업화의 완성과 전면적 기술개선을 위한 입법,

일곱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이다. 북한은 이 시기에 법분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채택을 통한 국가경제기관의 강화와 그 기능과 역할증대를 위한 법규,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강화하기 위한 법규들을 제정실시하여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한 부문법전들을 제정실시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법적으로 공고히 발전시키는 기본과업실현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²⁾

이렇게 북한은 1980년대 중반까지의 법제사를 7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함께 북한법제에도 변화가 있었으나, 이에 관해 설명한 북한의 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다. 실제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북한법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김정일체제의 공고화와 확립을 위한 과정에서 북한의 법제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이에 관하여 북한에서 종전의 법제정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은 아직 없다. 시기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북한법제의 변화내용은 김정일체제의 법제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북한의 법제정사의 발전과정에 상응하여 북한의 교육법령의 발전과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³⁾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북한의 교육법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입법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187~223면.

12) 북한은 이 시기의 법제정의 내용을 사회주의헌법의 채택, 국가·경제기관을 강화하고 기능을 높이기 위한 입법, 사상·기술·문화혁명의 심화·발전을 위한 입법, 인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사회주의법체계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입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의 책, 224~287면.

13) 북한의 문헌에 의하면, 북한은 교육에 대한 시기구분을 항일혁명투쟁시기 교육(1926~1945. 8), 새 민주조선 건설시기 교육(1945. 8~1950. 6), 조국해방전쟁시기 교육(1950. 6~1953. 7),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시기 교육(1953. 7~1960), 사회주의전면적 건설시기 교육(1961~1970)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조선교육사』,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조선교육사』, 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후 시기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심화발전,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실현, 주체의 사회주의교육강령(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및 교육사업의 새로운 전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과업제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획기적 전환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조선교육사』, 5(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조

령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모두 정리하기는 어렵다. 위의 북한의 법제정의 사적 구분은 극히 자의적이며, 특히 현재의 법제정의 특징과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교육학자들의 분석에 의해서도 북한교육법령에 대한 변천과정의 설명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을 보면, 북한의 교육정책의 변천, 북한의 정치사상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 북한교육법령의 변화과정을 나름대로 시기구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⁴⁾ 한편 북한교육법령을 그 성립과정을 기준으로 그 출발점을 해방이후로 하여 1945년부터 사회주의교육도입시기, 전쟁후 복구시기, 기술교육강조시기, 김일성유일사상확립시기, 11년제 의무교육시기, 고등교육의 대중화시기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¹⁵⁾

다음에는 이를 참고하여 북한헌법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교육법제의 변천내용을 살펴본다.

2. 북한헌법과 북한교육법제의 변천

(1) 북한헌법의 변천과 교육법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교육법령의 변천과정은 그 시기구분은 각기의 기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북한헌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북한교육법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선교육사』, 6(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조선교육사 3, 4, 5, 6호에 대해서는 김동규·김형찬 편, 『북한교육사』(조선교육사영인본)(교육과학사, 2000) 참조.

14) 이를 보면, 연구자의 입장과 주장에 따라 그 시기구분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북한교육법령의 시기구분에 관해서는 이범웅,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한교육의 통합”, 『21세기 한민족 통합론』(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2000), 223~226면; 김영식, “북한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 『북한교육론』(북한연구소, 1977), 133~139면; 박용현, “북한의 정치교회교육”, 『북한교육론』, 같은 책, 297~298면 등이다. 이들 시기구분의 기준을 제목에서 보면, 공산주의사상도입기, 정권안정과 공산주의정착기, 혁명전통강화와 주체사상도입기,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사상체제 강화기, 주체교육과 인간개조교육강화기, 공산주의 도입기, 공산주의모방기, 혁명전통교양확립기, 유일사상체계확립기, 주체교육강화기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출발점과 시기구분에 있어서 일관된 입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15) 한만길 외, 『북한교육관계법령비교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0), 39~49면.

이 북한은 북한법제의 시원을 일제시기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법에 두고¹⁶⁾ 1980년대 중반까지 그 발전과정을 7개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의한 법제사적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⁷⁾ 그러나 북한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의 북한의 법제사는 그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것이며,¹⁸⁾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역사적 사실성보다 북한이 법제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신적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각색의 색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¹⁹⁾ 여기서는 북한헌법의 변천을 중심으로 주요입법의 동향과 관련하여 북한의 법제변천을 고찰하되, 특히 1992년과 1998년 헌법의 개정배경과 내용이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법적 포석과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을 위한 헌법적 토대 형성이라는 점에서 1990년대의 북한헌법의 변화를 김정일체제의 헌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무릇 북한에서 헌법에 대해 기본법적 성격이 강조되고 각 헌법은 당시 시대사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각 부문법의 기준으로서 법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헌법을 통한 북한법제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여기서 북한헌법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헌법적 역할’을 담당한 입법²⁰⁾을 비롯한 주요입법들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법제의 변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북한의 헌법사를 보면, 크게 다섯 개의 헌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 16) 북한에서 법건설문제는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하고, 김일성동지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법건설사상’을 창시하고 김정일동지가 ‘주체의 법건설사상과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강조한다. 서창섭, 『법건설경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3~4면.
- 17) 리재도·장인형, 앞의 책, 102~162면; 서창섭, 위의 책, 5~116면. 한편 일본의 한 연구서도 대체로 북한의 분류에 따른 북한법제정사를 설명하고 있다. 金圭昇, 『南北朝鮮の法制定史』(東京: 社會評論社, 1990), 341~454頁.
- 18) 金圭昇, 위의 책, 25~44면; 崔達坤·申榮鎬, 『北韓法入門』(세창출판사, 1997), 34면.
- 19) 崔鍾庫, 『북한법』(박영사, 1995), 21~22면.
- 20) 헌법적 역할을 담당한 입법이라 하는 것은 헌법의 주요부속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그것은 이른바 ‘헌법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사회 및 국가제도를 규제하는 사회관계, 국민의 헌법적 지위를 규제하는 사회관계 및 국가주권 실현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들의 표현형식을 말한다. 윤중섭 외, 『조선헌법』(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63), 6면.

첫째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 4. 28)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하고, 이 초안을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 7. 9)에서 북한지역에 실시하기로 한 ‘임시헌법’이다.

둘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1948. 9. 8)에서 제정·공포한 북한의 첫 정식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하에서는 ‘1948년헌법’ 또는 ‘인민민주주의헌법’이라고 함)이다. 이 헌법은 ‘임시헌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셋째는 1948년헌법이 24년간 시행되다가 폐지되고,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1972. 12. 27)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내지 ‘1972년헌법’이라 함)이다.

넷째는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1992. 4. 9)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시행해온지 20년만에 대폭 개정한 헌법(이하에서는 ‘1992년헌법’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함)이다.

다섯째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1998. 9. 5)에서 사회주의헌법을 2차로 개정한 헌법이다(이하에서는 ‘1998년 개정헌법’ 내지 ‘김일성헌법’이라고 함).

이 가운데 1992년 및 1998년 헌법은 김정일체제의 확립과 공식출범을 계기로 개정된 것으로 김정일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헌법이다. 따라서 김정일체제의 헌법으로 1990년대에 이루어진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그 입법내용을 김정일체제하의 법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북한법제, 즉 김정일체제하의 입법동향은 이 시기와 1990년대 북한헌법에 근거한 법령들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

북한헌법사에서 특히 1992년 헌법과 1998년 헌법은 김정일체제의 사전헌법적 포석과 공식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서는 북한헌법에 따라 북한교육법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하되, 1998년 헌법하의 교육법제는 김정일체제 하의 교육법제에 관한 서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1948년 헌법하의 교육법제

북한의 1948년 헌법은 임시헌법에 이은 첫 정식헌법으로 북한의 제헌헌법에 해당한다. 이 헌법하에서는 북한의 인민정권의 수립과 정권확립을

위한 정책에 따라 교육법령도 북한의 인민정권의 수립에 의한 교육제도의 기초확립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의 안정적 기반위에서 새로운 교육체제 및 원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의 정비도 뒤따랐다.

이 시기의 교육법령은 다음의 시기적 구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정권수립과 교육체제 토대 형성

이 시기는 1948년 헌법제정이전부터 소련군정시기도 포함되며, 대략 1950년 한국전쟁시기까지의 기간에 정비된 교육관련법령이 해당한다. 여기에는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적 기초를 마련하는 단계에서 교육법령도 이에 상응한 원리와 체제를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교육법령의 제정배경으로는 대체로 북한정권의 체제 확립에 따른 정책적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후 일재잔재의 청산과 계급의식의 고양 및 애국심 고취라는 정치적 목표에 의거한 교육제도의 정립의 필요성이다. 해방직후 소련의 사회주의의 영향아래 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질서를 청산하기 위한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가치체계에 따른 인간관을 심어주어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교육제도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른바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강조와 공산주의 새 인간형의 개조의 강화에 따른 새로운 인간관의 형성은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연히 이 시기의 교육법령은 이러한 목표에 상응하여 그 배경을 안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기존질서의 청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혼란과 저항에 대하여 교육을 통한 정당화방법의 중요한 수단 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북한 인민정권의 수립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었다.

이에 이시기의 교육법제의 특징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교육법제의 제정목적은 물론 기능을 보면, 기존질서의 청산을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의 체제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는 기존질서의 청산을 강조한 것이었

다. 또한 교육법제의 기능도 일제잔재의 청산과 봉건사회의 타파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의 주요 목표와 내용도 문맹퇴치와 일제잔재의 교육말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의 습득에 주력하는 것이었다.

둘째,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체계화되지 못하고 사안의 발생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적인 요소가 많았다. 법리적 요청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게 제기되는 교육에서 법적 정당화의 대응은 극히 대중요법적 방식에 의해 법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셋째, 법제의 비체계화를 지적할 수 있다. 정권수립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육법제의 정비는 양적 면에서 요구되는 컷지만, 그 구성면에서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앞서 지적한 대중처방적 교육법령의 제정은 이러한 법령의 비대화에 따른 정합성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넷째, 역시 정권수립기라는 특성에 의해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광범위한 교육망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 인민을 대상으로 각 계층에 대한 교육망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정권수립과 교육체제도대형성 시기 교육법제 현황>

항 목	법 령 명	제정시기
교육일반	- 학교사업에 관한 건	1946. 3. 25
	- 20개조 정강(제16조)	1946. 3. 23
	- 조선로동당 강령(제10조)	1946. 8. 29
	- 학교교육체제에 관한 규정 및 그 실시에 관한 조치에 관한 결정서	1946.12. 18
	- 인민민주주의 헌법(제18조, 제58조 등)	1949. 9. 8
취학 전 교육	- 탁아소 규칙	1947. 6.13
	- 탁아소에 관한 규정	1949. 2. 1
인민학교	- 1950년도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실시에 관한 법령	1948.12.16
	-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 실시에 관한 법령	1949. 9.10
	- 학령아동취학에 관한 규정	1950. 4. 8
	- 최고인민회의의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실시에 관한 법령실행에 관한 결정서	1950. 1.11
	- 인민학교에 관한 규정	1950. 4. 8

항 목	법 령 명	제정시기
중등학교	- 전문학교설립에 관한 건	1949. 7. 8
	- 의학전문학교 설치에 관하여	1950. 4. 2
	- 기술전문학교에 관한 규정	1950. 3.24
	- 초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1950. 4. 8
	- 고급중학교에 관한 규정	1950. 4. 8
	- 보조규정-국가졸업및진급시험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	- 교원대학에 관한 규정, 종합대학창립에 관한 건	1946. 7. 8
	- 시행규칙-전문학교 대학학생 장학금에 관한 규정 수여에 관한 결정서	1946. 2. 9
	- 대학교수 교원봉급 및 그 교수시간계산에 관한 규정	
각종학교 및 강습소	- 경리학교개설에 관한 건	1946. 6. 4
	- 중앙정치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1946. 6. 6
	- 보안간부학교 설립에 관한 건	1946. 7. 8
	- 생산기업장 지배인 강습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6.11.30
	- 로어강습소 설치에 관한 건	1946.12. 5
	- 조선어문연구에 관한 결정서	1947. 2. 3
	- 조선역사편찬회에 관한 결정서	1947. 2. 7
	- 성인교육및직장교육체제에 관한 규칙	1947. 4. 8
	- 인민위원회 정치교원 양성소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6.20
	- 중국인학교 관리에 관한 결정서	1943. 3.11
	- 중앙지도간부학교 개편에 관한 결정서	1949.12. 8
	- 정치경제학아카데미아 설립에 관한 결정서	1950. 4.11
	- 로동학원에 관한 규정	상동

2) 전시 및 전후 복구시기

북한에서 이 시기는 이른바 조국해방전쟁을 치르고 난후 전후복구를 꾀하는 동시에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는 시기로서 1950년부터 1959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북한은 6·25전쟁을 계기로 하여 전 시체제의 법체제를 갖추었다. 이를 ‘조국해방전쟁 시기 법의 제정실시기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후에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과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시기’로 하여 전후 경제질서와 사회질서의 복구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정비의 배경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사회주의이론의 강화와 전선지원, 전후복구사업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독재체제의 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기술교육이 강조되는 동시·사대에 각급학교에 김일성의 혁명전통사상의 강화에 대한 공통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이 강조되었다. 특히 김일성의 사상교육의 강화는 그 명목이 부루주아 사상의 침투를 방지하는 것이었지만, 실은 김일성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내용은 먼저 전시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시체제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에 입각한 사상성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정치체제의 정당성의 확보수단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주입하는 교육에 치중하였다. 또한 전쟁참가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교육법령의 제정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유자녀학원, 영예군인 학교 등의 설치는 바로 전쟁에 대한 보상차원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말미암은 반체제적 불만세력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내용은 교육적 목적 보다 전후 복구의 필요성에 입각한 대비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었다.²¹⁾ 이와 함께 북한에서는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통신교육을 도입하였다.

다음 전후복구시기의 교육법령의 내용으로는 체제강화의 일환으로 전 인민에게 노동계급의 사상과 의지에 의한 정신무장을 강화라는 교육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이는 김일성의 권력강화시기와 맞물려 김일성의 유일체제의 구축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교육에서의 사상성의 강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이 시기에 전후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전후 재건을 위하여 기술교육의 강화, 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7년제의무교육을 규정한 점을 주목된다. 이 시기에서도 과거에

21)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인민경제의 복구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학제개편과 기술 간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성 산하에 각종 기술전문학교를 해당 관계성으로 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당시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해 발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법체계의 정합성은 미비하였다.

< 전시 및 전후 복구시기 교육법제 현황 >

항 목	법 령 명	제정시기
교육지침	-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1955. 4
초등교육 (인민학교)	- 인민학교, 기술전문학교 및대학의 학제개편에 대하여 - 애국렬사 유자녀들과 전쟁고아들을 위한 초등학원을 평양시 및 각 도소재지에 설치한데 관하여 - 유자녀학원및초등학원및애육사업을 개성강화할데 대하여	1953. 7. 11 1953. 8. 4 1958. 7. 21
	- 인민, 초급, 고급중학교 조업 및 진급시험에 관한 규정, 대학 및 각급학교학기 구분을 변경할데 대하여	1957. 2. 21
중등교육	- 통신사범전문학교에 관한 규정 - 인민학교, 기술전문학교 및대학의 학제개편에 대하여 -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할데 관하여 -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 실시를 준비하데 관한 법령을 성과적으로 집행할데 관하여	1952. 4. 24 1953. 7. 11
고등교육	- 내각수상김일성동지의 탄생 40주년에 제하여 그의 이름을 가진 장학금제도를 설정함에 관하여 - 일부대학생들에게 장학금 급여액을 증가함에 관하여 - 인민학교, 기술전문학교 및대학의 학제개편에 대하여 - 대학 및 각급학교 학기구분을 변경할데 대하여	1952. 4. 24 1953. 7. 11 1957. 2. 21
각급학교 및 강습소	-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 장병및빨치산들,과 애국렬사들의 유자녀학원설치에 관한 결정서	1951. 1. 13
	- 조국해방전쟁에서 불구자로 인민군장병 및 빨치산들을 위한 영예군인학교설치에 관하여	1951. 4. 13
	- 각종기술전문학교를 관계성 및 내각직속국들에 이관함에 관하여	1952. 2. 28
	- 1952년 개성지구교육기관 및평양시중국인민학교 복구계획에 관하여	1952. 3. 17 1952. 10. 9
	- 기술, 기능인재양성체제를 개편할데 대하여 - 체육및스포츠보급과 체육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체육및스포츠보급과 체육간부양성기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을 인상할데 대하여 - 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을 인민학교 또는 초급중학교 졸업자 정도 이상으로 수준을 제고시킬데 대하여	1952. 3. 17 1957. 6. 18 1958.10.29 1958.11.21

3) 기술교육의 강화와 사회주의로의 이행시기

이 시기는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력강화를 위한 투쟁시기에 해당하며 특히 정치적 방향에 있어 독자적인사회주의건설과 사상혁명수행이 강조되는 시기로서 1959년부터 1966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지난 인민정권초기의 과업을 달성하고 보다 사회주의로의 발전을 강화하는 시기로서 북한에서 사회주의혁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강화되는 시기로서 교육법제에도 이러한 정책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배경은 지난 시기의 반제반봉건민주주의 질서 청산과 전후복구사업의 지원, 계급교양고취 등에서 나아가 주체성과 혁명전통교양의 정립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이는 북한의 대내외적 정치상화의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에서의 자립을 위한 기술인력의 공급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의 강화가 뒤따르게 되었다.²²⁾ 이는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사회건설과 관련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의 강화에 의하여 사회주의공업화를 달성하려는 북한당국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법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내용상 특성으로는 먼저 김일성의 유일체제의 강화기에 상응하여 김일성에 대한 일인지배체제에 대한 정당화를 위한 교육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 는 사회주의건설의 기치아래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교육을 강조하면서도 한편 이로 인한 정신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항일무장투쟁의 혁명교양을 중심으로 한 사상교양과 김일성체제의 우월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런 가운데 실제적인 면에서는 기술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일반중등교육을 전면적으로 기술교육중심으로 개편하였

22) 북한은 1950년대부터 전후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생산현장과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노력동원을 실시하였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하는 당시 소련의 사회주의교육관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입각하여 북한은 1959년부터 1인 1기원칙이 학교교육에 적용되어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의무노동체가 의무적으로 부여되었다고 한다. 김태완 외, 『남북한 교육통합정책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1), 38면.

다.²³⁾ 또한 학교교육의 강화와 함께 성인교육을 체계화하고, 일반교육과 현장의 생산노동을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북한에서 체육교육을 강조하고 체육사업을 광범위하게 조직화 체계화하였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달리 보면, 체육교육을 통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복종심을 강조하고, 집단정신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기술교육 및 사회주의로의 이행시기 교육법제 현황 >

항 목	법 령 명	제정시기
교육지침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1963. 8. 29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 동맹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64. 4. 22
초등 (인민교육)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데 관한 법령(제1조)	1959. 8. 29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제1조)	1964. 4. 22
중등교육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데관한 법령(제2조)	1959. 10.28
고등교육	- 대학및전문학교를 확장할데 대하여(제1, 2, 3조)	1959. 2. 2
	-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데 관한 법령(제2. 3조)	1959. 10.28
	-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제2조 제 4항)	1966. 11.24
각종학교 및 강습소	- 체육교육을 발전시키며 스포츠기술수준을 제고할데 대하여(제5조, 제18조, 제19조)	1959. 2. 27
	-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데 대하여	1959. 3. 2
	- 인민교육체계를 개편할데 관한 법령(제1조, 제3조)	1959. 10.18
	- 고등교육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0. 4. 18
	- 기술문화성을 보통교육성과 문화성을 설치함에 관하여	1960. 12. 7
	-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추진시킬데 관하여	1961. 7. 28
-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1966. 11.24	

23) 이를 위하여 북한은 과학자,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증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한만길 외, 앞의 책, 44면.

4) 주체사상의 강화와 김일성 유일체제확립 시기

이 시기는 북한에서 정치체제면에서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가 구축되고, 경제면에서 개인상공업의 생산수단의 국가화와 함께 농업의 협동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에서 사회주의건설의 확립이 이루어졌다고 강조되는 1966년부터 1972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전통계급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기의 북한법제의 양상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와 사회주의 단계로의 진입에 따른 계급투쟁의 양상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는데, 이는 진압기능의 계급투쟁의 모습이 사상혁명을 통한 통제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교육법령의 경우 이른바 사회주의교양강화에 주력하는 내용으로 개편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지배이데올로기로 강화되는 주체사상의 강조와 연관되어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에서 전 분야를 지배하는 지도사상으로서 북한교육부 분에도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사상혁명의 강조에 의하여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의 북한의 교육법제는 취학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였는데, 이는 초기단계로부터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즉, 유일체제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은 초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아래 북한체제에 적합한 인간형의 창조를 위해 취학적 교육이 강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체제에 있어서 유치원 높은 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으로 의무교육을 11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주체사상의 강화와 유일체제확립시기의 교육법제 >

항 목	법 령 명	제정시기
교육지침	- 교육사업을 개선하여 유능한 민족간부를 키워내자.	1966. 6. 16
	- 혁명 유자녀들은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는 친위전사기 되어야 한다.	1967. 10.12
	- 인테리 정책관철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 잡을데 대하여	1969. 5. 29
	-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69. 8.12
각종학교 및 강습소	- 소년단 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1966. 6. 6
	- 평양 전기기관차공장을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으로, 해주사범대학을 김중태사범대학으로 개칭함에 대하여	1970. 9. 3

(3) 1972년 헌법하의 교육법제

이 시기의 교육법제는 북한에서 이른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강조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고 이에 의거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추진하는 시기로서 1972년부터 1980년대말부터의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이를 일부 헌법에 반영하는 1992년 헌법개정까지의 기간이 해당한다.

알다시피 1972년 사회주의헌법은 정치적으로는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에 따라 김일성의 일인지배체제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었으며, 북한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이라는 현실에 상응하도록 한 배경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시기의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을 내세우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부문에서 대전환을 도모하였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주의권국가들의 변혁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 와중에서 북한도 새로운 변화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응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무엇보다 체제수호에 역점을 둔 북한의 경우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의 고수와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작업의 추진은 체제의 경직성을 더하였다. 국제사회에 대한 폐쇄적 대응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켰으며 이로 인한 북한의 체제안정은 오히려 위협을 받는 국면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경제부문에서의 부분적인 개방을 통하여 북한이 처한 경제난과 체제에 대한 위협요소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것의 헌법적 반영이 바로 1992년 헌법개정으로 나타났다. 1992년의 개정헌법은 요컨대 정치체제의 고수와 경제체제의 제한적 대외개방을 위한 배경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 같은 북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교육법제의 변화내용은 1970년대 초기의 김일성 일인지배체제의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의 강조와 사회주의 사회건설에 의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개선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육법제의 정비시기를 보면,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직후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1980년대 초반을 지나면서 새로운 교육법제의 정비내용은 나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북한의 교육법제는 1972년 사회주의헌법 제정이후 사회주의건설에 상응한 교육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제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북한은 사상혁명의 성공적 수행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교육에 관한 법령도 정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1976년의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1977년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이 시기의 북한교육법령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 1972년 헌법하 교육법령 현황 >

항 목	법 령 명	제정시기
교육지침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77. 9. 7 1984. 7.22
취학전 의무교육	-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 어린이보육교양법	1973. 4. 9 1976. 4.29
초 등 (인민학교)	-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1976. 4. 9
중 등 및 고등학교	-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1976. 4. 9
각종학교 및 강습소	- 인민과학자 공훈과학자에 관한 법령집행 총화에 대하여 -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관한 법령집행총화에 대하여 - 만경대 인민학교를 <순화학교>로 함데 대하여	1975. 4.10 1975. 4.10
기 타	- 인민교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 신파녀자고등중학교를 <김정숙녀자고등학교>로, 혜산제2사범대학을 <김정숙사범대학>으로 함에 대하여 - 학교건설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1980. 3.15 1981. 8.17 1982, 8.19

(4) 1992년 헌법하의 교육법제

1992년 북한이 헌법개정을 할 시기에는 사회주의권의 변혁에 대하여 정치체제의 수호를 위한 데에 중점을 두는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에게로의 권력승계를 위한 법적 포석이 일부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으로는 대내외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제한적인 경제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 1992년 헌법개정으로 경제개방과 관련하여 일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것은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에 따라 북한이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제를 제정하여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1992년 헌법개정은 한마디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데에서 엿볼 수 있다. 그간 북한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주석이 창시한 주체사상의 재해석·재구성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의 이상형을 제시하고, 김정일지도노선을 구축함과 동시에 후계권력체제의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²⁴⁾ 특히 김정일은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에 따른 대응논리로써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체제고수를 위해 이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 대응하여 주체사상을 강조한 것으로서 김정일지도노선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구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몰락과 관련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 5. 5)라는 담화²⁵⁾와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1992. 1. 3)이라는 담화²⁶⁾를 발표하였는데, 이 두 담화에는 ‘우리식 사회주의’

24) 高性俊 外, 『轉換期の北韓社會主義』(大旺社, 1992), 46~50면.

25)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1년 5월 5일)(평양: 중앙방송, 1991. 5. 27), 『근로자』, 1991년 6호(평양: 근로자사, 1991), 3~25면.

26)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로선”(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1992년 1월 3일)(평양: 중앙방송, 1992. 2. 4), 『조선중앙년감』

의 이론적인 정식화와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고²⁷⁾ 김정일지도노선이 구체화되어 있다. 여기서 여타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에 대한 역사적 교훈으로 표방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의 이론과 사상은 헌법개정의 주요배경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1992년 개정헌법을 ‘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고 그 우월성을 강조하였다.²⁸⁾

북한은 이 헌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으로 ①당의 지도를 국가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고 규정(제11조)한 점, ②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를 지지하는 계급과 계층을 확대한 점(주권의 소재를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으로 확대 제4조), ③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새로이 규정(제12조)한 점, ④사회주의 경제에 관한 지도 관리 원칙을 규정(제32조)한 점, ⑤국방문제를 독립적인 장(제4장)으로 규정한 점을 들고 있다.²⁹⁾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1980년대말부터 사회주의권국가들이 변혁에 의한 북한체제에 대한 변화요구, 김일성 수령의 유일지배체제의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작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제부문에서의 자본주의체제와 원리의 도입이라는 실험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외경제개방 자체가 체제수호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 국면에서 이 시기에 북한은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고 당면한 경제파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부체제의 강화에 주력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강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조에 의해 북한체제를 결속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은 당시의 북한의 당면한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하여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북한에서 교육은 이미 국가의 ‘이념적 이데

198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3), 33~48면.

27) 두 담화에 관한 분석은 申一澈, “北韓의 ‘社會主義 挫折’論-소련·東유럽 社會主義解體에 대한 北韓의 視角”, 徐鎮英 編, 『社會主義 改革과 北韓』(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92), 149~191면.

28) 북한은 1995년 12월 27일 헌법절에 즈음에 사회주의헌법을 ‘주체의 사회주의헌장’으로 규정하고, 이를 ‘우리식 사회주의헌법’이라고 하였다. 『주간 북한동향』, 제261호(통일원 정보분석실, 1995. 12. 24~1996. 1. 3), 37면.

29) 리명일,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40권 제4호(김일성종합대학, 1994. 11), 28~33면.

올로기의 기구'로서 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의 재생산은 물론 김일성 정권의 과제와 정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에 기여하여왔다.³⁰⁾ 이러한 특성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앞서의 북한의 위기국면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위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은 일면 체제유지와 일면 경제제건의 기치를 내세우면서 변화를 모색하였다.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에서 북한교육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북한에서도 학교교육의 붕괴를 말할 정도로 출석률저조, 교권하락, 교육기자자재의 부족, 학교운영물품의 부족 등의 현상에 의하여 교육부분에서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의 강화를 통한 체제붕괴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데에 주력하였으며, 여기에서 북한교육의 특성이 그대로 발휘될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화와 주체형 혁명인재의 양성이라는 미명하에 당과 수령의 영도체제 아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다시 말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1992년 헌법하의 교육법령의 정비내용은 특이한 것이 없으며, 기존의 교육법령체제 하에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혁명사상이며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의 강화와 이의 실천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는 데 주력하였다.

제 2 절 북한 교육법령 체계

일반적으로 교육은 당해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북한과 같은 통제되고 폐쇄적 사회에서의 교육은 통치세력의 당면정책과 사회경제적 요구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I. 1998년 헌법상 교육조항과 관련법령

북한헌법은 제3장 문화조항에 교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헌법인 1998년 헌법상 교육관련조항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상의 교

30) 신호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전망』, 2001년 북한교육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한국교육개발원, 2001), 56면.

육조항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원리에 입각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방향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헌법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교육체제, 교육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북한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원리를 구현하여 이른바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육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현행헌법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북한의 1998년 헌법은 제40조부터 제44조에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강조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및 생산교육을 통하여 위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³¹⁾ 특히 북한헌법은 제43조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명시하여 북한의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을 통하여 북한은 국가가 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를 위한 교육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헌법에서의 교육목표의 명시는 여타 관련규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먼저 북한의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4. 29 채택)은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모든 아동을 주체형의 새로운 혁명적 인간으로 육성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미래의 주역으로 양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제1장 제1조, 제5조, 제6조).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기관과 사회활동단체들이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장 제12조). 이와 관

31) 이에 관한 헌법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제41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제42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제43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제44조).

련하여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을 명시하여 강조함으로써 집단주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위한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동법 제31조). 아울러 북한어린이들이 주체사상과 공산주의혁명관으로 사상무장을 하여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혁명화 및 노동계급화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동법 제40조).

다음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5)³²⁾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목표와 실천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공산주의적 인간육성, 혁명화, 그리고 이상적인 사회주의사회를 건설을 규정하고 있다.³³⁾ 이를 통하여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이 주체적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의 육성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구현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⁴⁾ 이에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것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우선되는 선결과제로 단정짓고 있다.³⁵⁾

이렇듯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한의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의 실천의 방식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정치교양사업을 실시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혁명화와 노동계급화를 성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주체사상교육을 주입시켜 사회주의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자주·자조·자위할 수 있는 주체적 공산주의자로 만들고 이를 통하여 공산주의를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³⁶⁾

3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33) 이 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체도를 위하여 복무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을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5) 한만길 외,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한 분석-』(한국교육개발원, 2001), 33~34면.

36) 한편 사회주의교육테제에 의하면, 사회주의교육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

이를 기초로 북한은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이로써 이전까지 북한의 교육법에 준하는 권위를 가져왔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교육법은 사회주의교육테제와 내용과 성격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테제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³⁷⁾ 북한의 교육법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II. 북한의 김정일체제 하의 교육법 정비

앞서 지적하였듯이 북한에서 교육은 북한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왔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른바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양성을 표방하여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일인지배체제 아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주체형 인간’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여왔다. 이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인간이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산주의 혁명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보다 이른바 집단주의에 입각한 ‘집단주의 정신’이나 ‘민족주의적 열정’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공동체내에서의 행위의 규칙을 준수하고 동지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집단공동체로 발전하여 왔다.

여기에 북한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에 따라 주체형의 인간을 양성하는 목적아래 사회주의적 인간형에 핵심적 내용이 강조되었다. 그것은 수령의 유일지배체제의 수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대가정에서의 가장이 되는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이 강조되고, 형제로서 일반대중사이에는 혁명적 동지애가 강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강조점을 특히 북한의 1990년대의 고난기, 즉 북한의 정치적 위기상황에서 주체형의 인간의 이념은 운명공동체적로서 강한 체제결속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북한체제의 결속 내지 유지, 즉 김정일체제의 수호를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앞서 언급한 이데올로기의 강화에 의

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교육에서 당성·노동계급성 구현, 교육에서의 주체 수립,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사회주의국가의 교육사업 책임 및 조직·진행 등이다.

37) 북한의 교육법과 사회주의교육에 대한 테제에 관한 설명을 후술한다.

한 지배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김정일체제가 들어서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북한에서도 의식구조와 생활방식에 있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교교육에서 변화를 요청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물론 북한체제의 속성상 계급의식이나 정치적 갈등의 활성화라는 조직적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사회적 이해관계 내지 일상에서의 저항이 나타나면서 공동체적 인간관계의 균열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한 경제개방정책과 이로 인한 북한의 대내경제의 방식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이 노동현장과 일상생활영역에서 경쟁, 이득의 인정과 개별화된 소비행태의 확대에 의하여 일부이지만 개인주의화의 진행을 엿볼 수 있다.³⁸⁾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주체형의 인간양성에 의한 주체형 인간품성과 개인주의적 가치 사이에 괴리현상이 확대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집단주의적 원리에 입각한 사상성 중심의 교육은 현실적으로 개인주의화하는 생활영역에서 형식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화하는 북한의 생활양식에 대응하여 최근 북한은 교육에서의 기존방향에 현실을 고려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체형의 인간에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특성으로 사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간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김정일은 대학의 사명에 대하여 견결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이면서 동시에 유능한 전문가, 기술자로 키우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주체형 혁명인재는 사상성이 투철한 수령의 혁명전사이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전문적 과학기술인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³⁹⁾ 본질적인 북한체제에 순응하는 가운데 최근 과학기술중시의 인간형을 강조한 것으로 실리적 교육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실 북한은 대외경제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에 큰 관심을 두고 이를 실현하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38) 우 정, 『북한사회구성론』(진술북스, 2000), 253~256면.

39)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73~74면.

의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특히 교육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도 경제의 개혁·개방은 불가피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기반의 확충과 인력자원의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가서게 되었다. 이에 김정일정권은 과학중시정책을 강조하고 기술개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⁴⁰⁾

이러한 조치들은 구체적으로 학교교육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학생의 실력에 기초한 효율성의 강좌,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 교육제도의 개선조치가 그러한 변화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실력보다 출신성분 내지 당성이 보다 앞서는 인제등용의 요건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학생선발에서 성분의 중시에서 이제 실력이 기본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수재교육체제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교육제도와 원리의 변화움직임을 법제면에서의 정비를 가져왔다. 기존의 북한의 교육체제와 제도, 원리를 규정하여왔던 사회주의교육체제를 법체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정일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교육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후의 논의는 새로 제정된 북한 교육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40) 그래서 북한은 과학중시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교육에서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변화로서 외국어교육의 강화, 일부 실무자들에 대한 시장경제체제 교육, 일부 고등중학교에서의 지역적 특색에 입각한 특성화 교육의 실시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제 3 장 북한 교육법에 대한 분석

제 1 절 북한 교육법의 제정배경과 의미

I. 교육법의 제정배경

앞서 언급한 대로 북한은 정권수립기부터 교육부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주력하여 왔다. 북한에서 교육은 정권 및 정치체제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에 관하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김일성의 교시 등을 통하여 교육에 관한 법령을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김정일시대에 접어들어서면서 1999년 8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이하에서는 ‘교육법’이라고 약칭함)을 채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지도체계 및 통제의 강화를 위하여 ‘교육법’을 제정하였는데,⁴¹⁾ 이는 기존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이하에서는 ‘사회주의교육테제’ 또는 ‘교육테제’라고 약칭함)와 ‘어린이보양교육법’ 등 교육관련규정들을 체계화하여 단일 법제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테제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 교육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 강화 등 북한 교육부문의 지침역할을 해왔다.⁴²⁾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개념은 사람들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혁명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혁명사업이라고 요약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원리를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데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한 교육은 ‘정치사상교양’을 가장 중시하면서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이념적 기초는 법률로 정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론 체계화하여

41) 『중앙통신』, 1999년 8월 11일자.

42) 明淳龜,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 『북한법연구』, 제3호(북한법연구회, 2000), 186면 참조.

교육지침으로 삼고 있다.⁴³⁾

북한의 1998년 헌법은 제43조에서 사회주의교육의 이념에 대하여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과 교수교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1977년 9월 사회주의교육테제이다.⁴⁴⁾ 이 테제는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김일성이 노동당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1977. 9. 5)에서 종래의 교육정책과 행정분야에서의 제반관리 및 운영지침을 집대성해 발표한 문헌으로서 인간 개조사업과 사회주의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업적과 경험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가 사람들을 공산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식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⁴⁵⁾

북한은 정권 수립 당시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용해 왔던 제도와 권력을 도입해왔고 이를 통해 후진상태를 극복하려 하였다. 교육과 생산을 결합한 기술의무 교육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수단으로 사용한 초기의 노력도 경제정책의 실패, 계속되는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 등 혼란속에서 그들 나름의 독특한 생존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우선 주체사상을 무기로 ‘수령’의 영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여 체제안정이라는 효과를 노렸다. 당·정·군을 동원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수령절대체제는 지킬 수 있었지만 국가배급체제가 무너질 만큼 극심한 경제난은 체제와는 별개의 문제임을 인식하였다. 정치체제와 경제회복이라는 두 가지 딜레마를 극복해야 하는 고민하던 시기에 북한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변화된 정책

43) 김경웅·박갑수, “북한의 교육과 문화예술” ; (http://www.unikorea.go.kr/kor/gallery/stand/understand4_view.php?db=Tab_1&boardno=17&content=B26/B262.htm&code=625&flag=0).

44) 동 테제는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개요 2000』(통일부, 1999), 487면.

45) 김경웅·박갑수, 앞의 사이트.

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조치도 마련하였는데 1992년과 1998년의 헌법개정은 그러한 북한의 대응책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은 1990년대 두 차례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주요한 국정목표와 방향의 변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분야의 개선책을 구체화하였다. 교육법의 제정도 북한의 변화에 대한 교육부문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법제정비의 내용은 바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북한에서 교육법에 대한 새로운 정비는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이미 변화된 교육환경의 발정방향을 법제도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점에서 북한에서 교육법을 새로 제정한 것은 교육을 통한 국가체제의 수호라는 명분과 실재를 감안할 때, 북한의 김정일체제 하에서 교육제도 및 내용의 정비를 통하여 북한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읽어볼 수 있다.

II. 교육법 제정의 의미

진술하였듯이 북한에서 교육법의 채택은 현재의 북한상황을 고려하여 체제강화의 방안으로 교육제도에 대한 체계와 내용에 관한 정비를 의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이번의 북한교육법의 채택은 기존의 교육관련지침 내지 법령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제정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김정일시대에 들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국정운영의 법체계화의 시도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⁴⁶⁾ 이것은 김정일체제에서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서라도 기존의 관행과 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교육법의 제정은 교육체제와 제도에 국한하는 변화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전반적인 변화 가운데 교육부문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법제정비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법의

46) 朴井源, 『北韓 金正日體制的 法制整備의 現況과 展望』, 앞의 책, 152~153면.

제정은 그 가운데 교육부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새로운 법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체제, 즉 사회주의원리에 입각하고 수령의 유일지배체제가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에게로 승계된 체제를 수호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예컨대 현재 두드러지게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련법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기본적인 북한의 사회주의원리는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 경제관련법령에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고 자본주의경제의 원리를 일부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체제수호를 위한 현실적 방편으로 경제부문에서의 실용주의적 원리와 입장을 일부 도입하는 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그동안 교육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교육법을 새로 채택한 것은 향후 체제의 근간이 될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화·조직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교육사업에서의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사회주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파악할 수 있다.⁴⁷⁾ 북한의 교육은 표면적으로는 집단주의적, 정치 교화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개성을 뒷전으로 미뤄 둔 채 모든 사람을 획일화하여 완전 개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 근원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북한 체제가 의도한 대로 인간형이 ‘교양’되었다고 해도,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아랑곳없이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하겠다.⁴⁸⁾

요컨대 북한의 교육법제정은 전체적으로 북한체제, 즉 김정일체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북한법제의 정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한편 북한의 교육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북한이 교육법의 채택과 관련하여 제기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교육법에 대한 법규해설을 통하여

47) 『주간 북한동향』 1999. 8. 7~8. 13 (통일부 정보분석국, 1999) 참조; 북한의 교육제도와 학제에 관한 분석은 明淳龜, 앞의 책, 186~189면 참조.

48) 김경웅·박갑수, 앞의 사이트.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들을 보다 힘있는 존재로 키우며 사회 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김정일이 지적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⁴⁹⁾

한편 북한의 교육법은 북한이 처한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교육도 기존의 제도적 기반이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환경의 조성에 전환점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북한주민의 불만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북한이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입법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북한당국의 의지를 북한주민에 대하여 피력하는 동시에 주민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요구도 수용한다는 성과를 반영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⁵⁰⁾

제 2 절 북한 교육법의 구성과 내용

I. 교육법의 구성

북한 교육법은 총 6개장 52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장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은 ‘교육법의 기본’에서 교육의 사명과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교육의 기본 형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 체력을 가진 인재교육”을 교육의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제2장은 ‘전반적 무상교육제도(11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3장은 ‘교육기관과 교육일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기관과 배치 및 운영원칙, 그리고 교육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넷째, 제4장은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의 성격과 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49) 『민주조선』(북한의 내각기관지), 2000년 2월 27일, 2면.

50) 한민길 외, 『북한교육관계법령비교연구』, 앞의 책, 52면.

다섯째, 제5장은 ‘교육조건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의 주체, 교육의 기능을 통하여 교육의 장을 전개해 나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섯째, 제6장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책임지도 및 통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육법상의 구성체계는 앞서의 교육체제의 규정과 비교될 수 있다. 교육체제는 비록 법령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교육원리와 제도에 대하여 기본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교육체제는 전문에 이어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어 사회주의교육학,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사회주의교육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교육체제가 내용상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교육법과 교육체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면서 교육법을 분석하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II. 교육법의 내용분석

1. 교육법의 기본(제1장 제1조~제11조)

교육법은 제1장에서 교육의 정의와 교육법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교육에 대한 정의와 교육법의 목적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이어 교육법의 목적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 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한다(제1조). 또한 북한에서 확립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라고 하고, 사회주의교육제도 발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제2조).

둘째,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관한 규정이다. 교육법에 의하면,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고, 교육사업에서의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의 구현을 국가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 규정은 교육테제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북한헌법 제4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즉, 헌법상 “지, 덕, 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키운다”는 내용에 따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먼저 사상의식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은 교육테제와 교육법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알다시피 북한에서 교육이념과 목적의 중핵개념은 바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교시로 제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교양에 의한 혁명화·노동계급화 달성,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혁명의 강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고지, 학생들에 대한 집단주의사상으로 교육교양, 새로운 사회주의생활양식대로 교육교양,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아동심리학 정립 및 교육, 교원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 등을 들 수 있다.⁵¹⁾ 이로부터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을 말하면서 사회주의교육사업을 혁명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북한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였다.⁵²⁾ 이 원칙을 기초로 교육테제를 통하여 교육강령이 제시되었으며, 교육법에도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법은 교육사업을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증대, 교육조건보장 및 교육지원강화의

51) 김일성,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422~454면; 황정규 외, 『北韓教育의 照明』(법문사, 1990), 145~147면.

52) 그 원칙을 간추리면, ①교육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원칙, ②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 ③교육에서 노동계급적 선을 세울데 대한 원칙, ④교육에서 과학성을 보장할데 대한 원칙, ⑤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킬데 대한 원칙 등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평양: 사회과학원, 1975), 55~94면: 위의 책, 147면.

무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 그리고 교육사업의 추진에서 교육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하고, 이를 국가의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셋째, 교육의 기본형태에 관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국가는 학교교육의 결정적 역할을 높이는 기초위에서 사회교육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제5조).

넷째, 무엇보다 교육법에서도 주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라고 하고, 국가에 대하여 주체교육체계를 바로 세워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6조). 주체교육의 증시는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의 강화에 따른 것이다. 주체사상의 이념적 강화와 사상혁명의 강조는 북한의 교육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다. 교육체제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보편적 사회주의교육에서 나아가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의 확립시기에 북한체제의 특성에 따라 ‘주체교육’을 강화해 나아가게 되었다. 이전의 사회주의인간형이 인민과 집단을 위하여 공산주의에 복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면, 주체형 인간은 인민과 당과 수령은 하나라는 명분에 의거하여 ‘수령에게 충실한 혁명전사’를 키우는 것으로 요약된다.⁵³⁾ 이에 따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투철한 인간은 개인의 이익과 공명이 아니라 혁명위업과 수령과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그래서 북한에서 창출한 주체형인간은 공산주의건설자라는 보편적 의미보다 유일체제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재생산하는 목적 아래 체제유지를 위한 김정일체제의 수호자로서의 의미를 갖는 인간형을 말하게 된다.

다섯째,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으로 이른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국가는 교육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학업

53) 예컨대 1990년 이후 북한 체제의 위기상황에서 이른바 ‘김일성·김정일의 충성동기와 효자동이’를 강조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강화함에 따른 무장형의 인간형을 말한다. 박호성 외, 『북한사회의 이해』(인간사랑, 2002), 238면.

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제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며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은 교육체제에는 없는 대목이다.⁵⁴⁾ 현재에는 북한에서 11년제 의무교육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등교육의 의무화가 달성된 시기를 감안하여 고등교육을 일반화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온사회의 인테리화를 강조하여 왔으며,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현실을 두고 볼 때, 아직은 희망사항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⁵⁾

여섯째, 교육의 현대화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연관되어 있다. 특히 김정일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북한경제 발전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문에서의 과학교육사업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조향을 두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교육법은, 국가에 대하여 발전하는 현실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교육이론과 방법의 발전, 교육의 현대화를 위한 과제를 명시하고 있다(제9조).

일곱째, 교육부문에서의 국제협력과 해외조선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교육법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교육법은 이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의 옹호의무(제10조)와 교육분야에서의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강화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1조). 이러한 내용은 교육체제에서 전혀 없던 규정으로 북한이 폐쇄체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개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면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는 김정일정권이 폐쇄정책으로

54) 그 이유는 교육체제가 나온 당시에는 11년제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중등교육을 일반화시키는 문제에 중점을 두었고,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관한 인테리화사업은 현실적으로 중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만길 외, 『북한교육관계법령비교연구』, 앞의 책, 57면.

55) 이점에서 교육체제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한 기초위에서 전망적으로 고등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교육법에서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조향을 두지 않고 있다.

는 교육부문에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⁶⁾

2.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제2장 제12조~제18조)

북한의 교육법은 제2장에서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교육체제의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규정의 내용상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써 무료교육의 질적인 발전에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무료의무교육제에 관한 기본규정이다.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의 실시는 “온 사회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라고 규정하고, 북한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공민은 노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으며,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으로 하고 있다(제13조). 알다시피 북한에서 11년제의무교육제도는 북한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강조되어왔다. 교육법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의 의무, 부모 및 보호자의 취학보장의 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하며,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셋째, 의무교육보장 조치에 대한 강제성을 띠어 강력한 의무교육의 실시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어린이와 맹, 룡아 같은 불구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

56) 북한에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법제도화의 사례는 최근의 북한법제의 정비내용을 볼 때 익숙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법제와 대외경제법제의 내용은 국제협력 및 국제법존중주의에 입각한 북한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록 하였다(제15조).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라고 규정하고, 교육기관에 대하여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제16조).⁵⁷⁾

넷째, 장학금혜택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먼저 일반장학금으로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전문학교와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롱아 학교의 정한 학생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특별장학금은 학업우수학생에게 수여하고, 우대장학금은 군관복무 또는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학생, 박사원생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특히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현직생활비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제18조). 이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국가부담으로 양성할 것임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장하여 낮은 값으로 보장하고, 영예군인, 무의무탁 학생에게는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제18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북한이 교육에 대한 보장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무료의무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3. 교육기관과 ‘교육일군’(제3장 제19조~제27조)

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육기관의 종류와 급수, 기구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를 내각이 배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일군에 관해서는 교원과 교육지도일군으로 구분하고 각자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의 법규정을 살펴본다.

(1) 교육기관

교육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육기관의 정의와 기능이다. 교육기관을 “교육사업의 거점이며 교육일군은 교육사업의 담당자”라고 정의하고,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57) 교육의 무료원칙은 교육테제와 같다. 그러나 교육테제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충한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걸쳐 실시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고 있었다.

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일꾼체계를 정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

둘째, 교육기관의 종류로는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누고, 전자에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과 박사원 등이 속하고, 후자에는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등이 속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제20조).

셋째,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중요성, 규모, 학위학직을 소유한 교육일꾼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이 사업은 내각의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제21조). 한편 교육기관의 배치의 원칙으로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재에 대한 수요와 지방의 문화발전수준, 학생수, 통학조건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배치제한지역으로 학생의 교육교양, 건강, 발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제22조).

넷째, 교육기관의 운영과 예산, 관리원칙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하되, 재정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였다(제23조). 아울러 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정하였다(제24조).

(2) '교육일꾼'(교원)

교육일꾼에 대해서는 그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수사업을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꾼으로 분류하고 있다(제25조). 그러면서 교원의 예외적 인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6조).⁵⁸⁾

그리고 교육일꾼에 대한 고상한 도덕품성과 높은 과학기술적, 교육실무적 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

58) 이러한 규정은 교육테제에서 없는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변화된 교육환경과 변화에 따른 수요의 필요성에 따라 수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교육의 증시에 의해 실무적 교육의 강화라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는 교육일군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원칙적인 교원에 대한 우대조치를 명시하고 있다.⁵⁹⁾

4. 교육내용과 방법(제4장 제28조~제36조)

교육내용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종래의 북한에서 강조되어온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에 결합되는 교육내용에 체육교육과 함께 예능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새로이 추가된 규정에 해당한다(제29조).⁶⁰⁾

첫째, 원칙규정을 보면, 교육법은 교육내용과 방법이 교육의 성격과 질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내용의 올바른 구성과 교육방법의 적용을 통하여 교육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28조).

둘째, 교육법은 교육강령에 대한 개념, 작성주체와 심의주체 및 절차, 학교에서의 교수안 작성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32조~제36조).⁶¹⁾ 이를 보면, 교육강령에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속하며(제32조), 중앙교육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되, 고등교육부문과 전문 학과와 과목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제33조). 국가는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에 비상설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고칠수 없도록 하였다(제34조). 그리고 교원은 교육강령에 기초하여 담당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교수안은 집체적 협의를 거쳐 완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5조). 교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제36조).

59) 교원의 임무에 관한 규정은 교육테제에도 규정되어 있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60) 교육테제에서도 교육내용에 있어서 정치사상교육을 우선하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한다는 원칙적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종래 교육내용에 체육교육의 결합을 강조하여온 데에서 교육법은 예능교육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61) 교육테제에서는 교육강령에 대한 언급은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셋째, 교수교양에 대하여 교육일군은 학생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기관은 교수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배합하여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제30조).

5. 교육조건보장(제5장 제37조~제44조)

교육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어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조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⁶²⁾

먼저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임무라고 천명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에 상응하여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였다(제37조). 여기서의 인민경제계획에 입각한 교육조건에의 보장을 위하여 재정은행기관의 예산편성과 운용원칙(제38조), 학교 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른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의 건설과 주기에 따른 정기보수를 명시하고 있다(제39조). 또한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등의 계획적 생산 공급(제40조), 교육지도기관의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테이프’ 등의 새학년도 시작되기 전 공급(제41조)할 것을 규정하였다. 더욱이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하여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제42조).

다음 교육조건에의 충실한 보장을 위하여 물질적,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관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언급하였듯이 재정예산의 확보(제38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수보장, 교육기자재 및 설비의 공급보장, 지방정권기관과 해당기관의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교육복지 시설의 보장(제43조) 등은 이를 말해준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후원사업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

62) 이에 관한 규정은 교육체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체제에서는 국가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는 교육조건보장에 대한 원칙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4조). 후원사업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을 물질기술적으로, 노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6.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6장 제45조~제52조)

국가의 교육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법은 구체적인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수단을 갖추고 있다. 물론 교육테제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당중심의 규정과는 달리 교육법에서는 중앙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³⁾

첫째, 역시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사회주의교육을 바로 실시하기 위한 중요담보라고 천명하고,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제45조). 구체적으로 교육사업지도기관은 내각의 지도 하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하도록 하고, 이들 기관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교육일군양성,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의 보장 같은 사업을 지도하도록 하였다(제46조).

둘째, 각 해당기관의 지도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과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이를 보면,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의 조직과 건설, 보수, 교육강령의 집행,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교양원 양성 같은 사업을 조직지도(제47조),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교육기관은 학생모집사업의 책임적 수행(제48조), 지방정권기관의 사회교육시설과 청소년과외교양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가정의 교육교양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조직지도(제49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셋째, 교육사업의 전개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중앙의 국가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교육사업으로서 정책결정, 교육강령의 결정, 교육사업의 물질기술적 수단의 보장 등은 중앙에서 담당하고, 교육

63) 당의 교육담당의 강화를 규정한 교육테제와 이를 배제하고 있는 교육법이 차별되는 내용의 하나이다.

강령의 집행이나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교양원 양성등의 사업은 지방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양자의 역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제46조, 제47조).

넷째, 학생선발기준에 대하여 분명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즉, 고등교육과 수재교육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였다(제48조). 이러한 규정은 북한이 교육제도의 개선의 주요과제로 실력에 바탕한 인재선발전형원칙을 내세워 본질적인 교육의 정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종래 당성 또는 출신성분에 의하여 학생선발이 이루어져 왔던 관행과 불합리, 불법성을 치유하여 교육에서의 평등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

다섯째,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하며(제51조), 이 법을 어겨 교육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제52조).

Ⅲ. 북한 교육법의 특징

앞서 논의한 교육법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론 북한은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원칙과 종래 강조해 온 교육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내용에는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변화에 유의하여 교육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1. 북한 교육법제의 체계화

최근 북한은 김정일시대에 들어서면서 제반분야에 있어 법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1992년과 1998년의 헌법개정이 김정일체제의 출범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으로써 북한에 김정일체제의 확립을 위한 입법적 대응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에 관한 원리와 제도의 경우 김정일체제 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의 개선내지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교육부문에서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엿볼 수 있다.

기실 교육법에 의한 북한교육의 원리와 내용의 체계적 제시는 북한정책의 현실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교육은 체제 수호를 위한 사상혁명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다루어져 왔었다. 그만큼 북한에서 교육은 정권적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부문이다.

그러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법제화한 것은 교육에 관한 국정 운영을 법제도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 김정일시대에 들어서서 교육부문에서의 정책적 입장을 완성하여 강력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교육법을 교육테제와 비교하여 볼 때, 교육테제가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 색채의 완화와 당중심의 교육제도의 약화를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법조문상의 규정내용대로라면, 과거에 비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시대적 상황변화의 반영

교육법에는 북한사회의 발전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교육부문에서 그동안 강조해온 내용을 신설하는 것과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법제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먼저 이른바 북한의 교육부문에서 강조하여 온 '온사회의 인테리화'를 교육법에 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외관계의 개선움직임과 대외경제개방이라는 실리적 정책전개와 관련하여 교육에 있어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입법으로 보인다.

같은 배경에서 교육법에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강조하여 규정한 점도 북한의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려는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3. 무상교육제도의 적극적 추진

북한은 무상의무교육제도의 장점을 강조하여 북한의 교육제도의 우수성을 자랑하여 왔다. 이에 더하여 교육법에서는 무상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규정을 두었다. 교육법은 무료의무교육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강제적 성격이 강한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교육테제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충한다고 한 것에 비추어 단기적으로 무상교육의 확대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었지만 교육법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깊은 산골, 외진섬등의 지역주민, 장애아동들에 대한 의무교육의 보장조치에 대하여 명시하고, 학생들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의무교육조항에 있어 교육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이에 의하여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등은 교육시설과 설비의 건설과 보수를 위하여 앞장서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되는 기자재의 제때, 제대로의 공급에 대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4.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교육법은 교육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시설에 대한 국가사회의 지원의 절실한 필요를 반영하고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북한교육의 난국을 일부 의미하고 있을 수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 교육법에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교육사업에 대한 필요한 재정의 책임적 보장 및 유용금지, 국가 사회기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수보장, 교육기자재 및 설비의 공급보장, 교과서 및 기타 학습자료의 공급,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우선보장 등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시설의 확충 내지 보장 등에 언급하였다.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가와 정부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현실에서 교육재정의 부담능력이 교

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있어야 할 것이다.⁶⁴⁾

5. '교육일군'의 자격확대

교육법상 교수사업에 종사하는 교원과 이들을 지도하는 '일군'으로 구분하고, 교원의 선발에 있어 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교원선발에 대한 예외적 조치를 두어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교원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교원자격의 예외조치로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등을 규정한 것은 북한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한 신속한 교원확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경제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으며, 실리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강화방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6.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교육법은 구체적으로 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였다. 특히 지도통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교육체제에서는 당의 지도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교육법에서는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당의 이름과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

예컨대 교육사업에서의 당의 지도를 강조하기 보다 중앙교육행정기관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통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사업체계의 체계화가 선행되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교육법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당해 기관의 업무영역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여 이러한 사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64)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경제난을 겪으면서 교육부문에서도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교육법에서 정한 교육사업의 지원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교육여건의 열악성 등은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윤종혁, "북한의 교육환경과 교육활동",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전망』, 앞의 논문집, 32~44면.

제 4 장 남북한의 교육제도 비교

제 1 절 북한 교육제도의 특징과 변화

I. 북한교육제도의 특징

1. 정치사상교육

북한 교육에서 북한의 공산주의체제를 유지,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치사상교육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을 살펴본다.

(1) 목적

북한의 교육목적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정치사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끊임없이 투쟁하고 헌신하는 혁명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북한은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제39조)라고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현행헌법(1998년)에도 그대로이다(제43조).

또한 교육테제(1977)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을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라 하고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 제도를 위하여 복무하고 로동계급의 혁명 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진술하였듯이 교육테제는 1977년 9월에 발표된 것으로 북한의 교육원리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북한 교육의 기본원리로서 몇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⁶⁵⁾ 이러한 교육원리는 이전과 비교해서

65) 그것은 1) 교육에서 당성, 노동 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2) 교육에서 주체를 세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을 보다 자주적으로 설정해 보려는 노력의 산물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⁶⁾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로는 자본주의 사상 침투를 배제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할 뿐만 아니라 노동 계급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든다. 우선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과 관련하여 교육 분야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부르쥬아 사상과 퇴폐적인 생활 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특히 부르쥬아 교육이론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사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가르고 노동 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교육에서 노동계급적 선을 세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계급적 선이란 노동계급에 헌신하는 숭고한 정신과 태도를 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테제에서는 교육에서의 주체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이란 교수 교양 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이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바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북한의 교육이 북한의 이익과 북한의 실정에 알맞은 북한의 인민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 입장에서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북한의 교육에서는 사람들을 우리 당의 정책과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켜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자연

위야 한다. 3) 교육과 혁명 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4)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 등이다.

66)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구체제의 청산과 마르크스 레닌주의 교육이론의 구현을 강조하였다. 1961년 9월 노동당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교육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중국적으로 청산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육이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새 세대들을 일반 기초지식과 함께 현대적 기술을 소유한 지명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일군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 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교육테제이다.

과 지리에 대하여 잘 알려 주어야 하며, 또한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북한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쳐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 정치사상교육의 내용

북한의 교육내용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의 정치사상 교양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고 있다. 교육테제에서 교육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북한의 교육내용에서 정치사상교양이 일차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정치사상교양이란 사람들을 혁명사상과 도덕으로 부장시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육으로서 북한의 혁명적 학술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⁶⁷⁾ 여기서 교육은 현대과학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 한다면, 교양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⁶⁸⁾

북한의 정치사상교양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혁명전통학습이다. 먼저 주체사상교양의 강화는 바로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를 체득하는 방법으로 주체사상의 구현인 김일성의 저작과 당의 문헌원문의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 혁명전통학습은 정치학습, 즉 사상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한 인민대중의 사상교육의 강화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통한 북한의 정치사상 교양 내지 교육은 인간개조사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왔다. 인간개조사업은 바로 주체사상교육을 통한 인간개조사업의 전개를 말하는 것이다.⁶⁹⁾

67) 북한은 엄격한 의미에서 교육과 교양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정규 외, 앞의 책, 59면.

68) 북한의 사전적 의미로 교양은 “사람들을 사회생활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게 하는 모든 과정”으로 설명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297면.

69) 황정규 외, 앞의 책, 60~62면.

이러한 원칙아래 북한의 취학전 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의 내용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초중등학교 교육내용에서 이른바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특강’, ‘공산주의 도덕’이라는 과목은 바로 정치사상 교육을 위한 특수 과목이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는 교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에서도 정치사상교육의 내용을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다.⁷⁰⁾

또한 고등중학교의 교과목에서도 정치사상교육에 관한 별도의 과목이 편성되고 있다. 예컨대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역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활동’, ‘현행 당정책’, ‘공산주의 도덕’의 과목을 들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보통교육부문에서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용과 방법 면에서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1980년대 북한은 교과과정과 교수요강을 개정하였는데, 이 교과과정에 의하면 김일성은 물론이고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⁷¹⁾ 이러한 변화는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등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 김정일에 관한 교과가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데, 이 교과는 종전의 ‘특강’과 ‘공산주의 도덕’이 폐지되고 그것에 대체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은 변화가 없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변화하고 있다. 즉 북한의 정치사상교육 가운데 일반적인 공산주의 사상에 관련되는 내용은 약화되는 반면에 김일성 일가의 이상화는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내용일 한층 강화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70) 인민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 순수한 언어생활에 관한 주제는 불과 15%에 지나지 않으며, 김일성 부자 찬양 및 이상화 관련 내용이 64%이고 노동 애호 등 공산주의 교양과 남한 및 미국에 대한 비난 등 적개심 고취가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용린,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국토통일원, 1987), 57면.

71) 기존의 교과과정에서 김정일에 관한 교과가 추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전의 교과과정과 비교하면 정치사상교육과 관련되는 ‘특강(152시간)’과 ‘공산주의 도덕(152시간)’이 폐지되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어린 시절’ 교과가 새롭게 편성되어 있다.

결국 북한의 정치사상교육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의 정당화와 정권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강화수단으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정치사상교육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이념으로서 지배이데올로기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3. ‘어린이 보육교양’

북한은 취학전 교육을 강조하여왔다. 북한은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에서 취학전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건설의 원칙에 충실하여야 한다는 원칙적인 측면과 함께 북한의 사회경제적인 여건에서 나온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의 1976년 4월29일에 공포된 ‘어린이보육교양법’(이하에서는 ‘보육교양법’이라고 약칭함)은 취학전 교육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취학전 교육의 목적, 취학전 교육을 위한 국가의 역할, 어린이보육보양기관의 설치조건과 지도관리, 보육원과 교양원의 자질 등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⁷²⁾

다음에 보육교양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북한이 취학전 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는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사상적으로 건전하고, 지적으로 지혜로우며, 육체적으로 튼튼한 어린이로 키워야 사회주의 혁명의 대를 깨끗이 이어나갈 수 있다”⁷³⁾고 주장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육교양법의 규정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면, 보육교양

72) 북한에서 보육교양이라 함은 ‘보육’에 ‘교양’을 결합한 용어로, 학령전 어린이를 담당하는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돌보는 양육의 기능 외에 춤과 놀이 등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능을 함께 겸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어린이는 날 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지칭한다. 북한의 어린이 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 외에 육아원, 애육원이 있다. 탁아소는 생후 30일부터 유치원에 가기 전인 만 3세까지의 유아를, 유치원은 만 4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한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고아들을 기르는 기관이다.

73) 김일성저작집, 1978, 25면.

법은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어린이 보육교양의 원칙을 “항일혁명 투쟁에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받는 법”(제4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을 것”(제5조) 등을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세우고,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제7조)을 보육교양의 이상으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어린이 보육교양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에서 취학전 교육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보육교양법에서 보면 ‘국가와 사회협동 단체들은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제12조)을 강조하고, ‘훌륭한 보육교양 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꾸려준다’(제13조)고 하였다. 이 밖에도 ‘거리와 마을에 공원과 놀이터를 만들 것’(제14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에게 식량을 공급할 것’(제15조), ‘국가와 사회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각종 식료품과 생활 용품을 낮은 값으로 공급할 것’(제16조, 제17조), ‘고아는 국가가 양육할 것’(제18조)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서 취학전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여성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와 사회단체에서 어린이 보육을 담당함으로써 여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덜어 주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가사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육교양법에서는 어린이 보육을 위한 일환으로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보육교양법은 제20조에서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산전 산후 휴가 보장’, 이 기간 동안의 ‘노임과 식량, 분배 몫은 국가와 사회단체가 부담’, ‘의료 기관의 무료이용 보장’, ‘임신한 여성에게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에 맞는 험한 일을 시키며’, ‘노동 시간 안에 쉴 먹이는 시간의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어린이 보육교양에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 품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린이의 양육 방식으로서 공산주의 품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집단주의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는 유아의 초기에서부터 집단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보육교양법에 의하면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한다”(제31조)라고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보육교양의 방법으로서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 버릇되도록 교양한다’(제32조),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제33조), ‘예절바를 품성을 가지며 문화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버릇을 기르며’(제34조),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 주며’, ‘우리 말, 노래, 춤,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할 줄 알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보육교양의 교육은 바로 북한체제의 수호,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일지배체제의 강화수단으로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유치원 교과과정을 보면 북한의 유아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⁷⁴⁾

한편 북한의 탁아정책은 북한의 사회경제적인 조건에서 비롯되었다. 즉 북한의 노동정책, 특히 여성 노동 수급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 부족한 부분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들의 가사 노동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가사 노동에는 식사준비, 청소 및 빨래, 자녀 양육 등이 포함되지만, 이중 여성들의 가장 큰 부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자녀 양육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탁아소 설립의 주

74) 유치원 교과과정에 의하면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내용이 160시간으로 편성되고 있다. 가장 시간수가 많은 교과는 조선어로서 280시간이며 산수가 200시간이다. 그밖에 ‘노래부르기’, ‘무용’, ‘도화와 공작’, ‘체육’이다. 유치원의 1시간은 30분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 목적은 여성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에 탁아소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북한의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취학전 교육단계의 1년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를 북한에서는 입학 나이를 한살 낮추는 방법으로 의무교육 연한을 늘리었는데, 만 5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취학은 1974년에 이미 100%를 달성하였다고 한다.⁷⁵⁾

북한에서는 2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취학전 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취학전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경비는 국가의 지원 아래 공장과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⁷⁶⁾

4. 전반적 11년의무교육제도

북한이 교육제도 가운데 가장 자랑하고 강조하는 것은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제도이다. 교육체제에 의하면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본질이 의무교육이라고 하고, “사회주의 교육은 일부 소수 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全民교육이다”라고 하였다. 의무교육으로서 북한의 교육은 전 인민 모두가 무료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한다.

북한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강조하였으며, 이를 배경으로 하여 비교적 일찍이 의무교육제도를 확립하였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1956년에 전반적 초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이어 1958년에는 아세아에서는 처음으로 전반적 중등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다.⁷⁷⁾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2년부터는 1년동안 학교 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의 학교의 의무교

75)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37면; 황정규 외, 앞의 책, 82면.

76) 이로써 20명 이상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는 탁아소, 유치원을 건설함으로써 취학전교육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는 자체 수입의 일부를 조성하여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에 지출하도록 하였다.

77) 리영복, 앞의 책, 21면.

육을 주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시작하였으며, 1975년 9월에 전반적으로 11년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다.

교육체제에 의하면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은 모든 새 세대들에게 노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 일반교육을 주는 무료 의무교육이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북한의 의무교육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인력계획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1956년에 초등 단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는데 초등단계의 의무교육은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부터 이미 준비사업을 끝냈다고 한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의무교육의 준비작업은 중단되었으며, 전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아무 것도 없는 빈터에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이 수많은 공장과 기업소 그리고 주택을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후 학교건설을 단순한 복구 건설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후대들의 행복과 희망, 그들의 미래와 조국의 운명의 견지에서 학교부터 1차적으로 건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⁷⁸⁾

또한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은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 계획 기간에 준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촌중학교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집중함으로써 1958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1956년에 이미 평양시를 비롯한 지방의 여러 도시와 노동자 지구들에서 인민 학교 졸업생의 전부가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민 학교 졸업생의 81.9%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⁷⁹⁾

그리고 전반적 9년제의 기술의무교육은 1961년에 준비사업이 시작되었다.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7개년 계획기간에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⁸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노동할 나이(17살로 규정하고 있음)에 이르기까지 무료로 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78) 위의 책; 22면.

79) 위의 책; 25면.

80) 위의 책; 26면.

그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풍부한 일반 지식과 현대 과학기술의 기초지식을 가진 혁명 인재로 키우기 위한 선진적인 교육제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1966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 1967년 4월1일부터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⁸¹⁾

아울러 북한은 의무교육이 무료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테제에서는 '무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 국가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준다는데 있다'고 하였다. 국가 부담에 의한 전반적 무료 교육이 가능한 것은 '생산 수단과 교육시설을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어 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전반적 의무교육은 1972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실천은 1975년 9월에 가서 이루어졌다. 초등의무교육은 4년제의 인민학교에서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인민학교가 4년으로 비교적 짧은 것은 국가나 가정에 의존하는 소년기를 단축하고 보다 성숙하고 독립적인 일꾼으로서의 의식을 일찍이 일깨우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일찍이 사회활동에의 참여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중학교는 6년제로서 남한의 중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초기 4년간을 중등반, 후기 2년간을 고등반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특별한 의미는 없다. 다만 고등반의 교과과정 편성에 있어 중등반보다 직업계열의 과목이 조금 더 부과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북한은 11년의 의무교육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1년의 의무교육기간에 학생들의 세계관 형성과 지적 발전, 품격 형성에 치중하고 있다고 강조한다.⁸²⁾ 사회주의 교육

81) 이후 유치원 1년간을 11년 의무교육제에 포함시킴으로써 1975년에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에 망라된 학생수가 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하는 560만명에 이르렀으며, 이해 9월 1일부터는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의 책, 37면.

82) 1984년 김정일의 서한에 의하면 11년 의무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등일반교육의

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 만큼 자주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1년제 의무교육을 교육성과로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이 전반적 11년 의무교육제에 대한 우월성의 평가내용은 다음으로 요약된다.⁸³⁾

첫째, 교육연한이 가장 긴 선진적인 의무교육제도라는 것이다. 유치원에서부터 노동할 나이가 되는 16살까지라는 것이다.

둘째, 철저하게 무료교육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학용품은 물론이고 의복까지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셋째, 단일학제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모든 학생들이 중등일반교육의 높은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의무교육이라는 것이다. 즉 대학 준비를 위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북한의 의무교육제도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에 따라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워내는 전진적인 교육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개인을 육성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특성과 능력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⁸⁴⁾

5. 교육과 노동의 결합

북한은 사회주의 교육에서 ‘이론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테제는 사회주의 교육방법으로서 이러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즉, 교육테제는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

내용과 방법의 질적인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등일반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게 구성하고 있다.

83) 리영복, 앞의 책, 40면.

84) 김태완 외,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앞의 책, 56면.

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라고 하고, “책에서 배운 이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 능력과 결부되어야 혁명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현지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현지학습을 시키지 않고 학교에서 책만 보게 하면 그들이 다 글뉘주가 되고 맙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학생들을 글뉘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써먹을 수 있는 글이라야지 뒤주안에 있는 글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⁸⁵⁾라고 언급하였다고 한다.

북한은 학교교육에서 이론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실천이 결합되어야 사회주의 교육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⁸⁶⁾ 실천교육의 일환으로서 북한에서는 각종 현장 견학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은 노동 현장에서의 생동하는 지식을 습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생산노동은 사회적 실천의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한다.⁸⁷⁾ 북한의 교육활동 가운데 생산 노동에 관련되는 영역은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실습 또는 노동 시간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 또는 현장 견학 등이 있다.⁸⁸⁾ 북한의 교육에서 생산 노동을 강조하는 것은 해방이후 지금까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

85) 김일성저작집, 1978, 13면.

86) 이와 관련한 북한의 언급을 보면,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 실습을 옹계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특히 생산 실습과 전공 실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생산 실습은 현대 생산의 기초적인 기술 지식과 전공실습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 실습은 현대 생산의 기초적인 기술 지식과 기계설비, 노동도구 등 기술 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며 고등 교육단계에서의 생산 실습과 전공 실습은 전문 분야의 과학적 원리와 현대적인 기술 기능을 습득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김태완 외, 앞의 책, 57면.

87) 이와 관련한 언급으로는, “생산노동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혁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풍모를 개조한다”, “학교교육에 전념하는 학생들을 생산 로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생산 노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노동 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노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책, 57~58면.

88) 문용린, 앞의 책, 14면.

고 실제적인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려는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⁸⁹⁾

6. 성인교육

북한은 일생동안 학습하는 ‘교육의 나라’임을 강조하여 왔다. 이는 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의 병행을 의미하며, 일하면서 배운다는 북한의 교육제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체제는 사회주의교육원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질적인 교육제도와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우고 후대교육 사업과 성인 교육사업, 민족 간부 양성 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북한에서 평생교육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체제의 교육내용 부분에서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교육법에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살펴본 바와 같다.

북한은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교육이 가지는 교육적 의의를 사회주의 사상교양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과 함께 사회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교양을 받도록 강조된다. 그 이유로는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교육적 영향을 주는 모든 곳에서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밀접하게 결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학생들에게 사회교육의 교육적인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 교양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⁹⁰⁾

89) 실제로 각종 산업현장에 학생들을 동원하여 생산과 건설 사업에 학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지역에서는 모심기, 제초작업, 관수 사업, 추수를 위하여 인민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의 기간에 걸쳐 농촌 지원에 나섰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 하여 나무 심기, 토끼기르기, 외화별이운동(파지, 파철, 파고무, 빈병, 짐승털 등 수집)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인민학교 학생과 고등중학교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도시와 공업지역에서는 고등중학교와 대학의 학생들이 도시 건설, 발전소 건설, 철도 부설, 기계 제작, 탄광 건설장 지원 등의 경제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87 남북한 비교분석』(자유평론사, 1987), 229면; 김태완 외, 앞의 책, 58면.

90)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 등의

북한에서는 교육의 전단계를 통합하여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의 평생 교육을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즉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 등 사람들의 성장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교육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 교양의 연속이다’라고 하여 평생교육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성인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성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인교육에서는 혁명적 세계관의 발전,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 는 구호 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 학습 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늙은 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무료 의무교육제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장점으로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전인민의 인텔리화’를 부르짖으며, 고등교육의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라 지칭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모든 이들이 생산 현장에서 일생동안 배우는 평생교육체제의 일환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혁명적 세계관을 튼튼히’하고 생산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손쉽게 습득할 수 있으며, 학습 현장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에는 근로자 고등중학교, 공장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와 같은 교육형태가 있다.

북한의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성인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공업대학,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이 생산 현장과 연계되어 있는 대학들이다. 이러한 대학의 운영도 공장과 사업소의 자체 운영으로서 생산활동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⁹¹⁾ 북한에서는 ‘온 사회의 인텔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에서 사상강연, 토론회 모임을 통하여 이 원칙을 실현하고 있다.

91) 공장대학은 1964년도부터 기존의 2년 과정을 3년 과정으로 연장하였다. 1970년에

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고등교육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우월한 교육체계로 선전하고 있다.⁹²⁾

II.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와 특색

진술한 내용은 북한의 교육원리와 제도에 관한 원칙적 부분에 관한 언급이다. 현재 북한은 대내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문에서도 그러한 변화에 대응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김정일시대에 들어선 북한의 교육에 관한 정책적 변화와 현실변화를 중심으로 한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현실의 북한의 교육제도의 변화동향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의 북한교육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1. 통치이념의 강화와 교육정책의 방향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1980년대말의 사회주의권국가들의 변혁과 북한에 대한 개방의 압력아래 체제수호와 유지를 위한 격변의 시기에서 북한은 교육을 통한 체제수호에 중점을 두었다. 체제수호와 이를 위한 방편으로 경제개방이라는 목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교육은 유용하고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여기에서 1990년대의 북한체제의 통치이념의 강화는 그대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주체사상의 강화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주체사상은 김정일의 후계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약간의 변화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사회주의국가들의 대변혁에 대한

이르러 41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이들 공장대학을 나오면 공장과 기업소에서 기사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정성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대군의 양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37면.

92) 김정일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 대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현단계에서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교육체계”라고 하고, “교육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들을 잘 운영하며 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공장대학과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더 늘여 대학을 나오지 못한 근로자들을 공부시켜야”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저작집』, 1984, 23면.

대응논리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강화, 김일성에 이은 김정일체제 등장에 따른 ‘붉은기 철학’의 강조, 그리고 김정일체제하의 ‘강성대국건설’이라는 체제이념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다음의 북한의 통치이념과 관련한 교육정책의 전개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우리식사회주의의 강화에 따른 주체형 혁명인재의 양성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화된 우리식 사회주의에 따른 교육정책은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의 체제위협적 요인은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구소련방의 해체,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에 대하여 북한식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체제정당화의 이념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사업에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민족,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긍지를 가지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이른바 ‘충실성교양’을 강화하여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인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를 양성하는 것을 강조하였다.⁹³⁾ 이를 기초로 북한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교육제도’⁹⁴⁾의 실현을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⁹⁵⁾

둘째, 김일성주석의 사망에 이은 김정일권력체제의 확립시기의 통치이념의 강화에 따른 교육제도의 전개내용이다. 김일성의 사망이후 강조된 정치적 담론은 이른바 ‘붉은기 철학’으로 대변된다. 붉은기 철학은 이 시기의 북한체제가 당면한 위기국면에서 전체 사회의 심리적 동요를 방지하고 사회주의의 길로 매진하게 하는 집단적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붉은기 사상을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려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정의하였다.⁹⁶⁾ 그러면서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김일성사망이후 김정일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이른바 유훈통치를 합리화하는 데에 주력하였다.⁹⁷⁾

93)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1), 207면.

94) 이에 대하여 북한은 모든 주민이 중등교육을 마치고 노동자, 농민까지 대학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김일성노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20돌기념 중앙보고회”, 『중앙방송』, 1997. 9. 5.

95)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 동향”, 앞의 논문, 58면.

96) 1997년 신년공동사설.

97) 이와 관련하여 붉은기사상은 주체사상에서의 혁명적 수령관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수령의 결사옹위정신은 혁명적 수령관의 변용이라고 평가된다. 정성장, “김정

김정일은 유훈통치를 통하여 체제수호를 위한 활로를 열었으며, 교육부 문에서는 혁명전통강조 교육으로 구체화되었다.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구호아래 혁명열사능과 애국역사능을 건립하는 것을 통하여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성,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교육하였다.⁹⁸⁾

셋째,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이후의 정치이념의 강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방향이다. 1998년 헌법개정은 바로 김정일체제의 공식출범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함께 북한은 이른바 ‘강성대국’론을 주창하였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⁹⁹⁾을 새 시대의 목표로 제시하고 군사우위의 정책을 추진하여왔다.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서 권력의 핵을 이루고 북한권력의 상층부를 군부인물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우위 노선에 입각한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워 통치체제를 강화하였다.¹⁰⁰⁾ 강성대국건설론은 대체로 주체의사회주의 건설, 수령중심의 정체, 사상강국, 선군정치의 군사강국, 가력갱생의 경제강국건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사상강국건설의 토대위에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정책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은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정책으로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교육은 북한의 교육에서 이전부터 강조되어온 바이나, 현시점에서 과학기술중시노선에 따라 보다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

일체제의 지도이념과 권력체계: 붉은기사상과 당·정·군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9. 18, 5~11면.

98)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와 학교명칭을 혁명사적지 내지 혁명영웅의 이름으로 변경하여 혁명열사나 애국열사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로동신문』, 1995. 12. 25;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59면. 학교명칭의 변화에 관해서는 같은 논문, 66면.

99) 이는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 ‘강성대국’을 통하여 공식화하였으며, 이후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정우곤, “주체사상의 변용담론과 그 원인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철학’,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7. 7, 16~19면.

100) 현재의 김정일체제는 제2기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체제의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 새로이 선출된 내각 총리 박봉주는 선서에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노선은 제국주의가 있고 혁명과 건설이 계속되는 한 우리 공화국이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노선이며 우리의 인민정권은 당의 선군정치를 구현해 나가는 불패의 혁명정권”이라고 하였다. 『로동신문』, 2003년 9월 4일.

는 북한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거듭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체제에서 과학기술중시정책에 의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컴퓨터교육, 수재교육등이 중요과제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교육의 변화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2. 북한 교육의 변화동향

북한의 교육제도의 변화동향을 다음의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앞서의 분석이 교육정책의 전개양상을 통치이념의 변화과정에 비추어 살펴본 것이라면, 여기서의 논의는 현시점의 북한의 상황에 비추어 본 교육제도와 구체적 양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본 것이다.

(1) 교육제도의 법제화

김정일은 교육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1996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50돌을 기념하여 보낸 서한에서 몇가지 중점사항을 제시하였다.¹⁰¹⁾ 여기에서 김정일은 정치사상성교육,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교육내용과 방법의 개선, 교육행정사업의 강화, 교원재교육 사업의 추진, 교육조건과 교육시설의 현대화 등에 관한 조치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모든 대학생들을 과학자·전문가·유능한 기술자로 양성, 대학생의 선발과 배치에 대한 실력본위의 원칙준수, 대학에서의 수재교육발전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실력에 따른 효율성의 제고,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통한 경제개방에 대비 등의 현실적 필요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¹⁰²⁾

이 같은 교육정책의 목표와 방향의 제시는 1999년의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법제화되었다. 전술하였듯이 교육법은 기본적으로 교육체제의 기본내용과 유사하지만, 주체교육의 강화, 수재교육체제의 발전과 해외교육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강화, 실력에 기초한 전문과학기술인력의 확

101) 김정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중앙방송』, 1996. 11. 28.

102) 신효숙, “최근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64~65면.

보를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은 교육법상 주목되는 부분이다. 결국 북한의 교육법은 현실의 북한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한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수재교육체제의 강화

북한의 수재교육은 남한의 영재교육에 해당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영재교육은 과거 사회주의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형태로 운영되어왔다.¹⁰³⁾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서 수재학교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은 영재의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실천을 지시하였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수재학교가 학교교육체계 함께 주재교육체제로 분류되었다.

현재 북한에서 수재교육은 주재교육의 본보기 교육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최고의 교육조건과 시설, 교육내용을 갖춘 수재학교를 신설 확대하고 있다. 수재학교는 예·체능분야뿐만 아니라 외국어, 과학기술, 군사분야로 특성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등교육으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수재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각급학교에 수재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¹⁰⁴⁾

(3) 교육의 현대화 및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의 변화

현시점에서 북한이 추진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것은 북한이 처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입장을 반영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에서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함께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컴퓨터교육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의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컴퓨터과학인재의 양

103) 사회주의교육원리에서 개인의 능력과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교육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강조되었다. 그래서 개인차를 인정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영재교육은 반동적 교육이론에 입각한 것이라 하여 비판되어왔다.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문맥사, 1990), 455~458면.

104) 북한의 수재교육체제의 현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65~68면.

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컴퓨터교육은 의무화 되고 있으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⁵⁾

둘째, 북한이 택한 경제개방정책의 성공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먼저 북한에서도 시장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는 북한내에 자본주의 경제강좌를 개설하고, 무역성 삼하에 자본주의제도연구원을 설치하여 경제부문의 새로운 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으로 해외에 북한의 경제관리를 파견하여 시장경제를 교육하고, 다른 한편으로 외국의 학자를 북한에 초빙하여 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외국인과의 접촉기회가 많아지는 동시에 외국제도의 도입 내지 수용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 외국어교육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영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북한이 대외경제개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부문에서의 두드러진 변화내용이라 할 수 있다.¹⁰⁶⁾

셋째, 북한의 보통교육분야에서 주목되는 변화로는 교육과정에 선택과목교육을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선택과목교육을 준비하였다고 하고, “지역별, 지대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택과목교과서 12종에 대한 집필요목을 완성”하였다고 한다.¹⁰⁷⁾ 이는 북한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생활환경과 직업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이고 다양한 교과목의 신설이라는 점에서 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¹⁰⁸⁾

(4) 학교명칭의 변화

최근 북한의 교육과 관련하여 변화의 내용중 학교명칭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크게 두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05) 북한에서 컴퓨터교육은 정보기술보급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0. 12. 29.

106) 이에 관해서는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70~71면.

107) 『조선중앙년감』(평양: 중앙조선통신사, 1999), 198~199면.

108)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71~72면.

첫째,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60여개의 대학 및 학교의 명칭을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역사와 업적과 관련한 전적지와 사적지, 지면, 항일투사와 애국열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이는 북한의 청소년들에 대한 혁명세대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성,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게 하기 위한 것으로 혁명전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⁹⁾

둘째,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신학기부터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변경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금번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의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북한의 취하고 있는 경제개혁조치와 더불어 교육부문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및 전문성 중시 교육정책에 따른 학제변경 가능성과 함께 기존의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부분적으로 유상화 하려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¹¹⁰⁾

제 2 절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I. 남북한의 교육이념

1. 북 한

북한의 교육이념은 인민정권수립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를 두다가 1970년대부터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으로 정착되면서 주체사상에 근거하게 되었다. 북한은 ‘교육테제’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교육사업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다. 사회주의 교육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고 하여 교육의 목적이 곧바로 주체사상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109)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65~66면.

110) 통일부에 의하면, 북한은 2002년 9월부터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행사와 관련한 명칭의 변경을 북한보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통일부 북한관련분석자료 참조(<http://www.unikorea.go.kr>), 2002. 9. 15.

또한 “정치사상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정치사상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고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교육이념이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다.¹¹¹⁾

1980년대에서는 북한교육의 최고 목적은 주체교육으로 집결되었다. 북한의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주체사상 교육이념에 따른 내용이 위주가 되어 일반기초과목으로서 김일성 노작, 김일성혁명역사, 주체철학, 주체의 정치경제학, 사회주의헌법 등을 전 학년 교과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배정하여 주체사상 교육이념이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김일성주석의 사망에 대한 체제수호의 일환으로 ‘사상대국’건설을 강조하면서 김정일어로의 권력승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1990년대의 북한이 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은 체제수호라는 당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체사상에 따른 교육이념을 더욱 심화시켰다.

북한의 교육이념은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의 육성’에 두고 있다.¹¹²⁾ 이는 ‘사회주의 헌법’이나 ‘어린이 보육교양법’, 교육테제 등에 명시되고 있으며, 1992년 및 1998년 개정된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다. 이에 관해서는 전술한 바가 있다.

2. 남 한

남한의 교육이념은 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은 제2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홍익인간은 개인적 수준의 인간(인격인), 사회적 수준의 인간(공민), 세계적 수준의 인간(세계인)을 의미하고 있으며, 교육법

111)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을유문화사, 1990), 484면.

112) 한만길, 『통일시대북한교육론』(교육과학사, 1997), 29~31면.

에 규정함으로써 ‘홍익인간’을 법적으로 성문화하고 교육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교육이념은 민주주의 교육이념이며, 이것은 민족주의 교육이념과 함께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명문화되어 남한 사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¹¹³⁾ 이와 같은 교육이념 하에 각급학교의 목표를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¹¹⁴⁾

1992년부터 남한정부는 기존의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특히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변화가 20세기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 특히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변화가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단순한 세기적 변화가 아닌 이른바 ‘문명사적 대변화’라고 하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한 ‘열린 인간’이란 삶의 공간이 자기 고장과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진취적이고 당당한 한국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열린교육이념은 교육체제의 변화를 피하면서 교육의 시기(평생을 통하여 원할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의미), 교육의 장소(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적 활용의 극대화), 교육기관간의 통로(학점은행제 등의 활용), 대학교육, 중등교육, 교육대상의 개방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어가고 있다.¹¹⁵⁾

113) 『교육 50년사』(교육부, 1998), 55면.

114)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http://www.moe.go.kr>.

115) 『교육 50년사』, 앞의 책, 92~95면.

3. 남북한 비교

먼저 남북한의 교육이념은 명목적으로 지향하는 이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모두 교육에서 문면에 있어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남북한이 지향하는 점이다. 남한에서는 민주주의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고,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은 교육에서 민족주의를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한 민족의 전통을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주체성과 전통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전인적 인간교육 이념을 추구하고 있다. 지·덕·체로 표현되는 전인교육 또는 인간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다음 남북한은 교육이념상 다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의 교육이념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지향하며 ‘공산주의적 인간’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산주의적 인간’이라는 목적은 주체사상이 국가의 지도적 이념으로 명문화되면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양성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주체형 인간’이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하여 수령과 집단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인간이다.¹¹⁶⁾

이에 비해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남한은 교육법에서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완성, 공민으로서의 자질,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할 것을 교육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¹¹⁷⁾

116)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교육이념은, ‘김정일의 효자동이·충성동이’를 양성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한 주체형 인간이 양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공산주의 건설자’라는 보편적 의미보다는 ‘김정일 체제의 수호자’라는 체제유지적 측면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

117) 구체적으로는 학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습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의 습득을 통한 개인의 발달을 중시하다. 최근에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게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교육이념이나 원리는 철저히 ‘운명공동체적 집단주의’에 기초해 있다. 학생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교육의 목적에 따라 배우고 일하고 생활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주의 교육은 주체사상의 한 원리인 ‘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초해 개인은 전체를 위해, 나아가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혈연공동체적 집단주의로 의미의 변화를 맞고 있다. 개인이 속한 조직과 집단, 더 나아가 ‘수령-당-대중’의 위계적 통일체인 ‘사회주의 대가정’의 틀 속에서 즐거움과 고난 및 생사의 운명을 같이하는 운명공동체적인 집단주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개성의 존중, 개인의 자율과 책임,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남한의 개인주의에 기초한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습과정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하며, 개인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해 나간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도 중요하지만 개체로서의 개인을 존중하고 이에 기초해 교육을 전개해 나간다.¹¹⁸⁾

II. 남북한의 학교교육

1. 교육제도

(1) 북 한

북한의 학제는 유치원 2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이 기간학제로 되어 있다. 초·중등학교가 포함되는 학교교육체제와 별도로 특별학제의 범주에서 논의되던 ‘수재학교’와 특수층자녀 학교가 1980년대에 들어 특수목적교육체제로 정착되고 있다.¹¹⁹⁾ 이와 같이 북한의 학교제도는 기간학제가 중심이 되고 별도의 특수목적교육체제가 병행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118) 한만길, 『남북한교육체제 비교연구』, 앞의 책, 17~18면.

119) ‘특수목적교육체제’는 남한의 교육용어이고, 북한에서는 별도의 교육체제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북한교육법상 ‘수재교육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2) 남 한

남한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 기간학제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제가 분화되어 있다. 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로 구분된다. 일반계고등학교는 다시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일반계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되고, 실업계고등학교는 공업고, 상업고 등 실업계고등학교와 실업계 특성화고등학교로 구분된다. 1980년대초에 설치된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고 등을 들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로는 특성화 직업학교 및 대안학교가 포함된다.

(3) 남북한 비교

남북한의 교육제도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국가관리의 교육제도이다. 북한은 학교를 비롯한 전 교육·문화기관이 국가기구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남한의 학교제도도 철저한 국가관리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북한과 동일하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자격부여와 임용과정, 학생선발 등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공교육체제를 취하고 있다.

둘째, 국민 보통교육의 실시이다. 남북한 모두 초·중등교육을 국민 보통교육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국민들은 누구나 학교에서 동일한 중등의무교육을 마쳐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교의 계열이나 서열의 구분을 없앴다. 남한의 학교교육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초적 일반교육을 목표로 중등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초·중등교육기관을 모두 평준화하였다. 북한은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이고, 남한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취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 보통교육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특수목적학교를 확대하고 있다. 보통교육 부문에 있어 학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수재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남한은 특수목적학교의 확대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남북한 교육은 80년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의 필요성에서 특수학교를 설치·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학교의 출현은 국가의 요구와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학교 선택권을 반영하여 신설된 새로운 방식의 학교라는 점에서 학교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은 다음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기간학제에서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까지가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법적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포함하여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2. 교육목표

남북한의 교육목표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 인민학교 교육의 목적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일성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교육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 나올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각급 정권기관 일군들과 당 일군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학교교육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¹²⁰⁾ 또한 김정일은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라는 1984년 전국 교사들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서한은 북한 교육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는 역할과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등일반 교육이 중요하다고 서술하며, 중등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울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교육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

120) 김일성, 『보통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78, 4).

위주는 사업인 것만큼 중등일반교육의 내용은 반드시 청소년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어 그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²¹⁾ 그러나 새로운 교육법에서는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없앴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비해 남한 학교교육의 목표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제38조에서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 보통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초등교육은 기초 생활 교육과 공민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학교는 초등기초교육에 이어 중등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다. 초·중등교육법은 제41조에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은 제45조에서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남한의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은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고, 건전한 정신과 비판력을 함양하며, 동시에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자질을 매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남북한의 교육목표를 비교하면, 먼저 공통점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지·덕·체의 전인적 인간형성을 중시하고 있다. 비록 그것이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지향하는 이념의 동일한 방향성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보통교육은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의 기초 능력을 익히고, 기본 생활습관 및 도덕적 품성을 도야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공통점은 ①몸과 마음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개인의 성장, ②기초 학습 능력의 도야,

121)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1984.7.22).

③기본 생활습관 및 도덕적 품성 함양, ④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 ⑤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남북한의 교육목표상의 차이점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정치사상교양’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정치사상교양의 핵심은 주체사상으로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²²⁾ 반면,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학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습득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기능의 습득을 통한 개인의 발달을 중시한다.

둘째, 북한이 학교교육은 의무교육 기간에 ‘중등 일반지식교육’을 완성함을 목표로 한다. 일반지식이란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입각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이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서 이른바 실천, 교육과 노동이 결합된 형식으로 실습, 노동, 조직활동 등이 강조된다. 이에 비해 남한의 학교교육은 학습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사회나 노동과 분리된 지식교육, 이론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교육과정

(1) 남북한 교육과정의 특징

북한의 모든 교과에서는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정치사상성’이 중시된다. 김일성 관련 교과와 공산주의 도덕은 말할 것도 없고 국어, 역사, 지리, 심지어는 수학과 과학에서조차 정치 사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정치사상 교육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모든 교과의 교육내용에는 “혁명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 정신, 로동을 사랑하는 것,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프롤레타리아 정신, 사회주의 준법사상, 공산주의 도덕과 사회주의 생활양식”¹²³⁾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의 함

122) 북한의 교육법은 주체교육의 강화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123) 김형찬 외, 『북한의 교육』(을유문화사, 1990), 400~402면.

양을 목표로 충성, 질서, 청결, 노동애호, 근검절약, 협동 등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한다.

이에 비하여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에 기초하여 다원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남한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자유, 평등, 창조성, 다양성, 개성존중, 인권, 책임감 등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 획일적인 가치를 지향하기보다는 다양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가치선택과 가치판단의 개방성을 허용하고 있다.¹²⁴⁾

(2) 남북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방식

북한에서 교육과정은 철저히 중앙(내각 산하 교육성)에서 개발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지방이나 해당 학교, 그리고 교사에게 재량권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과정안과 교수요강은 당과 김일성의 교시에 기초하여 작성되며, 제시된 교육지침은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고 있다.

남한의 교육과정은 중앙집권적 방식에서 시대적, 교육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율성을 늘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거듭해 왔다. 현대 교육과정의 특징을 개별화·종합화·지역화로 특징짓는다면, 남한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특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남한의 교육과정은 1997년에 제7차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었다.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되었다. 과거 중앙통제적인 교육과정으로부터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여 고등학교에 선택중심 교육과정 및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학교 재량활동을 신설·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를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¹²⁵⁾

이에 비하여 북한은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안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간배당 기준 제시에 있어 북한은 주당 수업시간수로 제시한다. 반면, 남한 교육과정은 운영과 편성의 자율성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연간 최소 시간 수를 제시하고 있

124)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앞의 책, 365면.

125) 위의 책, 같은 면.

어 북한보다 탄력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하다.¹²⁶⁾

(3) 남북한 교과목의 편제 및 비중

교과목에 대하여 남북한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¹²⁷⁾

첫째, 정치사상관련 교과목의 편중현상이다. 북한은 정치사상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상당히 비중있게 편제해 놓았다. 사상교육은 전 교과를 통해 진행되지만 특히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과목, 공산주의 도덕, 현행 당 정책 과목을 통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남한의 교과로는 도덕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의 교과와 비교해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남북한 초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에 있어 가장 큰 차이는 남한의 사회, 영어 과목이 북한에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¹²⁸⁾ 또한 그동안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역사 과목을 인민학교 4학년에 매주 1시간씩 배당하였다. 남한은 국어와 수학에 33.6%를 할당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전체 시수의 54.8%라는 비중을 배당하고 있다. 국어와 수학은 향후 학습능력 형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과목으로 중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국어는 내용의 주제 분석에서 약 70% 가량이 정치사상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미루어, 단순히 언어 습득과 의사소통의 수단을 익히는 차원을 넘어서 김일성부자 우상화 교육과 공산주의 사상 교양을 위한 중요한 교과목임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교과목 편제에서 1, 2학년은 사회와 자연이 ‘슬기로운 생활’로, 체육·음악·미술이 ‘즐거운 생활’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남한의

126) 특히 1997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 2, 3학년의 과정은 선택중심,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급학교 교육과정안에 특별활동과 학교재량활동을 포함시키고 있어 각 지역별, 학교별로 운영과 편성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127) 구체적인 비교수치에 관한 연구는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계비교연구』, 앞의 책, 27~29면 참조.

128) 86년 과정안에는 4학년에 영어가 매주 1시간씩 개설되어 있었으나 96년 과정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교육과정안에는 편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인민학교에서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한다. 자체 영어 교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민학교와 연계된 고등중학교 영어교사가 와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천정순 특강(2001년 5월 7일). 위의 책, 27면 재인용.

통합형 교과가 본격적인 의미의 교과 통합은 아니지만 통합을 지향하고 있다. 중등학교의 통합 교과로는 사회과와 과학과를 들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1학년 단계부터 분과형 교과편제로 이루어져 있다. 예로 우리의 과학 과목을 북한에서는 물리, 화학, 생물로 각각 가르치고 있다.

셋째, 중등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비중을 보면, 개설 교과목의 첫 번째 차이점은 남한의 도덕에 해당하는 정치사상교과목이 북한에는 김일성 부자 관련 교과, 현행 당정책, 공산주의 도덕으로서 총 시수의 12.5%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사회(10.09%) 대신에 북한은 '역사와 지리'(9.7%)가 비슷한 비중으로 편제되어 있다. 교과별 비중에 있어서 남북한 차이는 몇 과목에서만 보이고 대부분의 교과는 별 차이가 없다. 남북한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교과는 수학과 과학이다. 남한이 수학과 과학에 각각 10.9%, 10.1%의 비중을 둔데 반해, 북한은 각각 18.6%, 18.3%포 거의 배 정도로 비중을 두고 있다. 남한이 국어와 외국어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민학교에 개설하지 않았던 외국어인 한문(4.1%)과 외국어(9.3%)를 새로 편제하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남한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실과와 특별활동이 북한에는 기본교과로 편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¹²⁹⁾

넷째,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의 특징은 무엇보다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남한의 교육내용 구성은 이론적인 지식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남한의 특별활동은 학교 밖 사회기관과의 연계 교육활동이 미비하고 학교 내 과외활동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남한은 대학입시 교육 위주의 학교환경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이론적 지식위주,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129) 북한은 방과후의 과외 활동이나 조직생활을 통해 유사한 학습활동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수업시간을 보면,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상당히 적다. 이것은 남한이 특별활동과 학교재량시간을 부여한데 비해서, 북한은 교육과정편제에 명시되지 않은 과외활동과 의무노동으로 별도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중하 외, 『남북한 교육과정·교과서 통합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4), 51~58면.

4. 교육방법

북한의 교수방법에서는 무엇보다 ‘깨우쳐 주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깨우쳐 주는 교육’이란 탐구학습과 유사한 것으로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창발성을 조장, 발전시키며 학생들의 사유 활동을 추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물현상의 본질을 스스로 쉽게 파악하고 체득하게 하는 교육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⁰⁾ 깨우쳐주는 교육방법에 따른 수업방법은 설명, 문답식 학습, 직관교육과 실물교육 등이다. 교수방법으로서 설명은 이야기와 담화의 형식으로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이다. 토론과 논쟁, 문답식 방법은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고를 계발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이다. 직관교육과 실물교육은 사실적 실물에 대한 묘사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다. 북한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원문통달식 수업방법’은 남한의 암기주입식 수업방법과 유사하다. 원문통달식은 당의 지침이나 김일성 부자의 교시를 원문 그대로 완전히 암기하는 정치사상교육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남한에서 시험에 대비하여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¹³¹⁾

이에 비하여 남한에서는 지식전달중심의 주입식 수업방법, 암기중심의 수업방법, 토론식 수업방법, 열린교육에서의 아동중심적 수업방법, 창의성 계발 수업방법 등 다양한 수업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교사중심의 수업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적극 수용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교육방법을 비교하면, 남북한의 교수학습 방법은 모두 이론과 실제 교육현실이 뚜렷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남한에서는 개인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북한에서는 개인의 주체적 사고활동에 따른 학습으로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북한 교육방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습자 중심의 학습보다 교사 중심의 교수방법, 그리고 지식전달

130)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계비교연구』, 앞의 책, 31면.

131) 한만길, 『통일시대 교육론』, 앞의 책, 365~366면.

중심 교수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고등교육

1. 북 한

북한은 북한 고유의 고등교육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는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고등교육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 고등교육체계이다.

(1) 일반 고등교육체계

2일반 고등교육체계는 종합대학, 중심대학, 단과대학, 고등전문학교가 포괄된다. 이를 좀 더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대학과 『중심대학』이다. 종합대학이거나 종합적인 대학을 북한에서는 『중심대학』이라 한다. 수업연한은 4년 6개월 내지 5년 6개월 이고 예비과와 박사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중점 『중심대학』으로서 각 학과의 전문가를 양성하며 졸업 후 각 분야에 인재를 배출한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대학, 평양의학대학, 사리원계응상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이과대학, 평양건축건축재대학, 평양기계대학, 청진금속대학, 평양미술대학, 나진해운대학 등이 각 분야의 중심 대학이다.

둘째, 단과대학이다. 북한의 대학은 대부분이 단과대학들이다. 단과대학은 각 분야의 기술자, 전문가급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수업연한은 4년이다. 단과대학은 중앙뿐만 아니라, 주로 각 지방에서 대학을 설치하여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어, 각 도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등이 단과대학에 해당한다.

셋째, 고등전문학교이다. 남한의 전문대학에 해당하는 고등전문학교의 전신은 고등기술전문학교이다. 1957년에 북한은 단시일 내로 중등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고등기술전문학교를 설립하고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모집하였다. 1972년에 고등전문학교로 이름을 고치고,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하였으며 고등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현장 기술자』를 양성하였다.

이 유형의 학교는 북한에서 신속히 발전하고 확대되었다. 학비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며 졸업생은 해당 지방에서 통일적으로 배분한다.

넷째, 연구원과 박사원이다. 연구원과 박사원은 학사(1996년부터 준박사를 학사로 개칭함)와 박사학위의 고급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종합대학과 『중심대학』 및 과학원 등 과학연구단위에 부설되어 있다. 연구원은 주로 학사학위 연구생의 양성을 책임지며, 수업연한은 3년이다. 박사원은 주로 박사학위 연구생의 양성을 책임지며, 수업연한은 2년이다. 최종적으로 국가시험과 논문심사에 통과되면 학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2) 성인고등교육체계

북한에는 일반대학과 더불어 직장을 다니면서 학업을 겸하는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라는 독특한 고등교육체계가 널리 퍼져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에는 공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 농장대학, 어장대학, 전일제대학의 통신 및 야간학부, 텔레비존방송대학, 간부재교육기관, 혁명가유자녀학원 등이 포괄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는 그 성격 상 평생교육 및 성인교육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2. 남 한

남한의 고등교육 학제는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립, 공립, 사립 등 3대 설립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고등교육 구조체제로 보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고등교육기관 유형으로 보면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산업대학, 통신대학, 특수대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³²⁾

132) 그 중 4년제 대학은 4-6년제의 일반제 대학으로서 현재 남한 고등교육기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01년 현재 남한에는 4년제 대학이 162개교가 있다. 그 중 국·공립대학이 26개교로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이 136개교로 84.0%를 차지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전체 학생 수는 1,729,638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국·공립 재학생이 381,793명으로 22.1%, 사립 재학생이 1,347,845명으로 77.9%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수는 43,309명인데, 그 중 국·공립 교원이 11,448명(26.4%), 사립 교원이 31,861명(73.6%)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교육통계편람』(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1), 184~190면.

전문대학은 1948년에 설립된 2년제 초급대학에서 시작하여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2-3년 과정으로 발전하였다.¹³³⁾ 남한의 대학원은 1949년 제정한 ‘교육법’ 속의 ‘대학원의 규정’을 통해 시작되었다. 현재 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특수·전문대학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¹³⁴⁾

그 외에도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고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 평생교육 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산업대학과 방송통신대학교, 기타 특수대학 성격을 지닌 과학기술대학,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등이 있다.¹³⁵⁾

3. 남북한 비교

(1) 고등교육의 형태와 규모

남한과 북한의 대학은 규모의 면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닌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고등교육기관이 해방 후 50여 년간 급속도로 팽창했다. 둘째, “중점대학” 혹은 “명문대학”으로 불리는 대학은 평양과 서울 등 수도에 집중되어 있다.

남북한 대학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33) 2001년 현재 남한의 전문대학은 158개교가 있으며, 그 중 국·공립 15개교, 사립 143개교로서 사립전문대학교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의 학생 수는 952,649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사립전문대학 재학생이 915,109명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위의 책, 172~178면.

134) 2001년 현재 일반대학원은 135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중 국·공립 27개, 사립 108개(80.0%)에 이르고 있다. 특수·전문대학원은 대학원대학까지 포함하여 770개가 있는데, 국·공립 대학원 124개(16.1%), 사립 대학원이 646개(83.9%)에 달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일반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석·박사과정을 포함) 112,954명, 특수·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130,316명에 이르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위의 책, 218~219면.

135) 2001년 현재 11개 교육대학의 재학생 수는 21,418명, 교원 수는 710명에 이르고 있다. 산업대학은 19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2001년 현재 재학생 수 180,608명, 교원수는 2,456명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19개 학과의 총 208,175명, 교원 수는 1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책, 196~208면.

첫째, 남한의 대학이 일반적으로 종합대학의 형태를 띠는다면, 북한의 대학은 특성화된 단과대학의 성격을 띤다.

둘째, 남한의 대학교와 전문대학은 북한의 대학과 전문학교보다 단일 학교 규모가 월등히 크다. 규모의 차이는 평균 10배 정도에 달한다.

셋째, 대학생수와 학교 수를 인구대비로 비교하였을 때, 대학생수는 남한이 더 많으며, 대학교수는 북한이 더 많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대학은 설립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남한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학교인 반면, 북한은 모든 대학이 국립대학이다.

다섯째, 북한의 대학은 공장대학 등 생산현장에 부속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존재한다. 이 학교들은 전일제 학생이 아닌, 관련 분야 직업을 가진 학생들의 기술 훈련 및 재교육 기능을 한다. 즉, 북한의 경우, 고등교육분야에서 생산현장과 교육현자의 연결이 보다 긴밀히 이루어진다.

(2) 선발제도

남한의 고등교육제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쟁점은 “선발제도”이다. 대학 입학제도의 변화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선발제도의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이 재편되고, 사교육시장은 변화한다. 남한에서 대학선발은 모든 학생들의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나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의 성적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대학입학은 고등학교성적, 국가표준고사인 수능시험, 대학별고사 성적에 달려있다. 최근 사회봉사활동 경험 등을 강조하지만, 대입을 좌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업성적으로 대표되는 지적 능력이다. 반면 북한의 대학입학제도는 남한과 비교하여 몇 가지 점에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인다. 북한 대학입학선발제도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은, 우선 “정무원시험”이라고 불리는 대학입학자격고시를 본다. 이 시험은 198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19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추천에 의해 대입응시생이 결정되었으나, 이때부터 학력을 측정하는 표준 국가고사가 도입된 것이다. 정무원 시험 결과는 학교장이 대입지원학생을 선

발하는 데 기초자료가 된다. 학교장은 정무시험 결과, 고등중학교성적, 그리고 정치조직활동에 대한 평가서를 기준으로 대학 입학 지원자들을 추천한다. 정치조직활동에 대한 평가에는 성분이 작용한다. 학교장은 학생들을 각 대학에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도, 시, 군·구역인민위원회 대학생모집과에 추천한다. 각 인민위원회는 그 해에 대학입학정원 계획을 수립하고, 추천은 모집인원의 약 2배 정도를 받게 된다. 학생은 진학 희망학교를 3개 내지 5개 적어 넣는다. 대학생모집과에서는 서류를 검토하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 지원서류를 보낸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희망학교에 지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의 희망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각 대학에서는 수험생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수험표를 지원자의 고등중학교로 보낸다. 지원자는 수험표를 받고 해당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치른다. 최종 합격 여부는 대학에서 판단한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진학하는 학생¹³⁶⁾은 과반수를 넘지 않고, 대부분은 직장으로 배치되거나, 남학생의 경우 군대에 입대한다. 그러므로 위의 절차를 밟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일부에 불과한 직통생들이고, 사회나 군대로 진출한 졸업생이 이후에 대학에 진학하는데, 그 입학하는 절차는 상이하다. 이들은 주로 군대나 직장 상급자, 당조직과 사회단체조직의 추천을 받아 대학에 지원한다. 즉, 성적보다는 정치사회적 충실성과 직분의 성실함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상과 같은 북한의 선발제도는 남한의 입시제도와 비교하면 다음 측면에서 상이하다.

첫째,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들이 미리 선발된다. 남한의 경우에 제도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생 혹은 고등학교 학력인정자는 누구나 대학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고등교육기회 접근에서 평등성을 구현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대학입학시험이 극도의 경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북한의 경우, 누구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응시자격을 얻은 학생들만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의 경우에 비견되는, 대학

136) 북한에서는 이들을 이른바 ‘직통생’이라고 부른다.

입학 단계의 치열한 경쟁은 발생하지 않지만, 교육받을 기회의 공정한 분배라는 면에서는 불평등의 요소는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에는 재수생이 없다. 대학입학지원자의 수가 사전에 조정되므로, 과열경쟁도 없다. 대학입학시험에서 실패한 경우, 직장에 배치되거나 입대한다. 대학입학의 기회는 그가 직장생활과 군대생활을 한 이후 별도의 추천을 받아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입학준비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재수생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사회(생산조직 및 군대 등)가 맺는 관계가 남한과 북한에서 상이하기 때문이다.¹³⁷⁾ 이와 같이 고등학생 대부분의 관심사는 대학진학과 연결되어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재수생 이외에 사회생활을 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능시험, 대학별고사 등 지적성취도를 주로 평가하는 대학입학제도는 사회인의 대학입학을 어렵게 한다. 북한의 경우, 직장인 혹은 군인의 대학입학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다. 직장인과 군인의 입학에는, “직통생”과 다르게, 추천의 비중이 높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공장대학 및 농장대학과 같이 산업체에 대학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의 고등교육기회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경우, 대학은 고등중학교와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체 등 사회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남한과 북한에서는 대학입학선발의 기준이 다르다. 이는 두 사회에서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를 보는 기준이 다름에서 기인한다. 남한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과성적, 즉 지적 능력을 본다. 최근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평가에 반영하고 특기자 선발을 별도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학업성적이다. 북한의 경우, 성적 뿐만 아니라 정치성을 본다. 정치성은 학생의 성분(부모의 사회계급)과 김일성주의청년동맹 활동 등 정치조직의 활동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137) 남한의 경우, 고등학교교육은 대학진학과 직결되어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94.5%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졸업생의 83.9%가 진학하며, 중등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에도 과반수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41.9%가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1 교육통계연보』, 2001. 4.

다. 북한사회의 엘리트는 지적으로 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견고해야 한다. 대학입학제도에서 성적 뿐만 아니라 성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간부는 기술혁명과 사상혁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대학입학제도를 관리하는 행정부처가 상이하다. 북한에서는 도인민위원회 조직이 대학입학과 관련한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도인민위원회의 대학생 모집과는 각 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수급을 조절하여 입학정원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각 도 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그 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대학생들의 선발은 국가경제계획에 따라 도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남한의 경우, 대학선발제도에서 지방행정조직의 역할은 거의 없거나 매우 약한 상황이다. 입시제도를 관장하는 행정부서는 중앙행정조직인 교육부이고, 학생들은 직접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한다. 지방정부의 조정작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의 입시제도의 차이는 대입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의 차이를 야기한다. 남한에서 대학입학지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주요 경쟁이 최종 시험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입제도와 대학입학시험의 향방은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다. 입학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종종 시비에 오르기도 한다. 입시제도에 맞게 초·중등학교의 교육이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경우, 대학선발제도가 남한의 경우처럼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3) 대학생생활

북한의 인테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사회주의적 정치의식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도 전문적 지식교육과 함께 정치사상교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교육, 실험실습, 사회정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교과교육은 정치사상교양과 전공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 교육에 대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사회활동으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과 교도대를 들 수 있다. 청년동맹은 “혁명과업을 직접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노동당의 전투적 후비대”¹³⁸⁾라고 일컬어지는 당의 외곽조직이다.¹³⁹⁾ 교도대는 민간 군사조직이다.¹⁴⁰⁾ 이상과 같이 북한의 대학생들은 교과목을 통해 전공지식 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의 ‘로작’과 ‘혁명력사’를 학습한다. 또한 청년동맹, 교도대 등의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사상학습 및 군사훈련을 일상적으로 받는다. 남한의 경우, 학과목 학점 이수 이외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은 없다. 과거 학도호국단이나 문무대, 전방입소와 같은 군사훈련이 의무적으로 부과된 적이 있었지만, 현재 모두 폐지된 상태이다. 학점은 최소한의 필수 과목 이외에는 대부분 선택 과목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교과와 관련하여 북한의 대학생들은 계획에 따라 주어진 과목을 이수하고, 남한의 학생들은 자율적인 판단하에 관련 과목들을 선택한다.

(4) 사회진출

북한의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은 ‘기사’자격증을,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전문가”자격증을 획득한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기사’나 ‘전문가’로서 직장에 배치된다. 대학생들의 졸업 후 배치는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 학생들은 졸업 6개월 전에 직장배치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다. 서류는 이력서, 위직희망서, 신원진술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학장의 평정서, 청년동맹위원장의 평정서 등으로 구성된다. 서류의 제출처는 대학에 따라 상이하다. 전술한 “중점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은 중앙당에 제출하고, 자연과학계열은 내각에 제출한다. 그

138) 노동당규약 제9장 56항.

139) 1946년 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으로 출범하여, 1964년에 사회주의청년동맹(사로청)으로 개칭되었고, 1996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재편되었다. 청년동맹에는 만 14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가입한다. 이 연령에 속한 대학생은 청년동맹활동을 하게 된다. 청년동맹에서 사상학습, 생활총화를 일상적으로 진행하여 집단주의적 생활태도를 내면화한다. 또한 당의 후비대로서 농장, 공장, 기업소 등에서 경제계획을 완수하도록 노력지원을 하기도 한다.

140) 남자의 경우 만 17세부터 45세까지, 여자의 경우 만 17세부터 30세까지 교도대에 속하게 된다. 대학생은 정규군의 초급장교 임무를 수행하도록 전공별로 배치된다. 군사훈련은 동원훈련 30일, 자위훈련 10일, 연간 320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전시에 는 당의 통제하에 인민무력성의 직접 지휘를 받으며 후방 방어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북한대사전』(북한연구소, 1999), 155면.

외의 대학들은 대학 소재지 시, 군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다. 이는 처음부터 중점대학은 전 국가적인 인력 양성을, 가 외 대학들은 각 도, 시·군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당과 내각, 그리고 지방인민위원회는 서류를 심사하고, 해당지역의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졸업생 직장배치를 결정한다. 서류심사는 대학 성적, 학장과 청년동맹 위원장의 평정서, 출신성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졸업생의 직장배치가 결정되면, 학생들은 졸업식이 끝난 후 직장 배치증을 교부 받는다.¹⁴¹⁾

이러한 북한의 직장배치 방법은 남한의 대학졸업생 취업방식과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남한 대학생의 경우, 구직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다. 기업은 자체적인 신입사원 모집요강에 따라 대학졸업생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학 성적과 외국어 능력인정서, 자기소개서 등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대졸자의 취업은 주로 경제상황에 따른 기업의 인사계획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 대졸자 실업상태가 야기되기도 한다. 대학 졸업 후 배치의 경우에도, 북한은 국가계획과 관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남한은 시장경제, 개인의 능력과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북한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약받지만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이고, 남한의 실업의 위험이 상존하지만,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체제라고 정리할 수 있다.

IV. 성인교육

1. 북 한

(1) 개 요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을 키우는 의미에서 성인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즉,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자기 초소를 떠나지

141) 최영표 외,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88), 95~98면.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全民교육의 성과를 보장한다.”¹⁴²⁾고 하여, 산업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보다 빨리 양성하고, 주민들의 정치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성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전 인민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 것이 북한 성인교육의 목적이다. 북한에서는 초·중등 단계의 성인교육 기관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오다가 1975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부터 중등교육 단계의 교육이 보편화되어 1980년대 이후에는 고등교육 단계를 중심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¹⁴³⁾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제 1단계는 문맹퇴치교육 시기로서 해방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성인교육의 중심을 한글보급과 문맹퇴치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제 2단계에서는 중등기술교육 시기로서 문맹퇴치사업과 함께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동시에 전개되었던 한국전쟁이후부터 1960년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제 3단계는 1970년 이후의 고등교육 단계의 성인교육시기로서 학교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수요에 따라 성인고등교육도 적극적으로 발전되었던 시기이다. 특히 1980년대부터 북한에서는 농장대학, 어장대학, 텔레비전방송대학 등이 신설되어 국정에 부합된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배우는’ 성인교육체계를 형성하였다.

(2) 특 징

북한 성인교육의 특징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 성인교육은 농민, 어민, 공장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노동에 참여하면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이나 주거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점은 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둘째, 북한의 성인교육은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서 필요한 생산인력은 그 지역에

142) 『김일성저작집』, 제32권, 405면.

143)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7, 85면.

서 충당하고 있다. 이는 학업과 직업을 위한 주민의 이동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노동인력의 수급을 꺾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해당지역 생산인력의 수요를 파악하여 훈련·교육시킨 후 배치하는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셋째, 각 지역의 생산현장 단위를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하거나 교육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산업생산과 관련된 대학, 예를 들어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에게 재교육기회 뿐만 아니라 해당산업에 유입되는 새로운 인력을 해당 지역에서 수급하는 효과도 추구하고 있다.

(3) 현 황

북한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인대상 사회교육기관은 남한에 비해 다양한 편은 아니다. 북한의 성인교육은 크게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산업체부설형과 통신수단을 이용해 진행되는 통신교육으로 양분할 수 있다. 산업체부설형 성인교육기관에는 공장대학 및 공장고등전문학교, 어장대학, 농장대학 등이 있고, 통신교육형은 각 대학,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의 통신학부와 텔레비전대학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1) 산업체 부설학교 형태

산업체 부설학교는 노동현장에 인접해서 관련분야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대학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교육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중등교육의 수혜자의 확대와 근로자들의 학력수준 상승으로 인해 종전의 중등교육수준의 성인교육기관이었던 ‘노동자 고등학교’가 폐지되었다. 고등교육수준의 성인교육기관으로는 ‘공장대학’과 ‘공장고등전문학교’,¹⁴⁴⁾ ‘농장대학’,¹⁴⁵⁾ ‘어장대학’¹⁴⁶⁾이 있다.

144) ‘공장대학’은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공장대학’은 공장과 각종 기업소 등에 병설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장 자체가 이론적 학습과 실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공장대학’의 수업기간은 5~6년이고 졸업 후에는 정규대학 졸업과 동일한 자격이 부여되어 기사자격증을 받는다.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공장대학’안에 1년제 예비과를 설치하여 이 과정을 거쳐 ‘공장대학’에 진학할 수

한편 현지학습반은 1983년 “룡양공업대학의 경험을 일반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시작되었다. 현지학습반은 대학이나 고등전문학교에서 각 지역 생산현장에 교수진을 파견하여 대학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지학습반의 운영책임은 각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의 당 책임자와 행정가들이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기능공학교는 전일제의 단기간 기술교육기관이다. 교육연한은 1년이고 학과에 따라 6개월 혹은 2년인 경우도 있다. 기능공학교에서는 기술기능수준이 높은 굴진공, 채탄공, 용해공, 용접공, 선반공, 트럭운전수 등을 주로 양성한다.

2) 통신 및 야간대학

통신수단을 이용한 교육으로 각 대학의 부설 통신교육,¹⁴⁷⁾ ‘김일성방송

인도록 하고 있다. ‘공장대학’은 또한 노동자들이 강의를 받기에 편한 시간대에 맞추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보통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오후 4시경부터 시작하고 야간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공장대학’에 입학하려면 ‘공장고등전문학교’나 정규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장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범적인 노동자만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런 추천과 선발과정은 근무태도를 통제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145) ‘농장대학’은 1981년 12월 1일에 ‘청산농업대학’을 개교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농장대학’은 11년 의무교육제 실시 후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증가하자 중등교육을 마친 농민들에게 관련 영농기술을 재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농장대학’은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1년 기간의 예비과, 4년 6개월에서 5년의 본과로 구분되어 있다. 전공학과는 농산학, 축산학, 농기계학, 과수학, 채소학 등이 있다. 강좌운영기간은 영농주기를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주간대학처럼 강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농번기인 3월~6월과 10월~11월 동안에는 학습과제를 학생들에게 주어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그리고 7월~9월은 야간을 이용해 1~2과목 정도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146) 어장대학은 수산업분야에 관한 대학이다. 어장대학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79년에 함경남도 신포에 설립된 ‘신포수산대학’이 있다. 어장대학은 어로활동과 관련된 것 이외에 선박설계, 제조, 항해 등과 관련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어로학파에 소속된 학생들은 원해로 어로작업을 나가는 기간은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귀향한 이후 7~15일 범위 내에서 휴식하면서 수산사업소 내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야간부 학생들은 오전부터 집중적으로 학과공부를 한다. 이에 비해 선박 및 수산물가공 관련학과 학생들은 야간에 정상적으로 공부한다.

147) 통신대학은 1948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야간대학’ 및 ‘통신사범대학’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고 그후에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 ‘야간학부’ 및 ‘통신학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신학부’는 주로 라디오강의를 통해 운영된다. 통신교육과정은 교육기간이 5년이고 1년중에 10개월은 라디오를 통해 진행하고 한 차례에 1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출석수업을 실시한다. 학생이 농민인 경우의 출석수업은 농한기에

통신대학',¹⁴⁸⁾ '텔레비전방송대학',¹⁴⁹⁾ '인민대학습당'¹⁵⁰⁾ 등이 포함된다.

3) 기타 사회교육시설

이 밖에도 북한은 기념관시설을 학교 학생과 일반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북한 사회주의 혁명의 기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장으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과 함께 정치사상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의 지방행정단위까지 영화보급관련 시설과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문화예술이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남 한

(1) 특 성

남한의 성인교육은 국민의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교육적 수요의 증가와 국가차원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이념, 즉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시하고 직장인은 출석수업기간 동안 휴가를 받게 된다. 이 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교통비와 교육비 등 관련비용은 직장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교육평가는 일정과정을 마치면 실시하고 문제를 내고 답을 작성해서 송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선중앙년감, 1986, 221면.

148) 1973년 김일성의 61회 생일을 기념하여 설립되었다. 정치사상교양강좌를 주로 강의하며 방송시간은 **오전** 5시에서 6시 30분 등 두 차례이다. 1980년대 강의내용 및 횟수를 보면 '김일성혁명력사' 300회, '김일성로작연구' 300회, '김일성혁면전통' 150회, 『로동당』정책사' 170회, '정치경제학' 170회, 철학 170회 등이다.

149) 텔레비전방송대학은 1981년 9월에 설치되었다.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90분동안 주 3회 방송한다. 텔레비전방송대학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별로 5~20명씩 학습반을 구성하여 수상기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 1984년에는 37개 대학에 700여 개의 강의시청장을 설치하여 5,200명의 통신생들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과목은 수학, 물리학, 외국어 등이다. 한만길 외, 『북한 교육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한국교육개발원, 1998), 227~228면.

150) 1982년 4월에 개관한 인민대학습당은 일반 주민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강연, 도서대출, 직장현지교육 등을 실시한다. 김정일은 1984년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에서 인민대학습당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중요한 기지의 하나이며 통신종합대학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1982년 현재 총 1,200여 회의 강의와 강습을 진행하고 5만 2천명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청년학생,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선진과학기술을 배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연은 직접 강의뿐만 아니라 녹화강의, 녹음강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념이자 전략¹⁵¹⁾이 결합한 형태로 전개되어오고 있다. 평생교육이념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이라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기본적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모든 개인에게 있고, 개인의 능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고양시킬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시대와 지식기반사회라는 세계적 물결은 국가에 의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다. OECD 가입국가들은 성인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교육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성인교육은 교육제도의 개방성과 유연성에 기초하고 있다.¹⁵²⁾ 이를 위해 남한은 1999년에 기존의 사회교육법과 그 관련법안을 대체하여 평생교육법을 입법하였다. 새로 제정한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체계에서 새롭게 구조화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새로 제정된 교육기본법 안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이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이 학교교육과 함께 국가의 중요한 교육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성인교육은 국민 일반의 교육적 욕구의 상승 및 다양화와 국가경제발전의 근본이 되는 인력양성이라는 국가적 필요가 결합되어 성립 및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 황

남한의 성인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성인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은 간단

151) 『평생교육백서』(교육부, 2000), 12면.

152) 이는 첫째, 교육시기를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한정하지 않고 교육이 평생동안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의 장을 학교에 제한하지 않고 교육과 학습이 이뤄지는 모든 곳을 교육 및 학습의 장으로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내용을 전통적 지식과 경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고 관심이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계비교연구』, 앞의 책, 55~56면.

한 작업이 아니다. 여기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백서에 근거해서 성인교육형태별 교육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것으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둘째,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은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학교법인 설립이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하여 노동자들의 면학욕구를 수용하고 기업 입장에서 전문 직무교육과 특화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제도이다.

셋째, 원격형태 평생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은 정보통신기술, 멀티미디어기술 및 관련 소프트웨어기술을 이용하여 형성된 상호참여공간을 주된 학습장으로 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주로 비 대면교육을 통하여 전문대학과정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위를 주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을 말한다.

넷째,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다섯째, 시민사회부설 평생교육원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섯째, 학교부설 평생교육은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평생학습장화를 촉진하고 열린 교육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양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일곱째,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여덟째,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의 평생교육사업을 말한다.

(3) 형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외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하는 교육기관 내지 시설로서 학교교육의 보완기능과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로는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산업대학, 특수학교, 재외국민교육기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년원학교, 전수학교, 실업학교, 국악학교, 예술학교, 도예(공예)학교 등이 있다. 고등교육수준에는 신학교와 예술학교가 있다.

또한 학력인정 사회교육형태는 방계학제교육기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도 교육이수 결과를 인정받지 못했던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¹⁵³⁾

그리고 원격교육형태로서 방송통신교육제도에는 크게 고등학교과정과 대학교과정이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법 및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경제적 여건 및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들에게 방송강의, 컴퓨터통신 학습, 출석수업, 자습 당의 교육방법에 의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153) 이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은 1986년 실행 당시 18개교 4,600명 정도였던 것이 1990년 66개교 35,524명, 2000년 현재 중학교과정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13개교 2,693명, 고등학교 과정에는 38개교 18,722명이 재학중이었다.

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이념에 기초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국민교육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⁵⁴⁾

한편 방송통신대학은 배우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국민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학수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원격교육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원격평생교육시설이다. 1968년에 교육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교에 방송통신대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72년에 방송통신대학교를 설립했다. 개교 당시 방송통신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에 부설된 기관으로 전문대학과정으로 출범해서 1982년에는 독자적인 대학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사내대학형태로서 기업의 대내·외 환경변화와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인식은 현장 노동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 교육형태에는 크게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술대학, 사내기술대학 등이 있다.

3. 남북한 비교

(1) 목적 비교

먼저 공통점을 들 수 있다. 남북한 모두 신분제도의 탈피를 전제로 한 대중교육의 확산, 국가의 정치체도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국민교육, 전 생애를 걸친 교육을 통한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평생교육이념 등을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에서 발간되는 각종 자료에 의하면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인교육은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성인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체제가 지향하는 교육적 결과 혹은 교육적 혜택이 상업적으로 오용 혹은 남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 수요의 확대 및 정보사회로의 발전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한다는

154) 시행 첫해인 1974년에는 11개 학교 5,794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1987년에는 50개교 48,067명까지 증가했으나 2000년 현재는 전체 40개 학교와 2개 교도소학급에 14,282명으로 감소되었다.

의미에서 남북한은 UN이 결의한 평생교육이념의 하나인 교육의 민주화 혹은 평등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차이점으로는 북한의 성인교육은 국가주도적이고, 교육내용에서 정치사상교양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교육대상과 교육장소를 전 사회구성원, 모든 장소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의 주된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 혹은 김일성주의의 확산 및 공고화에 있다. 반면, 남한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일부 성인교육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인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은 개인의 교육적 욕구와 자율적 선택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선택의 자유,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욕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측면에서 보면 남한의 성인교육이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북한의 그것은 집단적으로 획일적으로 진해오디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한의 성인교육은 개인의 자율성과 교육욕구에 근거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사회의 필요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2) 제도 비교

먼저 공통점을 살펴본다. 남북한 성인교육은 넓게 보면, 국가의 법적·제도적 지원 및 관리체제 안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성인교육 모두 국가의 정책에 의해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이 결정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관계법령과 제도를 제정하고 정비해오고 있다. 또한 남북한은 성인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의 각종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성인교육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성인교육의 장점 중의 하나이다. 학교교육을 관장하는 국가가 학령기 혹은 재학생 이외의 사회구성원을 위해 학교가 갖고 있는 각종 자료, 정보, 경험 등을 사회일반에게 환원하거나 공유하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학습기회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남북한 성인교육은 지역적 특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전국적으로 교육과정이 획일적이지는 않아서 지역의 특성 혹은 사회적 환경을 교육과정에 반영하

거나 활용하고 있다.

다음 차이점으로 남북한의 성인교육제도는 학교교육제도의 차이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북한의 성인교육은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남한의 경우에는 법제화를 통한 성인교육의 역할 규정과 범위지정 등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지만, 교육기관의 일반적인 운영과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대상의 모집과 결과의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인교육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남한 성인교육기관의 이런 자율성은 직업기술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의 교육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대상 비교

먼저 공통점으로는 전술한 교육목적 및 이념에서 보았듯이 남북한의 성인교육은 전 사회구성원을 교육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 차이점으로는 비록 남북한 성인교육의 대상에는 차이가 없지만 교육대상이 모집되는 과정을 보면 차이가 발견된다. 남한의 경우 일부 교육당사자의 동의나 자발적 참여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공공분야의 공무원에 국한된다. 대부분의 성인교육 기관은 교육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사회구성원이 성인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자발성의 원리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의 성인교육에서 정치사상교양이 중요하고, 대부분의 교육제도를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대상자의 필요보다는 국가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 교육대상이 선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4) 내용 및 운영 비교

공통점으로는 북한의 성인교육은 ‘일하면서 배우는’ 체제이다. 따라서 노동과 학습이 항상 결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성인교육에서 학습을 통해 직업재교육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려는 평생교육 이념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차이점으로는 남북한 성인교육 내용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개인의 학습 욕구에 대한 강조인가 아니면 사회적 혹은 국가적 필요성에 대한 강조인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대로, 북한의 성인교육은 정치사상교양을 강조하기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학교교육과의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남한의 성인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생활교양, 직업교육, 학위취득 등 분야별로 다양할 뿐 아니라 교육대상 혹은 고객에 따라 적절하게 내용을 구성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남한의 성인교육은 이외에도 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교육시간대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하여 교육대상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는 교육기관 자체수입으로 운영해야 하는 남한의 성인교육기관이 시장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스로의 선택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성인교육은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관리체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인교육 참여자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남한의 성인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학습욕구를 학교 밖 성인교육기관이 적절하게 수용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V. 교육행정체제

1. 북 한

(1) 교육정책관련 당 기구

북한의 교육행정구조에 있어서도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북한헌법 제 11조) 체제아래 구조상으로는 정책의 수립 기구와 집행 기구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선 노동당이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정책의 수립, 결정, 지도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각 산하의 교육성은 과학교육부에서 수립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당 과학교육부는 비서국 산하에 있으면서 교

육정책의 세부집행계획 지침을 작성해서 내각 교육성에 시달하며, 내각 교육성의 집행을 지도·감독한다.¹⁵⁵⁾ 북한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모든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지방 수준에서는 중앙의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직할시) 당 위원회의 학교 교육부는 지역의 교육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중앙당에서 결정된 교육정책의 집행사항을 통제, 감독, 검열한다.

(2) 최고인민회의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기능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에 관련되는 헌법 조항을 수정하고(제91조 제1항), 교육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하며(제91조 제2항),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제91조 자17호), 필요에 따라 최고인민회의가 조직한 교육과 관련된 중앙국가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운다(제91조 18호).

2. 남 한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남한은 국가의 목적을 국민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데에 두고, 이것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면서, 구체적인 통치의 방법으로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이것에 따라서 3권 분립주의 및 그것의 수정주의를 택하고 있다. 여기서는 남한의 교육관련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55) 북한 헌법은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모든 기본정책은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수립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당 대회는 노선과 정책, 전략 전술의 기본 문제를 결정하며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수정·보충한다. 교육관련 기본정책 역시 당 대회에서 토의·결정된다. 당중앙위원회는 모든 당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최고 지도기관이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결정하며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된다. 따라서 교육의 당면문제 역시 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상무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이 정치국과 상무위원회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1) 국 회

국회는 남한의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교육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에 관련되는 헌법 조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행정부인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청문권을 행사하며, 민의를 수렴하여 이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매 회계연도 교육 예산을 의결·승인하고 그 집행에 관한 결산 보고를 받는다. 국회는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통하여 교육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것을 행정부에 전달하고 행정부가 이러한 민의에 따라서 교육행정권을 행사하도록 정부를 견제하고 있다. 국회는 이를 위하여 교육관계 전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를 상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최고 의사 수렴 기관은 법적으로는 국회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때로는 교육관계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며, 이렇게 해서 제정한 법률은 대통령도 여기에 기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점은 남한 정부의 교육행정에 관한 궁극적 목적이 정권의 유지 혹은 또 다른 정치적 목적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국회의 교육에 관한 권한은 행정부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주도에 비하면 형식적이며, 사실상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¹⁵⁶⁾

(2) 행정부와 대통령 자문기관

남한의 모든 교육관련 기본정책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에 의하여 수립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무 행정부처로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행정부와 더불어 교육정책 자문기구의 역할이

156) 이것은 현재 대통령제 국가의 정당국가화 경향으로 집권 정당 총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여당과 정부를 동시에 장악함으로써 주로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행정부의 행정을 국회 여당이 공화적인 입장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계비교연구』, 앞의 책, 70~72면.

중요하다. 지난 역대 정권의 대통령 교육정책 자문기관만도 1980년대 이후의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심의회와 교육개혁 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현재의 대통령자문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이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남한의 교육정책은 일면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리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면도 있지만 이러한 위원회의 역할 역시 때로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남북한 비교

(1) 남북한의 중앙교육행정기관

1) 북한의 중앙교육행정기관: 교육성¹⁵⁷⁾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중앙 정부 조직은 교육성으로서 종전의 교육위원회 명칭을 헌법 개정과 함께 교육성으로 개편하였다. 남한의 교육부에 해당하는 교육성은 북한 교육 행정의 중앙 기관으로서, 학생 모집처, 노동행정처, 경리처, 계획처, 사무처, 간부처, 대외사업처, 재정후방처 등 8개처와 김일성 대학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와 그리고 교육기자재 공급총국, 보통교육부, 고등교육부의 1국 2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보통교육부는 기숙교육지도국, 교육지도처, 교원 양성소, 교육방법처, 3처, 유치원 지도처, 체육처, 출판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교육부는 대학지도처, 공장대학지도처, 출판 지도처, 체육처, 과학 및 양성처, 도서 배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직장 단위의 현직 교육과 유사한 공장 대학, 농장 대학 등 각종 단과 대학은 지방의 시·도 인민 위원회의 교육국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고등전문학교, 근로자 고등 중학교 등은 시, 군 인민 위원회산하에 있는 교육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

157) 1998년 9월 최고 인민회의 제 10기 제 1차 회의 결과 각 부분별 '위원회'와 '부'를 '省'으로 '위원장' 및 '부장'을 '相'으로 개칭했다. 1998년 헌법개정으로 국가기관체계의 개편에 의하여 정무원이 내각으로 재편된 데 따른 조치이다.

교육성은 구성상 크게 행정부서와 당위원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⁵⁸⁾

2) 남한의 중앙교육행정기관: 교육인적자원부

남한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각부의 지위를 가지는 교육부였다. 종래 교육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단순한 하나의 행정각부 장관에 머물던 행정관청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 이를 위하여 국회는 2001년 1월 21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제19조의 2항을 신설하였다.¹⁵⁹⁾ 교육인적자원부가 타 부처에 대해서 갖는 권한으로 정부조직법은 제28조(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규정하고 있다.¹⁶⁰⁾

158) 교육성의 조직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부 : 대학담당, · 보통교육부 :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담당, · 종합국 : 교육성 외 각 부서들과 산하기관들,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을 종합적으로 지도, · 조직계획국 : 교육계획, 교육조직, 예산 등 실무사업 조직지도, · 대회사업국 : 교육부문의 대외사업을 주관, · 무역관리국: 대외 무역활동, 외화벌이 사업주관, · 대학생모집국: 대학생, 전문학교 학생모집사업진행, · 김일성종합대학 지도국 :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한 행정적, 과학기술적 지도를 진행, · 교육기자재 공급총국: 교육기자재 관리 및 공급, 교육설비 및 비품생산, 교육도서출판 및 인쇄, 보급 등 주관, · 교육과학기술지도국 :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자질 개선 등의 사업주관, · 재정국: 교육재정의 지출 및 관리, · 후방부: 교육성 직원들에 대한 후방사업 담당, · 경리부 : 건물관리, 위생사업 등 담당. 이밖의 교육성 내의 당위원회 부서로는 · 조직지도부: 당생활장악지도, · 선전선동부: 사상교양담당, · 청년사업부: 청소년 사업지도, · 당원등록부: 당원등록사업 및 장증관리, · 간부부: 간부임명 및 인사이동담당, · 기요과: 기밀문서 취급담당 등이다.

159) 이 규정에 의하면, ①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둔다. ②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160) 이를 보면,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학교 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본조신설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제정 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4조(하부조직)는 이러한 사무를 장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부조직을 두고 있다. ①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보 1인을 두되, 차관보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 등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교육시설·여성교육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 ③교육인적자원부에 총무과·학교정책실·인적자원정책국·평생직업교육국·대학지원국 및 교육자치지원국을 둔다. ④장관밀에 공보관, 차관밀에 감사관 및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장·국장 및 담당관 밀에 31개 과(담당관)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있다(직제 제16조).

(2) 남북한의 지방교육행정기관

1) 북 한

북한의 지방교육행정조직은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의 교육국,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교육과에서 관할하고 있다. 종전의 행정경제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인민위원회가 흡수·통합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지방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도와 직할시의 교육국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직접 관장하고 군 교육과에서는 도 교육국의 지시를 받아 인민학교, 유아원을 관장한다. 시·도 인민위원회 교육과는 교육방법 연구회를 비롯하여 보통교육담당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¹⁾

한편 시·군 구역 교육과는 도 교육국의 지도를 받아 관내의 교육부문에 대한 교육지도 사업을 행정적 및 기술적으로 책임진다. 교육과에는 학생담당지도원, 교원담당지도원, 교육담당지도원, 종합지도원이 있다.

2) 남 한

남한의 지방교육행정조직은 시도(직할시)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시·군·구 교육장 및 당해 교육청으로 조직되어 있다. 1991년 이전에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통합되어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구로 기능하였으며, 교육감은 그 집행기관의 실질적 사무 책임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위원회¹⁶²⁾와 교육감

161) 각 도 및 직할시 교육국(9개 도, 4개 직할시), 내각 교육성의 지도를 받아 도와 직할시 내의 교육부문을 행정적으로 지도한다. · 교육지도과 : 도내 교육부문에 대한 행정 및 기술실무적 지도. · 대학생 모집과 : 중앙 및 지방대학, 전문학교의 학생모집 사업 주관. · 고등교육 담당과 : 도내에 있는 지방대학 및 단과대학을 지도. · 보통교육 담당과 : 도내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담당지도. · 도 교육도서 및 자재공급소 : 교육기자재 공급 및 보관관리 등이다.

162)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제9조에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12조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교육자치기관으로서의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다. 교육위원회는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결기관이다. 시도교육위원회는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와 지역

을 이원화¹⁶³⁾하여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육감은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3) 남북한의 단위학교 행정조직과 기능

1) 북한의 단위학교 조직 및 기능

북한의 학교행정조직을 보면 학교장 밑에 부교장, 학교 평의회¹⁶⁴⁾, 교육방법연구회¹⁶⁵⁾, 그리고 경리주임, 교무주임(인민학교), 교육주임(고등중학교) 등의 조직이 있다. 학교장과 평생선상에 학교당위원회가 있으며, 이 학교당위원회 산하에 초급당 사회단체, 교원사회단체, 학생사회단체 등의 사회정치활동조직이 있다.

2) 남한의 단위학교 조직과 기능

먼저 남한의 학교행정조직을 보면, 대부분 교무분장 조직과 각종 위원회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교무분장 조직은 교장-교감-부장교사 또는 사무직원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각종 운영협의체를

적 특성 등을 고려하므로 지역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서울이 15인, 경기도 13인, 부산 11인, 그리고 기타 지역은 7인 또는 9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교육위원은 현재 146명이다.

163) 시·도 교육감(1개 특별시 및 6개 광역시 9개 도교육감) 남한의 교육행정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분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 교육행정조직은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즉, 시도의 교육행정조직에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가진다. 교육감의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는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 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학생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안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이다. 시·도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구로서 부교육감과 하위직급의 보조기관을 더 두고 있으며, 이들의 사무처인 교육청을 두고 있다.

164) 학교평의회는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의 비상설 조직이다.

165) 교육방법 연구와 실천을 강조한다.

위한 조직으로서 교무회의를 비롯한 간부회의, 예결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성적평가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 조직이 있다.¹⁶⁶⁾ 부장은 학교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18학급 이상의 경우에는 학년부장과 행정실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행정업무 중심의 부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남한의 초·중등학교 행정조직표를 간단히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시킨 것이다.

다음 남한에는 학교장과의 견제선상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교장과 교감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각각 40-50% 대 30-40% 대 10-2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대하여 심의(국·공립학교의 경우) 혹은 자문(사립학교)을 하는 권한을 갖는다.

166) 정찬영 외, 『지방화를 지향하는 교육행·재정 구조 개편방안』(한국교육개발원, 1997), 38면.

제 5 장 동서독의 교육통합사례와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북한의 교육법제를 고찰하고, 남북한의 교육제도를 비교하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교육분야의 통합과 통일을 대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이를 논의함에 있어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의 교육통합사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다. 동서독의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의 교육통합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독일의 교육통합의 과정을 살피고, 현실적으로 탈북자의 남한 사회에의 적응에 있어 학력 및 교육경력의 인정제도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기초로 하여 남북한의 교육통합방안을 언급해본다.

제 1 절 동서독의 교육통합사례

I. 독일의 교육통합정책

1. 동서독간 문화, 학술 및 교육의 교류

동서독의 분단 과정과 그 근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은 우리에게 희망과 실망감을 동시에 전해주었다. 여기서는 동서독의 교육통합의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돌아보면,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과 더불어 서신왕래, 전화 등 통신교환에만 국한되어 있던 양독 교류는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으나,¹⁶⁷⁾ 1969년 10월 서독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Ostpolitik)에 의하여 본격적인 동서독교류의 문이

167) 구서독의 구동독과의 대립구도는 빌리 브란트의 조심스러운 대동독접근방법으로부터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작은 문제로부터 동서독이 접근하는 것으로 이른바 ‘작은 발걸음의 정책’(Politik der kleinen Schritt)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Rudolf Hrbik, *Die SPD-Deutschland und Europa, die Haltung der SPD zum Verhaeltnis von Deutschland-Politik und West-Integration*, Bonn, 1988), S. 116;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통일연구원, 2000), 163면.

열리게 되었다. 브란트는 “가령 독일 내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서로 외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여 동독을 국가로서 인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ktrin)의 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서독의 대 동독 및 동구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시사하였다. 다시 말해,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사실상 동독을 승인하는 1민족 2국가론 (Zwei Staaten einer Nation)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동서독 분단의 현실을 인정하고 상호교류의 확대에 의해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간다는 선포화 후통일론이기도 하였다.

브란트는 폴란드와의 새로운 국경선을 받아들이고 공산 동독의 실재를 인정하는 대가로 오랫동안 위협받아온 서베를린의 지위를 안정시켰다. 그의 동방정책은 1970년 8월 소련-서독 조약체결, 같은 해 12월 서독-폴란드 조약체결, 1971년 12월 양독 베를린통과 교통협정체결, 1972년 6월 미·영·불·소 4대 강국의 베를린에 관한 협정(Viermächte Abkommen über Berlin)¹⁶⁸⁾을 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¹⁶⁹⁾

이처럼 가시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양독관계의 개선정책은 더욱 발전되어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이하에서는 동서독기본조약이라고 함)이 체결되었다.¹⁷⁰⁾ 이 기본조약으로 양독 국민의 실

168) 특히 이 협정은 서독과 서베를린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서독과 서베를린 간의 연결유지 및 개발, 서베를린 시민의 동독 방문 등을 논의하고 합의하였다. 이어 1972년 10월 17일부터 발효된 양독간의 통행협정(Verkehrvertrag)은 양독간의 자유로운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친척, 친지의 재회는 물론 문화·종교·체육행사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와 같은 양 체제의 상호문화개방은 양독간의 긴장완화는 물론 민족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169) 이를 계기로 동독을 방문하는 서독 사람들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이전까지는 직계 가족에 한해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었던 제한이 풀렸고, 초청장을 가진 서독 주민은 30일 한도 내에서 동독에 있는 친지들을 자유로이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동독 주민의 서독방문도 활발해졌다. 65세 이상의 연금생활자에 한해 년 4주 1회만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이 연금생활자가 아니더라도 서독 내 직계 가족에 긴급용무가 생기면 방문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정용길, 『분단국통일론』(고려원, 1990), 59~61면.

170) 주요 협약내용에는 동서독간 동등한 자격 원칙하에 정상적인 인근 우호국가로서의 관계개선,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자립, 국경선, 자결권, 인권, 동등대우 등 유엔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 인정, 유럽평화·안보·협력기여, 병력 및 군비축소 노력, 핵무기 및 대량학살무기 제한 협조, 실질적·인도적 문제 규정, 경제, 학술, 기술, 교통, 법적 교류, 우편·통신, 보건, 문화, 체육, 환경보호협정 체결, 양국 정부

제적인 많은 생활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

동서독기본조약을 바탕으로 동독과 서독간에는 수많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었음은 물론, 동서독은 1973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1975년 12월에는 상주 대표를 교환함으로써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서독 측의 노력은 유럽 내에 상종하였던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서독의 국제관계상의 영향력을 크게 신장시켰다. 또한 이 기본조약으로 동서독은 양국간의 폭넓은 직접 교류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며 민족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서독정부는 양독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치범의 석방문제, 베를린까지의 고속도로 건설 문제, 여행문제 등 기회만 있으면 서독은 동독을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1982년 정권을 잡은 헬무트 콜 수상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승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80년대 초 폴란드 자유노조운동이 배태한 동구권의 민주화 열풍 그리고 1985년에 등장한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그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동서냉전체제의 급속한 완화 등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독일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였다.

통일 전 동서독간의 경제·사회 등 제 분야에서서의 교류는 양독간의 접촉, 교류에 관한 여러 가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다. 여기서는 문화, 학술 및 교육과 관련된 몇몇 조약·협정의 배경 및 내용과 이러한 조약·협정에 의거 실제 이 분야에서 동서독 간에 이루어진 교류사례를 살펴본다.

(1) 동서독기본조약 (Grundlagenvertrag)

구서독에서 1969년 사민당의 브란트를 수상으로 한 사민·자민 연립정부가 등장하여 소련 및 동구제국과 화해를 하는 동방외교를 추진하면서 동서독의 교류는 본격화되었다. 동방외교에서 서독은 외교정책상 새

소재지에 상주 대표부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서독관계의 조명』(지식산업사, 1988), 36~45면.

로운 행동의 영역을 넓히고 그동안 축적된 경제력과 국내정치에서 의회 외의 반대세력을 체제내로 신속하게 흡수한 안정기반 위에서 독일 문제에 주도권을 발휘하여 양독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서독기본조약을 성립시켰다.¹⁷¹⁾ 동서독은 통일이라는 유보된 국가적 과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과업달성을 위해 국력을 사용할 때 유럽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통찰하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이 기본조약체결의 의의가 있다.

1972년 12월 21일 서독의 에곤바르 정무장관과 동독의 미카엘 콜 내각청 차관사이에 조인된 기본조약은 총 10개 조항과 이에 대한 추가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문화, 학술 및 교육의 교류와 관련된 조항은 제7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²⁾

<본 문>

제 7 조: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그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인도적 문제를 규제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 쌍방은 본 조약의 원칙에 입각해서 상호이익을 위하여 경제, 학술, 기술, 교통, 사법, 우편, 전산업무,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세부사항은 추가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다.

<추가이정서>

제 7 조에 대하여

2.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경제와 기술분야에서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요구되는 조약을 체결할 의도가 있음을 표명한다.
5.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만국우편연맹 및 국제전신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편 및 전신협정을 체결하도록 합의한다.
7.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문화분야에서의 협조를 발전

171) 백경남, 『동서독 기본조약성립의 대내외적 상황』(국토통일원, 1982), 1~4면.

172) 『남북한 사회문화 및 예술분야 교류방안』(국토통일원, 1989), 196~200면.

시킬 의도를 표명한다. 이 목적을 위해 쌍방은 정부간의 협정체결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

10.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서적, 잡지,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제작물의 상호간 구입을 확대할 목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동서독은 기본조약 및 추가의정서를 통해 학술, 기술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이에 필요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지와 문화분야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정부간의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의도를 표명함으로써 동서독 관계진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2) 독일문제에 대한 구서독 문교부의 교육지침

독일의 분단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하여 분단을 체험하고 몸소 겪었던 기성세대들과 젊은이들 간에 분단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독일분단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들이 시간적 흐름과 거주지역의 지리적인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서독인들은 깨닫게 되었다. 즉, 독일문제 등에 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에서 서독 청소년의 상당수가 독일분단의 원인, 기본조약, 베를린의 법적지위 등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감정적인 반공의식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통일을 향한 제반 활동에의 참여의지가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¹⁷³⁾

독일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전체적 연관성 속에서 독일민족의 통일의식과 평화롭고 자유롭게 독일을 재통일하려는 의지를 젊은이들에게 심어 주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학교가 특별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이해가 바탕이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1978년 11월 서독 11개 주 문교장관들은 15개항의 독일문제에 대한 서독 문교부의 교육지침에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⁴⁾

- 1) 독일문제는 동시에 유럽문제이다.
- 2) 독일문제의 점진적 해결은 평화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서 달성될 수 있다.

173)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한국교육개발원, 1988), 44면

174) 『학교통일, 안보교육지침서』(한국교육개발원, 1989), 206~222면.

- 3) 독일의 항구적인 분단은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있다.
- 4) 민족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 5) 역사적 유산에 대한 책임은 독일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관계된다.
- 6) 국경선 양편에 살고 있는 독일인들은 공동의 언어, 역사,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 7) 독일의 국민들은 공동 국가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공동국적을 가지고 있다.
- 8) 동독의 체제와 우리 고유의 사회질서와의 비교는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는 가치척도 하에서 비롯된다.
- 9) 동독에 있는 독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인도주의적 의무이다.
- 10) 인권에 대한 요구는 결코 내정간섭이 아니다.
- 11) 동독은 서방의 영향력에 폐쇄정책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 12) 중요한 사실들은 동독주민들도 독일 통일에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 13) 동독의 독일인들도 동독의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다.
- 14) 독일의 통일은 확고한 우리의 목표이다.
- 15) 서독이 독일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중요한 내용으로 몇 가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 동서독 양국민은 공통된 언어,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공동체로서 비록 하나의 국가를 갖지 못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개개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통일된 동일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는 점(7항)이다.

둘째, 동독의 지리, 중앙행정, 무역, 도시계획, 관광사업, 지배체제, 맑스-레닌주의, 사회경제적 상태, 교육체제, 문화체제, 사회질서 등 동독의 현실에 대해 다방면에서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여 이들을 서독의 경우와 비교하고 이를 통해서 동독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함으로써 동독 동포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려는 점(8항)이다.

셋째, 독일의 분단을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동독의 분리발전을 주장하는 동독의 지배층과는 달리 동독주민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으며, 전후에 서독인들보다 어려운 조건 하에서 전쟁복구에 임하여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는 데 대해 긍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써 서구는 부유하고 동구는 가난하다는 식의 잘못된 모형을 가지고 동독인을 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점(12항 및 13항)이다.

다섯째, 서독은 독일전체가 아니며, 서독주민이 전체 독일 민중은 아니라는, 다시 말해 장벽 너머에도 독일이 있다는 인식 하에 독일인들의 지속적인 연대감 특히 동독의 젊은이들과의 연대감을 형성시키고자 한 점(15항) 등이다.

서독은 이 지침서를 통해 동독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제로 한 독일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정치적 통일이 불가능한 현실하의 양독 주민들의 이익과 유럽의 평화를 고려하면서, 독일 양국의 조화된 병존의 필요성과 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한 독일 통일의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¹⁷⁵⁾

(3) 문화협정 (Das Kulturabkommen)

1972년 기본조약의 체결을 계기로 양독 간에 문화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접촉의 노력은 1986년 5월 전문 15조로 된 ‘문화적 협력에 관한 협정(Das Kulturabkommen)’(문화협정)이 동서독간에 체결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협정은 동서독 기본조약의 정신을 상기하고 양 독일의 문화적, 사회적 생활의 지식과 이해를 제고시키며, 평화와 긴장완화에 기여하며, 문화적인 협력을 항상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협정의 당사자가 가능한 분야에서의 양측의 관심 하에 문화·예술·교육·학문 등의 협력을 다른 분야에서의 관계처럼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¹⁷⁶⁾ 문화협정 중 교육 학문에 관련되는

175) 김태완 외, 『남북한 교육통합정책연구』, 앞의 책, 99~100면.

176)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제2권 4호(국토통일원, 1990), 156~158면.

규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 협정 파트너들은 대학, 전문교육과 같은 학교, 직업, 성인교육 등을 포함한 학문, 교육분야에 있어서 서로를 협력, 지원한다.

제 1 항 : 경험과 학문정보의 교환, 각종 학술회에 참가 사절단, 학자, 전문가의 파견

제 2 항 : 강의와 연구 및 학습체류를 위한 학자의 교류

제 3 항 : 학생 특히 대학원생과 소장학자들의 학문연구를 위한 장기체류 장려

제 4 항 : 전문적인 문헌, 교재, 사상자료 등의 교환

제 5 항 : 상기 2절과 3절의 현실화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제12조 : 협정파트너들은 협정의 수행을 위해 2년간의 시기를 포함하는 재정적 규정의 업무계획을 세운다. 이 조약을 통해서 문화 업무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조치의 지원도 협정의 목표에 상응하는 성격을 갖는 한 제외하지 않는다.

이 협정의 체결로 양국간의 문화관계는 크게 향상되었고, 학문, 학술, 교육분야의 관계증진 및 교류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게 되었다.

(4) 학문·학술협정 (WTZ-Abkommen)

동서독 사이에는 경제교류나 인적교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학술교류 분야에서의 교류는 없는 편이었다. 그러나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양독간의 과학·기술·문화 협력에 관한 노력들은 1986년의 문화협정을 거쳐 결국 1987년 ‘동서독 정부간의 학문과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을 위한 협정’의 체결로 본격화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양독 정부는 학문과 기술에 대한 협력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며 상응하는 계획과 조치에 합의하고 그의 수행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⁷⁷⁾

177) 정용길, 앞의 책, 386~388면.

제 1 조 : 동서독 정부는 상호간의 편의를 위해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공동협력을 촉진하고, 이에 따른 계획과 실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일치협력하여 지원한다.

- 제 2 조 : 1. 양국간의 공동협력은 자연과학 및 기술과학은 물론 정신과학과 사회과학분야를 포함하며 나아가 자연과학과 기술과학이 연결되는 특수분야의 문제까지도 포함한다.
2. 양국 정부는 과학 및 기술분야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자료 및 출판물을 상호교환하고 이를 위한 양국 기록문서 센터간의 상호 공동협력을 도모한다.
3. 양국 정부는 과학 및 기술 공동협력 수행을 위해 양국 정부대표의 상호 협의하에 내독관계로서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산을 보호하고 권리행사에 따른 필요한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같이 한다.

제 5 조 :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 공동협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진다.

1. 정보의 교환
2. 과학 및 기술분야 심포지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의 개최를 조직, 진행
3. 정보자료 수집, 학문연구, 교수 등의 목적을 가진 학자 및 전문가의 교환
4. 연구 프로젝트의 조정 및 수행
5. 학문적 기구나 장비 등과 같은 연구자재를 상호준비

이러한 합의에 따라 협정은 양독 사이의 학문 및 기술분야 협력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다.

(5) 동서독간 교육의 교류

동서독간의 교육분야의 교류에 관해서는 몇 시기로 나누어 그 전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알다시피 양독간의 문화, 학술 및 교육분야의 접촉과 협력관계의 발전은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동서독의 정치적 상황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어 왔다.

첫째, 제2차세계대전 후부터 문화협정체결까지의 시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각 주의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관계 공무원간의 서신왕래 및 회의 참가 등을 통한 상호교류가 있었고, 분단된 독일보다는 하나의 독일, 전체의 독일이라는 인식이 독일인들간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전후 첫 몇 년간 대학에서는 중단된 학문적 관계를 새로이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동독의 공산당의 전면적인 거부로 중단되었다.¹⁷⁸⁾

1950년대 이래 동서독 각 주의 교육·문화 관련 부처간의 접촉은 단절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1960년대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전까지의 1960년대 및 1970년대 초의 양독간 문화, 학술 및 교육분야의 교류실태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¹⁷⁹⁾

교육, 학문, 기술분야에서 동서독은 양독관계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사적인 정보수집여행과 서독에서 개최된 개인 강연회 등에 참가한 경우 이외에는 1970년대 초반까지 이 분야의 양독간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즉 이때까지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서독과 동독간에 제도화된 정보 및 경험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양독간의 교류관계는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관계는 학자 개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한 데 기인하고 있다.

1969년 이래 사민당의 브란트정권이 동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문화, 학술 및 교육분야에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실제 교육·학술 분야의 접촉 및 교류가 어려워서 자료 및 정보수집은 가능했지만 크게 활기를 띄지는 못하였다.

둘째, 문화협정 이후의 양독간 교육분야 교류협력의 양상은 1986년 5월 문화협정과 1987년 9월 학문과 기술분야에 대한 공동협약을 위한 협정(WTZ Abkommen)의 체결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한 예로, 문화협정에 의거한 1988년-89년 문화 및 교육분야 협

178)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앞의 논문, 169~171면.

179) 『동서독관계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국토통일원, 1989), 66~71면.

력계획의 내용을 보면, 우선 예술과 문화에서는 조형미술, 문학, 언어, 출판관계, 음악, 연극관계, 도서관·문서보관소 관계, 기념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39건이 있었다. 학문분야에 있어서는, 학문연구를 위한 체류, 학술회의, 학생, 학자, 자연과학자들의 교류 등 18건이 있었고, 교육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교류, 직업교육에 관한 세미나, 교육공학관계 자료의 교환, 우수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재정지원, 교육전문가와 학생들의 만남, 보건의학과 학교교육 전문가의 상호 방문, 청소년 그룹의 상호방문 여행, 동서독 대학간 협력을 위한 재정지원 등 21건이 포함된다.¹⁸⁰⁾ 이와 같이 문화협정 후 교육분야 교류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학술 및 기술분야 협정(WTZ-Abkommen)은 도시와 도시, 대학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와 연구소 간의 직접적인 파트너 관계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다.¹⁸¹⁾ 1988년의 독일연구 재단(DFG)과 동독의 과학원간의 협력이나, 1989년까지의 자알브뤼켄과 라이프찌히, 아헨과 드레스덴, 뮌헨과 라이프찌히, 슈투트가르트와 카알 마르크스 대학간의 자매결연 등은 그러한 사례이다.¹⁸²⁾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동서독간의 학술모임은 바이마르에서 열렸던 괴테협회(Geothel Gesellschaft)의 회의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었으나, 1987년 학문과 기술분야 협정체결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1988년에는 동서독 학자간에 약 100여회의 회의가 열렸었다. 또한 석탄, 원자력발전소, 핵물리학, 인권문제 등에 관한 27개 부문에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이루어졌고, 1989년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6개 프로젝트 이행에 양독일이 합의하게 되었다. 동서독간 학문교류에서 유전공학,

180) 신용철,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 교육에 주는 시사”, 『통일문제연구』, 제2권 1호(국토통일원, 1990), 172~173면.

181) 그 사례로 체육학은 서독의 뮌헨공대와 동독의 예나대학과 할레대학, 19세기 언어학 분야는 뮌헨대학과 바이리세 아카데미, 사전 및 언어학 연구는 만하임 독일연구소와 동독과학 아카데미, 수학은 파다본 대학과 예나대학, 원전안전에 관해서는 슈투트가르트대학, 뮌헨공대와 마그테브르크대학, 20세기 문학은 지겐대학과 동독과학 아카데미, 해양학은 킬대학과 바르레문대학과의 협력관계를 들 수 있다. 신용철, “독일 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앞의 논문, 140~141면; 정용길, 『통일환경론』(고려원, 1990), 351면.

182)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앞의 논문, 160~164면.

환경보호, 원전안전, 에너지연구, 의학부문 등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하였으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교류는 그렇지 못하였다.¹⁸³⁾

셋째, 청소년 및 학생 교류로서 양독간 교육분야 교류 중 특기할 만한 것이다. 서독의『연방 청소년연맹』(Deutscher Bundesjugendring)과 동독의 ‘자유독일 청소년단’(Freie Deutsche Jugend)은 1982년 9월 20일 동·서독 청소년들에게 상호 이해 촉진을 도모하고 독일 문화의 뿌리를 확인시키기 위해 청소년 교류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미 1972년 기본조약 체결 전부터 서독의 사민당 청년 단체나 기독교 또는 가톨릭 청년회 등의 주관 아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을 방문하였다.¹⁸⁴⁾ 문화협정에 ‘청소년 교류촉진 조항’이 생겼고, 또 1987년 9월 호네커가 서독을 방문했을 때 공동성명에서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¹⁸⁵⁾

이러한 여행을 한 청소년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때 이데올로기나 체제비교 등의 자극적 사안을 회피하였으며, 상대방지역(특히 구동독지역)으로의 수학여행, 국경부근 학교들끼리의 자매결연 등 사업추진은 공동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었다.¹⁸⁶⁾

183) 신용철, “통일을 향한 동서독의 접근이 남북한 교육에 주는 시사”, 앞의 논문, 140면; 정용길, 『통일환경론』, 앞의 책, 350~352면.

184) 양독간 청소년 교류 계획은 1974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35개 그룹에서 약1,220명의 동독 청소년이 서독을 방문하였고, 서독 청소년 22,000명이 동독을 방문하였다. 1984년에는 모두 1,272개 그룹에서 약 36,000명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을 방문하였고, 1985년에는 더욱 증가되어 68,000명의 서독 청소년들이 동독 땅을 밟았으며, 동독측에서는 34개 그룹에서 약 1,000명이 서독을 방문하였다. 그들 가운데 약 80%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정용길, 위의 책: 347~348면.

185) 1987년 한해동안 서독 청소년 77,000명, 동독 청소년 3,760명, 1988년에는 서독 청소년 78,000명, 동독 청소년 5,000명이 상호 교환 방문하였다. 서독 청소년들의 동독여행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데, 서독 연방정부는 기차여행일 경우 기차요금의 전액을, 버스여행일 경우 전세요금의 80%까지를 지원하였고, 이밖에 체제비 보조로 1인당 하루 5DM씩을 지급하였다. 또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의 자유독일청소년단의 회원들이 서독을 방문할 때도 1인당 하루 20DM씩 여비보조를 해 주었다. 위의 책, 348~49면.

186)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앞의 논문, 174~175면; 정용길, 『통

II. 통독후 독일 교육 통합

독일의 통일은 독일인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졌다. 1989년 10월까지만 해도 독일의 분단상태의 지속을 예상하여 통합된 교육체제의 관한 정책들은 개발되지 않았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에서 동서독에서는 각각의 교육제도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점진적 통합을 예상한 교육통합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급격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통일독일의 교육통합문제도 그만큼 빠른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은 법적 측면에서 구서독기본법의 제23조의 편입조항에 의한 통일방식을 취함으로써 구동독의 법제의 구서독체제로의 편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의 경우 구동독의 교육제도의 구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독일의 교육제도의 통합은 기존의 구동독 교육제도의 개혁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통일독일은 동독의 교육제도를 서독의 형태와 내용에 맞추어 개선하도록 하였기에 여기서는 동독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독일의 교육통합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통일 전 동서독의 교육체제 비교

분단상황 아래 동서독은 정치·사회·경제체제에 있어 서로 상이한 체제 하에 있었으며, 교육제도도 서로 상이하게 발전하였다. 먼저 민주적 법치 국가인 구서독은 독일교육의 전통적 체제에 기반을 둔 다원적인 연방교육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현행 학제는 i)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유치원의 기초교육단계, ii) 4-6년 간의 국민기본교육의 초등교육단계, iii) 5-6년 간의 하우푸트슐레 (Hauptschule), 실업학교 (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과 이 셋을 통합한 종합학교(Gesamtschule)로 구성된 전기 중등교육단계, iv) 3-4년의 김나지움 상급반(Oberstufe), 직업학교(Berufsschule), 직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등의 후기

일환경론, 앞의 책, 349~350면.

중등교육단계, 그리고 v) 종합대학, 단과대학,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교육은 국민교육(Volksbildung)의 교육이념에 기초를 두고 교양강좌, 직업훈련교육, 고등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독의 교육행정권한은 각 주에 부여되어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이루고 있으며 각주는 독자적으로 문교부를 두어 자체의 지방교육체제를 통하여 교육업무를 수행하여왔다.¹⁸⁷⁾

이에 비해 구동독은 중앙집권적 원칙 하에 운영된 통합된 사회주의적 교육체제도의 원리를 고수하여왔다. 1946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를 포괄하는 교육의 전 영역에 관한 ‘독일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법’ (Gesetz zur Demokratisierung der deutschen Schule)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거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이 있었고, 8학년의 공동기본학교를 주 내용으로 하는 통일된 학교체제가 성립되었으며, 사립학교가 금지되고, 학사에서 국가와 교회가 엄격히 구분되게 되었다. 그 후 1959년과 1965년 두 차례의 교육개혁을 거쳐 통일전의 교육제도에 이르게 되었다. 통일전 구동독의 학교제도는 i) 3세까지의 영아들을 위한 탁아소와 3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들을 교육시키는 유치원 등으로 구성된 취학 전 예비교육단계, ii) 무상의무교육기관인 10년제 일반종합기술학교(Allgemeinbildende polytechnische Oberschule)의 초등교육단계, iii) 10년제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진학하는 2-3년제 직업학교(Berufsschule), 2년제의 상급고교 (Erweiterte Oberschule), 그리고 3-4년제의 기술학교와 전문학교 등의 중등교육단계, 그리고 iv) 종합대학(Universität)과 단과대학(Hochschule)의 고등교육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다.¹⁸⁸⁾

187) 김영철 외, 『학교제도』(한국교육개발원, 1986), 220~225면.

188) 구동독에서 학교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주어졌었으며 교육행정기관은 당 비서국의 통제를 받았다.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비는 무료이고 10년제 종합기술학교 졸업생에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사회교육기관으로는 기업체 부속 학교, 대학에 설치된 연구반, 시민대학 등이 있으며, 주로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김동규, 『사회주의교육학』(주류, 1988), 212~219면.

동서독의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었다.¹⁸⁹⁾

첫째, 교육행정 측면에서 구서독에서 교육문제는 11개 각 주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각 주들은 자체적인 교육체제, 교육과정, 교육법 그리고 교사 양성방법 등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구동독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가 모든 지역에 중앙집권적 교육구조를 갖도록 했으며 획일적인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재, 표준화된 교사훈련체제를 수반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구동독에서는 중앙정부나 중앙에 의해 통제받는 부처만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었던 반면에 서독에서는 학교경영에 있어 뚜렷한 분권적, 다원적인 체제를 견지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운영에의 참여 측면에서 구서독에서는 위원회나 조직체를 통하여 부모, 학생, 교사들은 학교축제에서부터 교수계획, 교과서 선정, 인사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행사를 준비하고 조직하는데 광범위한 참여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구동독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이사로 관여하고 있었고 노동자들이 직업기술계 학교의 운영과 학사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와 같은 참여가 실제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셋째, 교사양성 측면에서 구서독의 경우 교사훈련은 3년 내지 6년간의 대학교육과 1차국가고시 이후 실시되는 18개월 내지 24개월간의 실습교사과정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에 비해 구동독에서는 교육현장 실습이 교육과정의 한 과목으로만 포함되어 있었다.

넷째, 개별 교과목에서의 정치적, 교육적 개념이나 교육목표는 동서독의 교육체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구동독의 경우,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교육목표를 전면적으로 조화로운 사회주의 인격에 육성에 두고 생산노동, 학습, 정치활동, 문화활동, 스포츠 등이 사회주의적 인격형성에 기여하도록 짜여져 있었다.

다섯째, 교과수업진행에 있어서 구서독에서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자율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구동독에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교수지침서에

189) Reiher Dieter, “독일의 교육통합정책”(한·중·독 각국의 교육통합정책 심포지엄 발표논문, 1991); 신세호, “교육개혁의 국제동향”, 『교육난국의 해부』(나남, 1991), 380~383면; 황성모, 『통일독일의 현장연구』(일남, 1990), 201~205면.

의해 수업이 진행되었다. 서베를린과 브레멘 주를 제외한 구서독의 모든 주에서 종교교육이 학교의 정규과목인 반면에 동독에서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제도상 구서독은 13학년 졸업후 대학입시 자격이 부여되나 구동독은 12학년 졸업후 부여되었다. 이에 비해 구동독의 경우, 학력의 우열이 서독보다 늦게 분리되어 엘리트교육이 되지 못하므로 전문대학이나 대학진학자들의 학력수준은 동서독간 심한 격차를 보였다.

2.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구동독교육제도의 변화

독일통일은 구동독시민의 무혈혁명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급속한 통일이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1989년 10월 이전에 시민단체, 교회, 평화운동단체들에 의하여 구동독의 이데올로기 교육, 왜곡된 교육내용, 중앙집권적 교육제도 등의 변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구동독 교육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이념교육과목, 군사교육, 국가시민과목 등이 폐지되었고, 행정부의 인사정책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에 교육혁신을 위해 구동독정부가 내린 결정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¹⁹⁰⁾

첫째, 행정구조의 변혁을 위한 인적 재구성과 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부모, 학생, 교사, 재단의 합법적인 대표들로 구성된 학교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통일 연방공화국의 출현은 기정사실이라는 점에서 각 주에 장학기관이 신설되고, 새로운 교육구 장학관, 주의 장학관, 그리고 모든 교장들이 새로이 임명되었다. 다시 말해 통일방식의 결정(구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거)에 따라 교육제도의 구서독체제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구동독의 기존 교육제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둘째, 통일을 대비한 구동독체제에서의 이념적, 정치적 교육제도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교수요목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교과목, 교육목표, 그리고 수업시간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들을 제외하고는 역

190) Reiher, 앞의 논문, 같은 면.

사, 사회연구, 지방역사와 지리 등과 같은 교과목들에 새로운 환경에 상응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지침들이 마련되었다.¹⁹¹⁾

3. 통일독일의 교육통합을 위한 과제

통일 이후 동서독의 기존교육체제를 통합하고 양독지역간의 교육분야의 균형을 달성하는 문제는 통일 독일이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다. 분단상황 하에서 양독간의 교육체제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교육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초기에는 양 체제를 병립시키면서 양 체제에서의 가장 좋은 특성들을 모아 하나의 새로운 독일 교육체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었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방식이 구동독체제의 붕괴에 의한 구서독체제로의 편입이라는 흡수통합방식으로 결정되면서 동서독간의 교육체제의 통합·통일이란 구동독 교육체제의 구서독교육체제로의 적용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통일후 구동독지역의 새 지방정부는 단기간내에 문화교육부, 학교장학기관, 현직연수기관 등과 같은 새로운 행정구조를 설립하여야 하였으며, 교육영역에서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혁을 위한 인적·물적 투자와 체계화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새로운 학교체제가 구동독지역에 도입되면서 과거 구동독의 통합학교체제는 초등, 전통적인 중등, 종합학교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조직 및 교과목의 변화로 인하여, 구동독의 교육종사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폐지된 교과목 교사들의 해고는 불가피하게 되었고, 교사들의 수업부담도 증가되었다. 한편 새 자격기준에 의한 교사들의 선별작업 및 재교육, 교과목의 재조정,¹⁹²⁾ 학교현장에서의 내부적인 개혁¹⁹³⁾ 등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일반교육(기초교육)의 내용과 범위, 교육 과정의 배분, 교수 학습의 형

191) 러시아어를 제1외국어로 정한 규정이 폐지되고,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수강과목의 선택을 인정한 것은 구체적인 변화의 사례이다.

192) 예를 들면, '국가시민과목'의 폐지와 '사회문제과목'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193) 예컨대 학교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과거 통일사회당(SED)의 잔여요원들의 영향력 제거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태, 정치교육, 학교와 종교, 역사개념 등에 관한 논의들이 통일후 과제로 다가섰다.¹⁹⁴⁾ 이러한 과제들은 과거 양독간의 교육제도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나 구동독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개혁에 의한 구서독의 교육체제로의 전면적인 편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통일이후의 교육통합에 관해서 동서독간의 '통일조약'은 제37조에서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보면, 통일 후 구동독의 교육통합의 원칙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⁹⁵⁾

첫째, 구동독에서 취득하거나 국가공인의 학력과 자격증은 통일독일에서 유효하며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원칙을 정하였다. 특히 시험 또는 자격증의 동등인정은 신청에 의하여 해당관청의 확인으로 결정되며, 이에 관해서는 연방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법규정 및 조약의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가취득 및 국가공인, 또는 수여받은 대학의 직업명칭과 등급 및 학위의 사용권리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제1항).

둘째, 교사자격시험은 문교장관회의에서 인정하는 절차가 요구되며, 이 절차에 대한 과도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제2항).

셋째,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조직, 전문근로자직업조직,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업으로 인정된 직업자격증 시험과 장인자격 시험의 성적증명서의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였다(제3항).

넷째, 구동독지역의 학제변경에 요청되는 규정은 구서독지역의 주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학위인정을 위한 필요규정은 문교장관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르도록 하였다(제4항).

다섯째, 졸업 이전 정확하는 학생은 졸업시험규정에 관한 일반규정의 기본원칙 또는 국가고시 허가적용규정에 따라 그때까지의 학점과 평가기록을 인정받도록 하였다(제5항).

여섯째, 구동독의 기술 및 전문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자격은 1990년 5월 10일 문교장관회의 결정에 의하여 인정되며, 학교 및 대학졸업후의

194) 구동독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Bern-Reiner Fischer und Nobert Schmidt, "Das zweifache Scheitern der DDR-Schul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Semtember 6, 1991);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민족통일연구원, 1992. 5), 306~309면.

195) 김형운 외, 『統一條約批准法』(민족통일연구원, 1993), 34~35면.

상급직업교육을 위한 전문학교 졸업, 대학졸업의 인정과 관계된 원칙과 절차는 문교장관회의에 의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제6항).

이와 함께 통일조약은 제38조에서 학술 및 연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를 기초로 통일독일에서는 직업교육을 위한 연방정부의 목표로 모든 사람에게 최선의 교육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 정하고 직업교육을 실업퇴치와 연계하여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다. 그래서 구동독지역주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직업훈련생 증진노력 및 매년 특별프로그램을 통한 구동독주민의 직업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에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청소년실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통일 직후에만 한정하여 추진되지 않고 통일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구동독지역의 고용확대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였다.¹⁹⁶⁾

교육통합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구동독지역의 기존의 교육체제 및 제도의 전환이 형식과 함께 실질적인 면에서 추진되어야만 진정한 통일을 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학교육의 경우, 구동독의 교육기관들은 과거 40년간 사회주의 건설혁명을 위한 엘리트들을 양성해 왔다. 대학의 연구 및 교수활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대학의 신입생 선발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이루어졌었다. 모든 졸업생들에게 직업을 배정한다는 목표에서 지원자의 10%정도만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구서독에 비해 학생들의 대학 입학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대학에 요청되는 우선적인 과제로는 정치적, 도덕적 소양을 갖추고 전문적 교육을 받은 교수요원의 확보, 대학 교과목 및 시험제도의 재편성, 장학금 및 학비보조체제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 구동독대학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국제사회에서의 인정 등을 들 수 있다.¹⁹⁷⁾ 또한 대학입학 허가기준에서의 동서독간의 현저한 차이해소, 동독(서독)학생들의 서독(동독)대학에의 지원 및 입학허가문제, 동독(서

196) 이에 관해서는 『독일통일백서 (’99)』(통일부, 2000. 3), 86~92면.

197) 구동독지역에서의 교육통합과정과 실태에 관해서는 『독일통일백서 (’99)』, 앞의 책, 309~317면.

독)대학의 서독(동독)학자들의 영입, 동서독 대학간 유대관계의 제도화 문제 등 동서독 양측이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었다.¹⁹⁸⁾

이러한 통일독일에서의 교육통합과 관련한 계획과 시행착오는 비록 배경과 내용상의 차이가 있지만,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주는 바가 크다.¹⁹⁹⁾

Ⅲ. 독일교육통합이 남북한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

동서독의 교육통합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잘 알다시피 독일분단은 남북한의 분단과는 많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독일이 남북한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데에는 분단 이래 독일인들의 통일을 향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1960년대 말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추진되면서 연방정부 및 주정부차원에서, 그리고 각 대학 및 연구소 수준에서의 접촉·교류를 위한 크고 작은 노력들은 통일독일의 교육통합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기저에는 크고 작은 교류관련분야의 접촉과 교류 및 협력사업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에 남북한도 교육부문에서의 남북교류의 폭을 넓혀 가면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교육통합을 위한 사업들을 정부당국은 물론 민간차원 등 방면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동서독은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를 도모하면서도 더욱 서로의 공통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인식에 기초하여 서로 상대방의 지리, 역사, 문화, 생각, 사상 등에 관하여 서로가 상대방을 알기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서독의 민족공동체 인식을 강화하여 동서독관계를 발전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198) Reiher, 앞의 논문; 황성모, 앞의 책, 210~214면.

199) 독일의 통일과 제도교육의 통합에 관한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향규, “통일후 교육제도 통합과 사회적 삼투현상: 독일과 한국”, 『統一問題研究』, 2003년 하반기호 (통권 제40호)(평화문제연구소, 2003), 275~282면.

이에 비하여 남북한의 경우 분단하의 대결관계의 지속상황 하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오히려 이념과 체제의 대립상황에 의한 적대의식은 역사의 왜곡과 상대방에 대한 설득과 대화보다 자신을 강요하는 방향에서 접근됨으로써 비록 공통의 역사, 단일의 민족성 및 역사성, 단일언어 등의 단일성에 대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교육통합을 어렵게 하는 교육원리와 제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일민족의 역사적, 민족적 인식의 틀 소기에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교육부문의 협력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²⁰⁰⁾

셋째, 동서독 사이의 교육분야 교류·협력은 주로 체육학, 언어학, 수학, 원자력, 유전공학, 해양학, 의학 등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적은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청소년들의 상호방문 및 여행에서도 이데올로기나 서로의 체제비교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는 자제되었다. 남북한간 교육교류도 이와 같이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내용을 내세우게 되면, 양체제의 취약점을 강조하게 되고 이럴 경우 서로의 자존심을 해치게 되어 교류 협력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어 있고 교육분야의 접촉·교류도 통일전선 차원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신중한 대응이 요청된다. 어떤 분야의 교류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 그것은 남북한 상호 신뢰감 구축과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는 독일의 경우에서와 같이 민간차원에서 주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만을 만들고 실제 교류는 각 대학, 연구소, 청소년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동서독간의 실제적인 교류의 시작과 발전은 동서독정부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동서독기본조약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200) 그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한 공통교과서 편찬’, ‘우리말사전 공동발간’, ‘남북학생간 수학여행 및 고적탐사’, ‘학술단체의 공동조사 및 연구’, ‘비무장지대의 남북학생 공동 생활문화센터’ 및 ‘평화대학’설치, ‘사회주의국가 교포에 대한 동질성 회복 교육강화를 위한 ‘한국교육원’의 설치·운영’ 등이 제시되었다. 『중앙일보』, 1991년 10월 17일자.

가속화될 수 있었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효과적인 남북교류협력체제의 구축은 동서독기본조약이나 문화협정과 같은 양정부간 합의·협정에 의하여 공고화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간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교육관련 협정을 근거로 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다. 아직 남북한은 교육부문의 교류와 협력의 경우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독일인들은 이른바 통일교육으로서 정치교육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나 사회기성인들에게 합리적인 판단력과 비판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올바른 통일관과 확고한 통일인식을 고취시키며, 통일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교육적 노력을 경주해온 것이었다.

남한의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통일 내지 안보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나,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그 내용의 수정, 보완, 개선이 요청되고 있으며, 더욱이 사회의 일반성인들을 위한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통일교육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학교 통일교육 및 사회교육부문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 및 체제정립, 그리고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동서독 지역의 학교제도, 교과내용, 교육행정체제, 그리고 학력수준 등의 큰 차이로 말미암아 통일 후 독일은 통합된 교육체제를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를 감안하여 남북한도 통일 후 교육통합시 예상되는 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육체제를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개선·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서독의 교육통합 및 통일사례는 아직 남북의 화해협력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상 요원하게 보이지만, 동서독의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사례와 통합과정은 남북한의 교육부문의 통합을 위한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 2 절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모색

남북한의 교육통합방안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단기적인 차원에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에 있어 북한에서의 교육에 따른 학력 및 경력의 남한내 인정문제를 언급한다. 다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통일에 따른 교육통합의 방향을 생각해본다.

I.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제도

1.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의 법제도와 문제점

남한 내지 제3국으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자라고 함)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²⁰¹⁾ 이 과정에서 탈북자의 남한사회로의 적응문제는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북한교육제도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인정문제는 탈북자의 현실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교육통합과 관련하여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의 형태 면에서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는 단독 입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가족을 동반하거나 먼저 입국한 국내가족의 주선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40대 청·장년층 중심에서 변화하여 유아에서부터 60~80대 고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입국하고 있다.²⁰²⁾ 특히 학령기에 접어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입국 증가추세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남북한 교육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 탈북자의 남한입국은 1999년도 이후로 과거에 비해 매년 2배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에 의하면, 2003년 11월 11일 “올 들어 월평균 101명의 북한 이 탈주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이날 현재 입국자 수는 1047명”이라고 밝혔다. 2002년 같은 기간 920명에 비해 10% 가량 늘어난 것이다. 통일부는 2002년 한 해 동안 1140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했으며, 국내 입국한 탈북자 수는 한국전쟁 종전 이후 1989년까지는 총 607명에 불과했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나빠진 1990년대에 488명으로 늘었으며, 2000년과 2001년 두 해 동안 895명에 달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북한 이 탈주민은 모두 3927명에 달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3년 11월 12일.

202) 김중태, “국내탈북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 북한인권시민연합 제4회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3강) 2002.

탈북한 대부분의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규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서 거주할 때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학력이 중요시되는 남한 사회에서 살아갈 경우 정규교육의 경험을 남한 사회에 입문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탈북자들은 학교교육을 남한사회 정착과 지위상승의 중요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남한 교육제도의 적응과 관련한 현행법제도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1996. 12. 17, 통일원; 이하에서는 ‘탈북자지원법’이라고 함)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제15조),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제24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자의 편입학과정은 우선 관계기관에서 그들에 대한 심문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학력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일부로 전달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학교에 편입학하고자 소망할 경우, 그들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부로 전달하게 된다.²⁰³⁾ 이에 따라 교육부는 탈북자가 원하는 학교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해당 학교에서 판단하여 학력을 인정하게 된다.

이밖의 법제도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고(제96조),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며(제97조),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제98조) 또한 특례입학의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⁰⁴⁾

203)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북한에서 몇 학년이 남한에서는 몇 학년에 해당한다는 단순 대등식의 규정은 하지 않고 있다.

204)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1998.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탈북자는 단계별로 학력을 인정받으나, 학습수준이나 학습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1~2년 정도 수준을 낮추어 편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일부로부터 학력 인정을 받지만, 동등한 학년으로 편입할 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교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 학년을 낮추어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초·중등학교에 편·입학한 학생들과는 달리 대학생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학사와 관련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 남북한이 많은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입학 후에도 남북한의 상이한 교과목, 전문용어에서의 차이, 어학, 특히 영어능력 부족, 교수학습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때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아가 졸업을 하더라도 남한사회에서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²⁰⁵⁾

2. 탈북자 교육지원제도

탈북자지원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탈북자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2001. 1. 30제정·시행)은 탈북자의 교육지원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교육지원 대상

먼저 교육지원대상은 법 제24조 및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로 ①국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25세 미

205) 탈북자 정착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탈북자들에게 2개월간의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 뒤 1인당 36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이 이 정도의 ‘배려’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2000년부터 탈북자에 대한 자활 및 자립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탈북자의 취업을 도와줄 ‘취업보호담당관’을 5년간 배정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동아일보』, 2003년 8월 1일.

만의 자로서 1997. 7. 14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②국내의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35세 미만의 자로서 1997. 7. 14 이후에 보호결정된 자, ③국내의 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로서 1997. 7. 14 이후에 보호결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로서 ①교육법에 의해 수학능력등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로서 1997년 7월 13일 이전에 보호결정된 자, ②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자, ③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 결정되고,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지원 내용

교육지원대상자별 교육지원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음에 그 내용을 열거해본다.

-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44조에 의거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준비·보충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영 제46조에 의거 중학교·고등학교 및 국공립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방송통신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를 면제한다.
- ③ 영 제46조에 의거 사립의 대학·전문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게는 입학금·수업료·학교교육지원비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 ④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43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공납금 면제 및 보조와는 별도로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가목의 경우에 학자금을 지급받는 자는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결정된 자에 한한다.

(3) 입학 또는 편입학 절차

탈북자의 편입학과정은 우선 관계기관에서 그들에 대한 심문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학력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을 조사하고, 결과를 통일부로 전달한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탈북자가 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할 경우, 그들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부로 전달하게 된다. 여기서 통일부는 북한에서 특정 학력이 남한의 특정 한 학력에 해당한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탈북자가 원하는 학교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해당 학교에서 판단하여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며(동시행령 제97조),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한다.(제98조) 또한 특례입학의 경우는 탈북자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 1998).

(4) 공납금 지원

앞에서 이어 교육보호대상자의 편·입학이 결정되면 해당학교가 면제시 키거나 본인의 신청을 받아 통일부에 공납금 지급신청을 하게 된다. 이중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를 전액면

제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가 통일부에 입학금, 기성회비, 수업료의 50%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며, 나머지 50%는 학교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지원이 실행되지 않는다. 즉 ①국내의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②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 및 보조하지 않는다. 단, 출석률이 80% 이상 등 학업에 충실히 임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보조를 하지 않는다.

수업료 등의 면제 및 보조기간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시까지, 2년제 대학의 경우 4학기까지, 3년제 대학의 경우 6학기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8학기, 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의 대학의 경우 12학기로 규정하고 있다.

(5) 학자금 지원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통일부에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학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정금액을 2회(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본인계좌에 입금된다.

학자금의 지급기간은 ①중학교·고등학교 : 졸업시까지, ②2년제 대학 : 4학기, ③3년제 대학 : 6학기, ④4년제 대학 : 8학기, ⑤의학·치의학·한의학 계통 : 12학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신장애 등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자의 학자금 지급기간은 ①유치부 : 2학기, ②초등부 : 12학기, ③중등부 : 6학기, ④고등부 : 6학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제도 내용>

대 상	지원내용	제 한	적용기한
본인 - 국내외 중등학교 편입학한 20세미만인 자 -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30세 미만인 자 - 국내외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시행령 제45조>	공납금 지원(본인) - 중등학교는 졸업 시까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지원한다. - 국내외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립의 경우 그 반액을 지원한다. <시행령 제46조 제1,2항>	- 중등학교: 20세 미만인 자 - 대학교: 30세 미만인 자로써 4년에 한함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3항>	- 1997년 7월 14일 이후 보호 결정하기로 등록된 자

3. 교육지원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탈북자에 대한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편입학의 기준과 방법의 문제

북한의 교육제도는 인민학교 4년, 중등학교 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6년, 중등학교가 6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제상의 차이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고,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며,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할 경우 북한에서 인민학교 4년을 마친 경우에는 우리 초등학교 5학년에 입학해야 하며, 북한 고등중학교 5년 중퇴자는 우리의 중학교 3학년에 입학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탈북 학생들은 학습능력의 문제로 인하여 대부분 1-2학년 낮게 편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적지만, 고학년의 경우나 중등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지식의 정도가 높아지고, 남북한의 차이가 심하게 드러나는 과목이 많아짐으로써 학습능력에 부진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²⁰⁶⁾

따라서 학령을 기준으로 학교에 편입학시킬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의 학령을 기준으로 편입학시킬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양자의 경우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학령을 기준으로 편입학시킬 경우 동일한 또는 비슷한 연령대의 남한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나 학교생활이 학령에 따른 편입학보다 수월할 수 있다. 한편 학령을 기준으로 편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다 낮은 학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능력의 부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은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양자의 방법이 각기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순한 해결책보다는 학령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학 이전에 학습능력이 일반적인 남한 학생의 학습능력 정도를 구비한 후 편입학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학습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적 대책과 운영시스템이 요청된다. 이는 탈북자의 단기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심도있는 정책적 접근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6) 이 문제에 부가하여 탈북 학생들이 국내 입국까지의 기간이 대부분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남한의 초·중등학교에 입학시 연령이 높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정규학교에서의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학습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들의 학습능력 조사결과와 탈북 대학생의 대학 성적, 그리고 면담을 통해 나타난 바를 통해 볼 때 학습능력의 부진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의 문제는 시급하다. 초·중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국어, 영어, 사회, 한문, 국사 등의 교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어 교과는 거의 모든 탈북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²⁰⁷⁾

또한 대학의 교과목을 전공과 교양으로 나누어 볼 경우, 교양과목 중에서 탈북 대학생들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 교과목은 영어이며, 이외에 국어, 한문, 국사, 컴퓨터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전공과목에서 외국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와 관련된 기초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간 전공과목의 용어상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초·중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원’에서나 가정방문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1:1로 학업을 보충해 줌으로써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교육혜택을 받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통일을 염두해 두고 본다면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의한 탈북학생 지도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검토의 의미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학교’ 차원의 교육형태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 지역 분산정책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민간단체의 주도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에서 일정 정도 학습능력을 증진시킨 후 학교 편입학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시행하고, 편입학의 체계화를 이루는 것이 된다.

207) 대학 재학 중인 탈북대학생의 경우 대부분 영어, 한문, 컴퓨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영어의 경우 원서강독과 영어회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탈북학생들의 성향과 환경을 고려하여 초·중등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 통합적 대안학교의 관리하에 기존의 1:1 학습 방법에 기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른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북한 교육제도에서 '예비과'가 존재하는 것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영어, 한문, 국어(문법 및 남북한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중심), 컴퓨터, 수학 등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받도록 한다. 그리고 남한 대학의 수업방법, 바람직한 수업태도, 대학 도서관 활용, 수강신청 방법, 대학생활 안내 등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러한 예비학교에서의 교육도 통합적 대안학교의 관리 하에 기존의 1:1 학습 방법에 기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상의 학습능력을 위한 보완은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과정이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통해 탈북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국가적인 공식 교육과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탈북 학생들은 확립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도록 해야만 한다. 탈북학생들간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기 이수 과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학습능력 증진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현장 교사나 청소년,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관련 현장학습을 통한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대안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거나, 통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교사들로 하여금 분단현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 곳에 방문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통일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시행해온 것²⁰⁸⁾을 모델로 삼아 탈북한 초·중등학생 대상 교육 뿐만 아니라 대학 희망학생들 모두 민간 단체 주도하에 남북한 학생간의 만남과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홈스테이나, 문화

208)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한국에 들어온 북한동포의 사회적응 지원활동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 정기적으로 국내 탈북동포의 가정과 수용시설을 방문, 상담과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다. http://www.nkhumanrights.or.kr/north_02.html.

체험 한마당 등을 개최하여 탈북학생들의 남한 교육문화 및 서로를 알아가는 체험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 주거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특히 무연고 탈북 청소년의 경우 사회정착 초기에 임대아파트에 보호자 없이 홀로 배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지원이다. 더욱이 거주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과 함께 연고자 없이 새로운 지역에서의 부적응에 의한 격리감 내지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주거공간의 확보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교육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제고

정부차원에서 탈북 학생들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 형태를 보면 학자금 지원, 하나원을 통한 교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탈북 학생의 학습 능력 증대나 체험을 통한 남한사회적응 등의 문제는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지원 형태에서 민간단체의 참여에 의한 지원이 상당 부분 증대되어 왔다. 따라서 이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제도화를 통해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민간단체에서의 지원의 경우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제외한 학습 능력 증대를 위한 교육이나 남한사회체험 및 남북한 학생의 만남을 통한 서로의 이해하기 등의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단체의 탈북자 교육지원활동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의 탈북자 교육지원 실적, 향후 교육 지원 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실사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을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교육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⁹⁾ 이에 대해서는 그간의 경험과 시행착오에 의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의 탈북자의 교육지원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한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탈북학생교육에 참가하는 현직교

209) 이에 관해서는 김동배·이기영, “민간기관의 탈북자지원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 제3권 1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9) 참조.

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의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고안하여 도입하는 것,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격인증제 도입, 다양한 민간단체가 공교육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지원의 제도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대학입학과 학위취득방법 개선

최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누적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취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정립, 확산일로에 있다.

이른바 학점은행제인 이 제도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사회교육의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이들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간에 상호인정하며, 이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²¹⁰⁾ 개인의 학습경험은 학점화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할 수 있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고,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²¹¹⁾

이러한 학점인증제에 의해 해당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점을 취득할 경우 일반 대학에서의 학점 취득에 비해 그 연한이 신축적이며, 생계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학습을 하며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낮에는 직업에 종사하고 저녁에 야간대학에서 학습에 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

210) 학점인정 대상 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의미한다.

211)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크게 7가지 유형이 있다. 대체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 또는 포기한 뒤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독학사의 단계별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을 이수한 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규 대학에 편입학하여 생계에 어려움과 함께 학습능력의 부진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것 보다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남한의 일반 고등학교에 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학년으로 해야 하지만, 실제 관행상 대학에 그대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교육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자금 지급제도에 대한 수정이 요청된다. 탈북자지원법, 동 시행령,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에 대한 수정을 의미한다. 현재 탈북학생의 경우 대학, 전문대학, 기능대학 등에 입학하는 경우 교육보호를 받고 있으나, 학점이 인정되는 사회교육기관이나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받은 경우 교육보호대상자로 추가하였으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²¹²⁾

그리고 북한지역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온 경우 그 학점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에서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남한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2년을 수료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¹³⁾ 따라서 북한의 대학에서 예컨대 2년을 수료했

21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수업료 등의 면제 및 절차 등) ②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자 중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동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당해 대학 등의 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3) 고등교육법시행령 (2000. 11. 18).

을 경우 학력과 과목 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II. 통일대비 교육통합 방향 및 전망

통일대비 교육통합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 직면한 과제로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교육부문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보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의 교육제도의 차이를 극복하여 단일한 교육제도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통일대비 교육통합방안에 대하여 언급한다.

1. 남북한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의 강화

(1) 남북교류·협력체제의 일환으로 교육분야 교류·협력 강화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와 세부합의서의 발효를 통하여 교류협력체제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을 남북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가운데 남북간 경협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교육부문에 대한 남북한간 교류 협력체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부문의 교류협력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교육이 갖는 속성상 교육활동이 정치적 요소와 비정치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 교육이 정치체제의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은 이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²¹⁴⁾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교육부문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교육교류협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교육부문의 교류협력의 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비정치적 요소가 강한 체육, 과학, 학술교류 등의 분야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선다. 최근 이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의 사례는 그 성

214) 김태완 외,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앞의 책, 126면.

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2) 남북한 교육교류·협력 방안(제도화 방안 모색)

남북한간의 교육차원의 교류협력사례는 많지 않다. 그 만큼 교육부문의 협력관계의 틀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기실 교육분야의 교류는 본질적으로 교육이 당해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사회체제에 관한 정치적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 분야의 교류와 협력체제의 구축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 사이의 교육부분에 대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을 제시할 수 있다. 남북한간의 합의서의 채택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에서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당분야의 현안을 해소하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오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 하에 그 실천에 있어서는 정부차원보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추진을 상징하여 정치적 의도를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협력기반의 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²¹⁵⁾

이를 통한 합의하에 남북한의 교육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구에서의 남북간 합의 및 협의에 의하여 남북교육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남북한의 교육정보 상호제공,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왜곡하고 있는 교과서시정 및 공동교과서 편찬, 학생 및 교사·학자 등의 인적 교류, 남북한 공동조사연구 등이 초보적 과제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보다 발전적 상황에서는 남북한의 교육이념과 교육제도의 비교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의 도출, 이에 바탕한 통합교육이념과 제도의 연구, 통합교육체제의 개발, 분단국의 교육통합제도 연구 등을 사업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통합된 교육체제의 도출을 위한 중요한 사안

215) 위의 책, 129면.

이 된다. 이와 관련한 제도화는 결국 남북한 사이의 교육분야의 합의서의 체결을 통하여 구체화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이후 각 분야별로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교육부문에서도 남북의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

(1) 미래지향적 교육통합

남북분단과정에서 교육 분야에서도 커다란 제도상의 이질성을 확인하게 된다. 남북한 교육통합은 교육제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체제를 갖추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교육통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절충주의적·수렴론적 입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 입장이다.²¹⁶⁾

먼저 절충주의적·수렴론적 입장이란, 남한과 북한의 교육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면서 양자를 적절히 융합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한의 자유의 이념과 북한의 평등의 이념을 합쳐서 통일한국의 교육이념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러한 절충주의적·수렴론적 통합안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양 체제의 장점만을 취사선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관, 인간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교육체제를 하나로 융합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자칫 형식적인 조합형의 교육체제를 산출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다음 미래지향적 입장이란, 남북한의 통일사회에 상응하는 미래사회를 상정하고 그것에 부합되는 교육체제를 새로이 마련하는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이다. 미래지향적 입장은 남과 북의 현 체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체제를 고려하되 새롭고 발전적인 교육체제를 구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미래지향적 입장은 단순히 현존체제를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 교육이념의 통합을 구상하는 절충주의적·수렴론적 입장보다는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216)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제 비교연구』, 앞의 책, 90면.

여기서는 후자의 미래지향적 입장에 따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한 통일시의 교육통합방안을 살피되, 교육이념, 학교제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교육행정제도 등을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통합의 과제를 검토해본다.

(2)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교육이념의 통합방향

앞서 남북한 교육이념의 변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교육이념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괴리를 확인하게 된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지향하며 경쟁적 관계를 지속해왔다. 따라서 이질화 된 남북한의 교육이념을 묶어 새로운 통일된 교육이념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단계에서 미래의 통일된 교육이념을 제시하는 것은 각지의 입장과 세계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통일국가의 교육이념의 제시는 기준을 제시하여 상정할 수 있다. 그 기준 또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지지만, 우선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의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그 방향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주·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통일국가는 이른바 인류문명의 기준에 입각한 보편성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이념을 최고원리로 삼을 수 있다.²¹⁷⁾ 현시점에서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과 체제의 대립상태의 상반된 헌법질서 하에서 하나의 가치질서에 합의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통일국가의 바람직한 모습을 인류보편의 가치와 기준에 적합한 발전방향에 따라 지향하는 바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그 지향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미래의 모습을 상정하는 전제로서 필요한 과제가 된다. 이런 면에 비추어 통일국가의 교육이념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교육

217) 박정원, “통일헌법의 이념과 기본질서에 관한 일고”, 『헌법학연구』, 제3집(한국헌법학회, 1997), 625~626면.

이념이 교육통합의 방향과 내용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한의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국가이념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다. 결국 교육통합의 이념은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및 과제와 일치하는 것이 된다.

그 내용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새로운 통일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담는 것으로 새로 맞게 되는 시대적 상황에 상응하는 이념과 가치를 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내용은 남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국가의 구성원이 모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치로서 이른바 민주복지국가를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제시하고²¹⁸⁾ 이에 입각한 교육이념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논의의 전제에 비추어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상정한 것에 기초하여 다음에 교육통합에서 기본적인 이념적 지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통일한국의 교육이념으로 ‘민주’를 제시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개념은 북한이 공히 추구하는 국가이념인 동시에 교육이념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통일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념은 교육의 가치로서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서 후세대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고, 민주적인 삶과 생활태도를 익히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의 교육이념으로 ‘민족’을 제시할 수 있다. 남북한은 근본적으로 한 민족이다. 기실 남북한의 통일은 한민족의 목표였고 전체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조건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교육이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의 민족주의는 새로운 민족국가건설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 미래지향적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교육이념으로 ‘자유와 평등’을 들 수 있다. 세계화 내지 정보화의 시대적 조류속에 인간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218) 장명봉, “통일헌법초안에 관한 시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과 실천』, 제 4회 통일문제종합 심포지엄 결과보고서(국토통일원, 1990. 3. 30), 187면; 한배호, “통일한국의 미래국가상”, 광복 5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학술진흥재단, 1995. 8. 10), 56면.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이 보장될 때,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바로 통일국가는 자유로운 사고와 활동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형평의 장치가 마련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할 때 비로소 사회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유와 평등이 조화되는 교육’은 남북한의 통일국가에서 지향하는 교육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통일국가의 교육이념으로 ‘평화와 화합’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건대 통일이란 남북한의 분단시의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며, 민족공동체의 실현하는 것으로 민족의 화합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통일국가의 국제적 기본질서로서 이른바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에 있다고 한다면, 교육이념도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3. 남북한 교육통합의 분야별 과제

여기에서 논의하는 교육통합의 분야별과제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확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과제는 앞서 언급한 통일국가의 교육이념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함 제도로는 통일국가의 수립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다. 여기서의 논의는 현시점의 정황을 감안하여 남북의 교육제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다 나은 제도로 제시해본다.

(1) 학교제도의 통합

학교제도의 통합문제는 먼저 남북한의 학제의 차이를 고려하여 학제의 통합을 전제로 한다.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제도는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학제의 통합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여기서는 남북한 학교제도 통합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²¹⁹⁾

219) 김태완 외, 앞의 책, 133~139면.

첫째, 남한은 6-3-3-4 제도를 기본 학제로 하고 있는 데에 비해, 북한은 10년제 기본 학교제도와 4-6년 간의 고등교육제도를 갖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남한의 6-3-3-4 제도가 일반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6-3-3-4 제도를 기간 학제로 정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진로교육의 분화 시기는 후기 중등단계가 적절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려면 후기 중등단계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기간의 12년 가운데 10년은 국민공통교육기간으로 설정하여 기본적인 기능, 지식,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고, 후기 중등교육 2년을 능력과 적성에 따른 진로교육 기간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의 통합

초·중등교육 기간은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국민기초교육을 실시하는 기간으로 중요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첫째, 국민기초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무상의무교육의 실시이며 과정은 의무교육기간과 추진내용의 충실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의무교육 기간이 남한의 경우는 9학년까지, 북한의 경우는 10학년까지로 되어 있다. 국민공통교육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해 볼 때, 통일 후 10년의 국민공통교육기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정하는 것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물론 국가의 교육재정의 부담능력에 달려 있다. 남북한의 통일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의무교육기간의 확대는 통일국가의 복지정책과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국민기초교육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기능을 매개하는 교육을 말한다. 국민으로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보편적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 된다. 특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강조하여 실시되고 있는 정치사상교육, 주체형교육은 통일국가의 교육이념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3) 고등교육의 통합

남북한의 고등교육은 고유한 발전과정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 고등교육을 발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고등교육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되, 전문화와 특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체제를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 기술중심대학 등으로 나누어 특화 발전시키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고등교육의 내용을 이데올로기적 영향에서 벗어나, 연구, 교육, 봉사 등 대학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 선발제도의 개혁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학생선발에 있어서 자유경쟁에 의한 능력중심의 선발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학생 선발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자율성 원칙에 의거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남북한은 고등교육에서 학문연구와 더불어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력을 배출하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산학협동을 강조하여 직업전문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대의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실용적인 교육내용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성인교육의 통합

남북한은 성인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통일국가가 미래지향적인 생활환경에 적합한 국가로서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성인교육의 완성은 통일국가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여 성인교육의 통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인교육의 목적을 학력보충과 직업기술의 훈련 뿐 아니라, 개인의 교양함양, 취미·오락 및 여가활동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보다 폭넓게 확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북한이 성인교육에서 강조하는 정치사상교육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성인교육은 남북한 주민의 교육결과의 차이를 보완하고 재사회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통일후의 심리적·정신적 통합을 완성

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으로 말미암아 의식구조와 행동방식에서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 남북한의 기본 체제에서 교육받은 주민들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보완하려면, 성인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통일국가에서 이른바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특히 재사회화 교육을 위해서 성인교육의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은 통일국가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교육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직업기술훈련을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의 교육체제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은 비교적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등이 그것이다. 산학협동이라는 관점에서 산업현장에서의 성인교육을 강조하고 적절한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5) 교육행정제도의 통합

교육통합의 과정에서 교육행정의 기능은 중요하다. 통일 후 교육체제의 통합은 교육행정 조직이 담당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교육행정 제도의 주요 통합방안은 기본적으로 통일국가의 체제와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다음의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²²⁰⁾

대체적으로 교육행정제도의 통합은 교육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보장,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언급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정치로부터의 독립은 교육의 자율성의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북한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따른 교육행정체제는 교육의 자율성이란 근본적인 기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개선조치가 요청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립을 위한 조치로서 중앙교육행정조직의 통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교육자치와 병행하여 진행하여야만 성공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조치와 방안이 교육통합의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²²¹⁾

220)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계비교연구』, 앞의 책, 94~95면.

221) 교육자치의 강화방안으로 이른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방안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진민주국가에서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보편화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조직이다. 이를 통하여 단위학교행정의 민주화와 학부모의 능동적인 교육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은 중앙통제적인 행정체제하에 있는 북한에는 없는 제도이다.

제6장 결론

알다시피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커다란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왔다. 더욱이 이 시기에 김일성주석의 사망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인 변화의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체제에 대한 위협적 요인의 증대는 북한의 경제난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북한의 교육부문에든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교육이 갖는 속성상 체제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로 다가서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여건의 하락은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체제수호와 안정을 위하여 사상혁명의 강화를 통한 주민에 대한 통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그것은 정치사상교육을 근간으로 한 교육정책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한편 일부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교육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부터 북한이 체제수호와 경제개방이라는 이원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문에서도 개선작업을 추진하여왔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교육의 중점은 체제수호에 적합한 주체형 인간의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북한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에 두게 되었다. 그 배경은 경제개방정책의 추진에 따른 사상이완현상을 방지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에 대응하는 사상교육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는 북한의 고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전개되어 온 북한교육의 현실은 바로 이런 현상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이를 북한교육의 최대 관심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북한의 교육제도에 관한 고민과 그에 대한 대응은 1999년 교육법의 제정을 통하여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교육법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고수하면서도 북한교육제도의 현실적 변화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면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강화하면서 다른 일면으로 일부 체제의 변화에 상응한 실리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대응으로서 교육제도의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내용을 두고 북한체제의 변화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잘 알다시피 북한에서 교육은 체제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교육법 제정에 비추어 북한이 실용적 부문을 중심으로 교육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상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개방조치는 전면적인 경제개혁 내지 이에 수반한 체제개혁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수호를 위한 방편으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면에서 북한교육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북한의 교육법의 분석과 이해는 미흡하지만 북한의 변화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교육이 북한체제를 위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이 스스로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변화의 조짐을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 입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 교육법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의 통합시 교육부문의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북한의 교육제도는 현실적으로 구체적 방법에서 변화의 길을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수준의 질적 제고노력,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관련하여 컴퓨터교육의 강화, 대외개방과 관련한 외국어교육 강화,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이른바 수재교육체계의 강화,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른 시장경제교육의 실시 등²²²⁾은 북한의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북한교육의 방향이 현실변화를 반영하는 태도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한의 교육통합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무릇 남북한의 통합에 있어 교육제도의 통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 일국가로의 통일국가의 완성을 상징하는 통일방안을 고려할 때, 이른바 남북한간의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통한 통일국가수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222) 신효숙, “최근 북한교육의 변화동향”, 앞의 논문, 65~72면.

문의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살펴보았듯이 동서독의 경우 문화협정을 통한 교육부문에 대한 교류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통합의 길을 열었으며, 통일조약에도 교육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이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²²³⁾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교육통합이 통일을 완성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통합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이념과 체제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접근이 요청되는데, 북한 교육법의 분석은 그 시초에 해당하는 연구작업에 해당한다. 북한은 김정일체제에 들어서서 제반 분야에서 국정에 관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에서 교육은 정치와의 밀접한 연장선상에서 전개되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북한의 김정일체제의 변화과 교육부문의 변화는 그 방향에서 궤를 같이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법제의 변화내용은 그만큼 북한사회의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향후 북한법에 관한 분석이 남한과의 형식적인 차이를 발견하여 양자를 구별하기 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법제도적 통합을 위한 사전연구로서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23) 분단국의 교육통합사례는 동서독과 함께 남북예멘의 경우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예멘은 ‘남북예멘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채택하면서 바로 양국간의 교육제도의 통합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교과서에 의한 교육, 국경지역의 공동학교의 설치운영 등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남북예멘은 보다 통합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결국 예멘통일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국민대출판사, 2001), 125~126면.

參 考 文 獻

< 북한원전 >

김일성, 보통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 발표, 1977.

김일성,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에게 보낸 서한,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과 한 담화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리명일, “새로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법학-』, 제40권 제4호(김일성종합대학, 1994. 11).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리영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리재도·장인형, 『조선국가와 법의 력사』(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사회주의교육학,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75.

參 考 文 獻

- 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3.
- 어린이 보육교양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 우리 당의 교육정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인간개조리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6, 평양: 1985.
- 정성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테리대군의 양성,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 조선교육사,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조선교육사, 4(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조선교육사, 5(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 조선교육사, 6(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0~1990.
-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학위논문>

- 김의석, 남한과 북한의 고등교육제도 비교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김중태, 남한과 북한의 교육인사행정체제 비교연구, 중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신효숙, 소군정기 북한의 교육정책,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8.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 1945-1950,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최규철, 북한과 중국의 국가발전전략과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최민수, 북한의 취학전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단행본 >

강일규,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분야의 교류 및 협력방안연구, 통일연구원, 2000.

고대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 법문사, 1990.

교육부 편, 통일교육 방안 모색, 교육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북한교육 관료제 및 교육계인맥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0.

김동규, 북한의 교육학, 문맥사, 1990.

김동규, 사회주의 교육학, 주류, 1988.

김동규·김형찬, 북한교육사: 조선교육사 영인본, 교육과학사, 2000.

김주욱, 북한교육의 분석, 대제각, 1980.

김태완 외, 남북한 교육통합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1.

김형운 외, 統一條約批准法, 민족통일연구원, 1993.

參 考 文 獻

- 김형찬, 북한교육발달사, 한백사, 1988.
- 김형찬, 북한의 교육, 을유문화사, 1990.
- 김형찬, 북한의 주체 교육사상, 한백사, 1990.
- 독일통일백서 ('99), 통일부, 2000. 3.
-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연구: 통일 이전 민족통합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1997.
- 박정원,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제 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박호성·홍원표, 북한사회의 이해, 인간사랑, 2002.
-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 북한교육론, 북한연구소, 1997.
-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전망, 2001년 북한교육에 관한 세미나 발표논문,
한국교육개발원·통일교육학회, 2001.
- 북한의 교육, 국토통일원 통일연구소, 1982.
- 안기성, 남북 통일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 집문당, 1998.
- 오기성 외, 북한이탈주민 대학교육지원방안 연구, 통일부, 2000.
- 이금순,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통일연구원, 1999.
-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국민대출판사, 2001.
- 전용선, 북한 사회주의 교육이론 연구, 한누리, 1993.
- 정태혁, 북한의 교육실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1.
- 최달곤·신영호, 북한법 입문, 세창출판사, 1997.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5.
- 통일독일의 분야별 실태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5.
-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통일부 통일정책실, 1999.
- 통일이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연구 : 북한 학생의 재사회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1997.
- 통일후 교원양성 및 재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7. 12.
-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1997.
-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중등학교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1997.
- 한만길 외,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2000.
- 한만길 외, 남북한교육체계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1.
- 한만길 외, 북한교육관계법령 비교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0.
- 한만길 외,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한 분석 -, 한국교육개발원, 2001.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 논 문 >

- 강명숙, 북한 고등교육의 특성, 연구노트 통권 제20호(2001.5).
- 강석승, 북한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그 이념과 제도를 중심으로, 국책 연구 12(1987.5).

參 考 文 獻

- 강완수, 북한 교육체제에 관한 연구, 안보이념논총 4,2(1990.12).
- 강환국, 북한의 교사 양성제도 연구, 사회과교육 26(1993.8).
- 김동규, 북한교육정책의 변천과 특성, 새물결 181(1996.5).
- 김동규, 북한교육의 현실과 개혁과제, 통일로 통권 158호(2001.10).
- 김동규, 북한의 교육, 북한연구 4(1991.6).
- 김동규, 북한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교과내용론, 고시행정 6(1989.10).
- 김동규, 북한의 이데올로기 교육, 문교행정 51(1986.3).
- 김동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에 관한 연구, 통일논총 3,1(1983.6).
- 김동배·이기영, “민간기관의 탈북자지원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 제3권 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9).
- 김명호, 북한의 대학교육 정책과 그 실상(上), 대학연구 3(1989.11).
- 김선호, 북한의 교육제도 그 특이성, 북한 89(1979.5).
- 김선호, 북한 교육정책의 이상과 현실, 북한 75(1978.3).
- 김영식, 교육제도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 북한의 교육내용과 현황, 북한 98 (1980.2).
- 김영학, 북한의 대학제도 : 김일성대학을 기준으로, 북한 200(1988.8).
- 김용현, 북한의 교육정책과 통일대비 교육통합의 방향, 연수논총 17 (1999.12).
- 김지수, 북한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 연구노트 통권 제16호(2001.5).
- 김현철, 북한교육제도, 어디까지 왔나, 북한 347(2000.11).
- 김형찬, 북한 고등교육 과정 및 학사 운영, 대학교육 46(1990.7).

- 김형찬, 북한 대학 교육제도 및 운영 실태와 과제, 대학교육 112(2001.8).
- 김형찬, 북한의 교육 체제와 운영, 교육진흥 50(2000.12).
- 김형찬, 북한의 중등교육 변천과정, 북한 150(1984.6).
- 김형찬, 북한 초등교육의 변천과정, 북한 136(1983.4).
- 김형찬, 북한고등교육의 변천과정, 북한 101(1980.6).
- 노상우, 북한교육의 주체철학적 기본요소와 그의 비판, 교육학연구.
- 류균상, 북한의 교육정책과 제도, 민족재결합의 모색 38(1988.10)..
- 明淳龜, “북한의 법학교육과 법률가 양성”, 『북한법연구』, 제3호(북한법연구회, 2000).
- 박고훈, 북한의 교육제도와 내용에 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13(1995.12).
- 박문갑, 북한 교육의 배경과 변천, 교육개발 56(1988.10).
- 박문갑, 북한의 교육이념과 교육내용, 교육월보 123(1992.3).
- 박민제, 북한의 교육, 통일한국 119(1993.11).
- 박용현, 북한의 교육이론 비판, 교육개발 5(1980.4).
- 박용현,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통일논총 3,1(1983.6).
- 박일성, 북한의 교육정책과 그 특성, 자유공론 206(1984.5).
- 박정원, “통일헌법의 이념과 기본질서에 관한 일고”, 『헌법학연구』, 제3집 (한국헌법학회, 1997)
- 배성인, 북한의 교육, 명지대북한연구 1(1998.12).
- 서성우, 북한 교육의 개혁 동향과 전망, 교육개발 56(1988.10).
- 서성우(1988), 북한의 교육수준, 북한 200(1988.8).

參 考 文 獻

- 손계림,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수재-엘리트 교육체계, 고려대 북한학연구 1 (2000.8).
- 손계림, 북한교육의 발전과정과 최근의 개혁 동향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개발 97(1995.9).
- 손계림·한만길, 북한의 교원양성제도와 고등교육, 대학교육 86(1997.4).
- 송병순, 북한 사회교육의 목적과 체계, 북한 85(1979.1).
- 신용철,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제2권 4호 (국토통일원, 1990).
- 신효숙, 북한 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 사회주의 교육에서 주체교육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1호(2001.8).
- 안종철, 북한 대학교육의 구조와 기관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3(1999.12).
- 이승우 북한의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서경대통일연구 5(2000.12).
- 이 중, 북한의 집단주의교육, 북한학보 5(1981.12).
- 이찬희),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육과정과 역사과 운영실태, 성신사학 11 (1993.11).
- 이항구, 교육행정 이원화 형성하는 정치조직체계, 북한 155(1984. 11).
- 이항규(2000), 북한 학교의 교과 지식 : 관리 체계와 특징 1945-1950, 경남대현대북한연구 3, 1(2000.6).
- 이항규, “통일후 교육제도 통합과 사회적 삼투현상: 독일과 한국”, 『統一問題研究』, 2003년 하반기호(통권 제40호)(평화문제연구소, 2003).
- 임용순·채규철, 북한의 과학기술교육정책과 인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사회과학 37(1993.12).

- 임진영,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새교육 547(2000.5).
- 장덕삼, 북한의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논문집 1(1982.11).
- 장명봉, “통일헌법초안에 관한 시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과 실천』, 제4회 통일문제종합 심포지엄 결과보고서(국토통일원, 1990. 3. 30).
- 정석홍, 북한의 교육제도와 그 특징, 자유공론 187(1982.10).
- 정우곤, “주체사상의 변용담론과 그 원인 -‘우리식’ 사회주의, ‘붉은기 철학’,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1. 7. 7.
- 정일수, 김일성을 위한 인간개조교육, 자유논총 126(1977.9).
- 정재호, 북한 사회주의 사상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교육논총 7(1990.2).
- 정찬영 외, 『지방화를 지향하는 교육행·재정 구조 개편방안』(한국교육개발원, 1997).
- 진동근, 北韓 靑少年 政治思想教育에 관한 小考 : 이념. 체제. 내용. 방법을 중심으로, 忠北教育學研究 1(1998.5).
- 진유범, 북한 각급 학교의 정치사상교양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國教育史學 21(1999. 100).
- 차경수, 북한 교육정책과 분단극복 : 남북한 이질화, 어떻게 할 것인가 I, 민족지성 26 (1988.4).
- 최동식, 北韓 政治教育의 體系的 研究를 위한 方法論的 一試論, 北韓 255 (1993.3).
- 최선영, 북한의 교육제도 : 변천사와 부문별 특징, 통일경제 74(2001.4).
- 최은수, 북한의 교육과 교육정책, 숙명여대통일논총 15(1997.12).

參 考 文 獻

- 최은수, 북한교육정책의 성격과 한반도 교육통일예의 방안, 숭실대통일논총 1(1993.9).
- 최은수, 북한교육정책의 성격과 전망, 전주대정책과학논총 8(1992.12).
- 하등용, 북한의 교육정책의 특성, 통일로 1(1988.9).
-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사, 북한의 교육제도와 재정, 교육연구 (1989).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북한의 고등교육체제, 전문대학교육 4(1991.8).
- 한만길, 북한 교육의 변화 특성과 시사점 분석, 한국교육 22(1995.12).
- 한만길, 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 교과서연구 34(2000.6).
- 한만길, 북한의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계 주요 인물, 교육월보 178 (1996.10).
- 한배호, 통일한국의 미래국가상, 광복 5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발표논문, 학술진흥재단, 1995. 8. 10.

< 세미나자료 >

- 김영수,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인력 확충과 교육,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대회 세미나 발표문(2001).
- 김중태, “국내탈북동포들의 살아가는 모습”, 북한인권시민연합 제4회 탈북동포돕기 자원봉사자 수련회 자료집(3강)(2002).
- 이재정, 통일교육의 평가와 평화교육의 제안, 이재정의원실(200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정치학회(2000),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개발원, 북한 김정일의 교육정책과 현실, 그리고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1997).

< 외국문헌 >

金圭昇, 南北朝鮮の法制定史, 東京: 社會評論社, 1990.

朴尙得, 現代朝鮮教育の發展, 東京: 朝鮮青年社.

Bern-Reiner Fischer und Nobert Schmidt, “Das zweifache
Scheiternder DDR-Schl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Semtember 6, 1991).

Rudolf Hrbik, Die SPD-Deutschland und Europa, die
Haltung der SPD zum Verhaeltnis von Deutschland-
Politik und West-Integration, Bonn, 1988).

부 록

북한헌법(1998)상 교육관련 조항

제 3 장 문 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 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제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 교육의 과학리론 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가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말을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 내며 그것을 현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999. 8. 11 채택, 2000.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 회의 승인)

제 1 장 교육법의 기본

제 1 조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교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확립된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고귀한 전취물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 3 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

제 4 조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며 교육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하도록 한다.

제 5 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은 교육의 기본형태이다.

국가는 학교교육의 결정적 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한다.

제 6 조 주체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주체교육체계를 바로 세워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7 조 교육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 사업이다.

국가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 8 조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전망과업이다.

국가는 교육조건이 성숙되는데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제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며 전체 인민이 일생동안 꾸준히 학습하도록 한다.

제 9 조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교육 이론과 방법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현대화하도록 한다.

제10조 국가는 해외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적극 옹호한다.

제11조 국가는 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

제12조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는 것은 온 사회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일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공민은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다.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이다.

제14조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5조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어린이와 맹, 룡아 같은 불구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수 없다.

제17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 전문학교와 수재교육체계의 학교, 맹, 룡아 학교의 정한 학생에게 일반장학금을 준다.

학업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군관복무 또는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학생, 박사원생에게는 우대장학금을, 일하면서 배우는 학생에게는 현직생활비를 준다.

제18조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보장하여 낮은 값으로 보장한다.

영예군인, 무의무탁 학생에게는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제 3 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군

제19조 교육기관은 교육사업의 거점이며 교육일군은 교육사업의 담당자이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여러가지 교육기관을 내오고 교육사업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제20조 교육기관은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나눈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과 박사원 같은것이, 사회교육기관에는 학습당, 도서관, 학생소년궁전과 회관, 소년단야영소, 체육관 같은 것이 속한다.

제21조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은 해당 기관의 중요성, 규모, 학위학직을 소유한 교육일군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기관의 급수와 기구정원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2조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인재에 대한 수요와 지방의 문화발전수준, 학생수, 통학조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학생의 교육교양, 건강, 발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에는 교육기관을 배치할 수 없다.

제23조 교육기관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교육기관은 재정예산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24조 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건물과 구획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일군에는 교수사업을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교육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6조 교원은 교수사업을 직접 맡아한다.

필요한 경우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도 교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교육일군은 고상한 도덕품성과 높은 과학기술적, 교육실무적 자질을 갖추고 교수교양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일군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

제 4 장 교육 내용과 방법

제28조 교육 내용과 방법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교육기관은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우월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제29조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있게 하고 체육, 예능 교육을 결합 시켜야 한다.

제30조 교육일군은 학생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수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잘 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기관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그것을 높은 교육단계에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교육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여야 한다.

제32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육강령에 반영한다.

교육강령에는 교육과정안과 교수요강이 속한다.

제33조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작성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부문의 전문 학과와 과목의 교육강령은 해당 교육기관이 작성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4조 국가는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심의를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에 비상설심의위원회를 둔다.
해당 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고칠수 없다.

제35조 교원은 교육강령에 기초하여 담당과목의 교수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교수안은 집체적협의를 거쳐 완성한다.

제36조 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 수 없다.

제 5 장 교육조건보장

제37조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임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재정은행기관은 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은 류용할 수 없다.

제39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 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라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를 건설하고 주기에 따라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40조 교육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계기를 해당 교육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1조 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록화테프 같은 것을 새학년도가 시작되기전까지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도서출판용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42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제43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기관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꾸려주어야 한다.

기숙사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에는 후방기지도 정해줄수 있다.

제44조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후원사업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분담할수 있다.

후원사업을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제 6 장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5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사회주의교육을 바로 실시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6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교육일군양성, 교육사업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의 보장 같은 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7조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의 조직과 건설, 보수, 교육강령의 집행,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교양원 양성 같은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교육기관은 학생모집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

제49조 지방정권기관은 사회교육시설과 청소년과외교양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가정의 교육교양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교육지도기관은 교육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51조 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교육사업과 교육조건보장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이 법을 어겨 교육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